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봉오름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술의 진보와 생산력의 발전, 인구와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미래,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노동과 고용의 미래가 어떨지 예상해 보고 노동자운동의 하나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은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있고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을지 국제기구의 입장과 선진사례, 국내 관련주체의 생각을 알아본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관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주최 :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COOP Korea Federation of Worker Cooperatives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 주관 :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전태일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

후원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한국지역난방공사, CICOPA



CONTENT

사회 : 임현조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대 상임이사
좌장 : 김홍일 한국투자기금 이사장

01 ILO - 일의 미래

02 기조 발제 : 브루노 르런츠 (ICA 사무총장) - 일의 미래와 협동조합

03 발표 1 : 디아나 도브간 (CICOPA 사무총장) -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동향

04 발표 2: 엄형식 (ICA/CICOPA 연구조사 담당) - 노동자협동조합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

05 발표 3: 세바스티안 폴 (SMart 벨기에 혁신담당) -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06 발표 4: 엔조 페치니 (정치학 박사,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 -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07 발표 5: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일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08 토론 1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 2 :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

토론 3 : 정민형 기획재정부 사무관

09 ILO 193호 의안 번역본

CICOPA 보고서 번역본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현황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ILO-일의 미래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Oficina Internacional del Trabajo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Oficina Internacional del Trabajo
Route des Morillons 4
CH-1211 Genève 22

Tél. direct:
Fax direct:
E-mail:

Réf.:
Votre réf.:

A future of work based 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employment

협동조합 운동은 변화하는 일의 세계 앞에 놓인 도전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협동조합의 날에 ILO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세계 협동조합의 날 주제인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소비과 생산'은, ILO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고용 모델에 기반한 일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 및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소득 및 고용을 창출하고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하며 지역에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직입니다.

생산 및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협동조합들은 생산단계 축소, 생산이력관리 개선,
환경친화적인 실천 채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커피
협동조합은 사바나 브랜드를 통해 덴마크 협동조합에 커피를 납품하고 있으며 토크의 청년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의 도움을 받아 유기농 파인애플을 이탈리아
협동조합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간 무역은 거래 비용을 낮추고 보다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소비자 협동조합들은 유기농 및 환경친화 상품을 개발하고 식품쓰레기 및
플라스틱 소비 감소는 물론 생산자 및 노동자 작업 환경에 관해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식품 생산 및 공급 과정 뿐만 아니라 의류산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산업은 섬유 생산, 의류제조 및 상업화 뿐만 아니라 직물의 소비와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1만 5천명 이상의 유기농 목화재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과 자원 보호, 수로 관리 및 장비 공유 등에 관해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들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의류 생산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가 개발한 윤리적 의류 브랜드들에 조합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남아 및 남아시아에는 자영 노동자 또는 하청업자의 지위로 일하는 원단/의류 산업내 재택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렴한 원재료 구입, 장비 및 각종 재료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공동 판매, 금융 접근, 단가 협상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ILO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진작하고 위기 상황으로 무너진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Local Empowerment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project)은 2017년 '평화와 복원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권고안 205' (th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No. 205)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 초기 평가 보고서는 분쟁 이전과 분쟁 기간 중, 그리고 분쟁 이후에 걸쳐 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조직체로서 존재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무역인증을 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농업 및 어업 협동조합들을 지원했습니다.

협동조합간 무역은 조합원과 지역 공동체가 거래비용을 낮추면서 공정한 가격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생산과 소비 관행을 정착시키고 녹색 및 순환 경제를 진전시키며 생산 및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시키는 협동조합 운동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년 ILO 100 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 인구, 기술, 환경에서 야기되는 일의 세계 앞에 놓인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협동조합 운동과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imel Esim
Head
Cooperatives Unit



일의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변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Future of Work initiative)’에 착수했으며 오는 2019년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i) 일과 사회, ii)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iii) 일과 생산 조직, 그리고 iv) 일의 거버넌스 등 수년 간 논의되어 왔던 4가지 쟁점들을 토론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회담’을 제안했다. 이 이슈 시리즈는 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할 목적으로 ‘100주년 기념회담’에서 논의하고자 엄선한 주제 영역의 주요 동향과 쟁점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이슈 시리즈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은 futureofwork@ilo.org로 보내기 바란다.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 협동조합의 미래를 향해*

이 시리즈에서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향후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와 기회도 검토한다.¹

1. 배경지식 : 핵심 쟁점 및 개요

협동조합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 부문에 존재하며 기업체이지만 수익창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범위한 가치와 원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과 공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단체 등 다른 형태의 협업 조직과 기업은 사회연대경제의 일부이다.² 이들은 공공부문과 종래의 기업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 이 조직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ILO, 2009). 또한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은 조합원이 조직을 소유하는 조합원 기반 사업체로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일의 미래’ 이슈 시리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일의 세계에서 협동조합 기업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고용을 창출하는 브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2억 5천만 명(CICOPA, 2014)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5개국 내 상위 300개 협동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2조 5천억 달러(ICA & EURICSE, 2016)의 매출을 올렸다. 농업, 금융 및 주택 분야의 협동조합은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삶과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은 시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만 발현될 것이다.

이번 이슈 시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의 세계의 주요 동향과 변화를 협동조합 기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 이 이슈 시리즈는 시멘 에실(Simele Esim), 알테리 카타자마키(Walteri Katajamäki) 및 기 쳐미(Guy Tchami)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¹ 이번 이슈 시리즈의 요약문은 ILO 협동조합국(COOP)이 발행한 협동조합과 일의 세계(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시리즈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일의 미래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탐구”에 수록되어 있다(http://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537002/lang--en/index.htm).

² ILO 및 파트너 조직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자료는 <http://www.sseach.net>을 참조하기 바란다.

- **경제적 변화 :** 금융위기는 극복되었으나 세계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밀돌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용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과 사업 규모가 성장한 이유와 방법을 분석한다.
- **인구통계학적 변화 :**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ILO, 2016g). 본 자료에서는 청년, 특히 실업상태의 청년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기타 건강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사례도 보여준다.
- **기술적 변화 :** 기술 변화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도 과피할 수 도 있다. 기술 혁신과 그 파급효과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ILO, 2016f). 본 자료에서는 직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라고도 불리는 비표준화된 고용이 많은 노동환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플랫폼협동조합의 출현을 소개한다.
- **환경적 변화 :**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변화(예: 재생 가능 에너지)시키며 사라지게 하거나 대체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기후변화에 적응(예: 농작물에 대한 공제보험, 농작물의 다양성 또는 개선된 유역관리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하고 완화(예: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임업 및 농림업협동조합)하는데 있어 각 국의 협동조합이 경제주체로서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협동조합은 일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금융안정 및 포용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2001년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성장해 나갔다. 협동조합 기업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개인화 기업으로서 전가를 발휘하고 있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 협동조합의 특징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저축 및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 및 신용금고는 성장해왔고 특히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시켰고 동시에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해왔다(ILO, 2013b).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들은 2007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다른 보험회사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의 수익률은 22% 증가한 반면 전체 보험 시장의 수익률은 8%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최근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ICMIF, 2016).

협동조합, 기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과 같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금융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이 탄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대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은 (i)금융 접근성의 민주화 (ii)금융권에의 연대성과 호혜성의 가치와 실천 재도입 (iii)지역경제발전 촉진 (iv)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UNRISD, 2015).

자주적 조직결성과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는 금융 메커니즘의 예로는 윤리적 은행, 금융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은행, 연대소액금융, 대안화폐, 지역사회 기반의 저축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크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사회성과연계채권 그리고 임팩트 투자 등이 있다. 이 새로운 자금조달 메커니즘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타트업 협동조합들은 규제 장벽(예 신용조합)이나 자금출처의 낮은 신뢰도(예 크라우드펀딩 메커니즘) 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모든 예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scholz, 2016).

노동자들이 재발견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 관리하는 기업체로 조합원은 출자를 함으로써 기업 운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사회 선출 시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Perotin, 2014). 서비스업부터 소매업, 교육 및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기업은 노동자에 의해 소유, 관리될 수 있다(UWCC, 2007). 이러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써 실적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기업만큼 높은 생존율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생산성과 일자리 확보에 있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Perotin, 2014).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기존 조합 강화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Van Slyke, 2016). 북반구에서는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그리고 영국 등 많은 국가의 노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최근 많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협동조합 기업을 재발견하거나 비공식경제 노동자들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인 1표’을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업의 동등한 의결권은 특히 지방경제와 비공식경제 환경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핵심 주체가 되는데 필연적이다. 그리고 정당한 대표성을 부여한다. 투명성, 신뢰성, 책임감, 의사결정 참여, 조합원 요구에 대한 대응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과 같은 우수한 거버넌스의 특성은 노동조합을 통해 본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ILO, 2014b).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함께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약화 저지, 노동의 유연화, 실업 및 민영화 등 다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0개 이상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네트워크인 스페인의 몬드리곤 인터내셔널(Mondragon Internacional)과 미국의 전미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USW))은 협력을 통해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모색했다.³ 이를 통해 에너지와 식품도매분야에서 여러 노동자소비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됐다(Troncoso, 2017). Nurses Can 협동조합은 서비스종업원국제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미국 캘리포니아 지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공인자격을 소지한 간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이 협동조합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간호사와 환자를 직접 연결해준다(Schneider, 2016). 이와 같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례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구제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노동자들은 회사를 매입하여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전환했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과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소유주가 고령화로 인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Alperovitz, 2016; Tianga, 2016).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생산성은 생산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임금은 각 부문의 평균 이상이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기업들의 생존율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다(perotin, 2014). 변화하고 있는 일의 세계에서 앞으로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브라질, 그리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최근 과산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적 및 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ILO, 2014c).

3. 전미철강노동조합과 몬드리곤 인터내셔널의 기본협정은 http://assets.usw.org/Releases/agree_usw_mondragon.pdf를 참조하기 바란다.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반구에서는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프리랜서 및 독립적 계약자를 포함한 불안정한 고용 관계와 일자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와 임금체불, 그리고 계약부재와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Conaty, Bird and Ross, 2016). 각 경제 노동자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악덕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게 됐다.

비공식 고용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결여로 인해 낮고 불규칙한 소득을 초래하며 양질의 일자리와는 동떨어진 특징을 보이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ILO, 2016e). 남반구에서는 비공식 경제에서의 노동조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폐기물 수거노동자, 노점상 그리고 가사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고 있다(ILO, 2016a).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개회사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와의 교섭력으로 인해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기업이 공식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 그룹은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그 상당수가 가사노동자이다. 이들은 일반가정에서 명확한 고용 조건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정, 교육 및 직업알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은 모성보호 및 유급휴가와 같은 고용조건의 개선을 협상하기 위해 상업적 직업소개소의 대안으로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볼 수 있다(ILO, 2014a).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기술 변화는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인식된다. 이는 기존 일자리의 변형뿐만 아니라 일자리 파괴와 창조를 모두 수반하는 역동적인 프로세스이다(ILO, 2016f). 온라인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P2P 거래가 특징인 ‘공유’ 경제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⁴는 일의 미래를 위한 참여와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된다(De Stefano, 2016). 미국에서만 1천만 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JPMorgan Chase & Co., 2016).

일부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표준화된 고용형태의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조성되어 고용관계가 악화되고 자영업은 증가하며, 그 결과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근로조건은 악화되며 사회보장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아지고 있다(ILO, 2016a). 플랫폼 경제에서 악화되고 있는 고용관계의 대응책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별언권과 대의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관리하는 디지털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신뢰하여 협동조합에 참여하며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Sutton, 2016). 이들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 온라인 직업알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 시장, 그리고 이 경제 모델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집약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의 노동자이자 소유자는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계약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상하며 플랫폼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관련하여 법적, 재정적 및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Gorenflo, 2015). 택시기사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실시간 승차공유 중개 플랫폼을 배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택시기사협동조합

4. 플랫폼 기반 경제에 관한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주제를 암시하는 데 사용됐던 용어와는 다르다. 서로 중복되고 종종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로는 협동조합, 온더맨드 그리고 각 경계 등이 있다(*sens Martin (2016)*)

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Scholz, 2014). 예를 들어 미국 텐버의 그린택시협동조합(Green Taxi Cooperative)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스마트폰 택시 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지 시장을 장악한 노조화된 노동자협동조합이다(Peck, 2016).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일의 미래에 관한 많은 논의가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변화 또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ILO, 2016g). 노동시장 내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는 청년,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수의 증가가 포함된다. 매년 약 4천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ILO, 2015c)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번 이슈 시리즈의 요약본은 ILO 협동조합국(COOP)이 발행한 협동조합과 일의 세계(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시리즈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일의 미래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탐구”에 수록되어 있다.

고령자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질의 돌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중 1/2 이상 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ILO, 2015b).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돌봄경제는 미래의 고용창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는 비공식 고용된 여성들로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취취와 배타적 관행에 특히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케어부터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택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ILO, 2017). 과테말라와 우루과이, 캐나다,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 협동조합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사람중심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이익창출, 교섭력 및 법정 노동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좋은 노동조건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식 계약 체결, 단시간 노동, 그리고 임금수준 면에서 문제가 남아있다(ILO, 2016d).

다중이해관계자 돌봄협동조합(multistakeholder care cooperatives)은 돌봄노동자,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방정부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성미산마을(Sungmisan cooperative community)은 노동자, 교사, 부모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이 곳은 데이케어 및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및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협동조합 기업이 모여 있다(ILO, 2017).

이주 노동자와 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미래에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ILO, 2016g). 협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공식 노동시장 참여와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효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협동조합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비용효율성이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이 본국에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있다(ILO, 2015a). 농촌지역으로의 송금거래가 전체 송금의 약 30~40%를 차지하는 데는 금융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CGAP, 2010).

현재 전쟁, 빈곤,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떠나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업은 난민 대응 전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수용국가들은 현재 난민통합을 위해 협동주택, 직업알선, 문맹퇴치, 직업훈련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난민촌에서는 난민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난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난민들은 수용국 가의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본국으로 돌아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활용해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티모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레바논, 모잠비크, 르완다,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에서는 귀환한 소수민족 및 전직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고용 창출, 기업 및 주택 재건, 난민 및 국내 피난민을 위한 시장접근기회 제공, 그리고 화해와 평화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분쟁지역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ILO, 2016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예: 농작물에 대한 상호보험, 농작물의 다양화 또는 유역관리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완화(예: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임업 및 농림업협동조합)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는 폐기물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및 남아프리카 등에는 폐기물수거노동자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공식경제로의 이행,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직업훈련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ILO, 2014d). 폐기물수거노동자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산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폐기물수거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고 여성들의 집단의식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Gutberlet, 2016).

농업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점점 더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은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개발국의 13억 인구에게 청결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all)’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ILO, 2013a). 방글라데시에는 50,000개의 마을에 전력망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전력화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은 보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 전력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전력거래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여 초과 생산된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다(Badiei, 2016).

각 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산림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협동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유자와 조합원은 산림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묘목 식수, 재배, 보호, 우수한 산출묘의 생산 및 유통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협동조합은 임산물을 회수하여 등급을 정하고 가공, 포장 및 판매하는 것 외에도 조합원에게 최신 기술정보 및 직업훈련을 제공한다(FAO, 2014). 인도의 육림업협동조합(Tree Growers' Cooperative Society)은 인도정부의 기한부 토지임차 사례의 좋은 예이다. 협동조합은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장기임대하고 생계와 수입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공유지에 농장을 만들어 식재를 관리한다(CIFOR, 2009).

3. 향후 토론을 위한 주요 쟁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및 성장모델을 찾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사회연대경제기업들과 함께 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일과 생산의 필수단위(ILO, 2015c)인 상황에서 협동조합기업은 상호부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소유 및 관리 구조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 권리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운동은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평등, 자치, 노동참여, 고용보전 및 선택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인함, 생존력 그리고 잠재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종종 주변적인 경제주체에 머무르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노하우 부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와 법적제약이라는 외부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협동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모델이 변화하는 일 세계에 대한 포괄적 대응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엔은 협동조합을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UN, 2015).

최근 몇 년간 국제협동조합운동은 일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정책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표자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⁵ 협동조합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많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국가 통제에 따른 규제중심의 법률, 또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관련 최신 법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불안정한 금융수단은 좋은 협동조합 사례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수단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를 평가하는 노하우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어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
 -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와 협동조합이 고용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지역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책 및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조사에서 협동조합을 분석단위로 이용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이용자의 지역적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정책 논의 참여에 제한적이다.

5. 이에 대한 예로 2016년 10월 케뻻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서미트(International Cooperative Summit)는 주요 논의 영역 중의 하나로 일의 미래를 언급했다(<https://www.sommetsinter.coop/en/programs/2016>).

이러한 문제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미래는 ILO 구성원과 파트너들이 다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

- **규제 체계의 개발** :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창업과 성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 **규모의 확대** :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 확대를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금융 수단과 중개업자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에는 협동조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일의 미래에 관한 토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효과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자를 토론에 참가시켜 힘을 길러야 한다.
 -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및 지식 창출** :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거버넌스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REFERENCES

- Alperovitz, G. 2016. '6 ways we're already leading an economic revolution' *Yes! Magazine*, September 7, 2016, <http://www.yesmagazine.org/new-economy/6-ways-were-already-leading-an-economic-revolution-20160907> [6 February 2017].
- Badiei, S. 2016. 'Swarm electrification in Bangladesh lets neighbours swap solar electricity', *Motherboard*, November 29, https://motherboard.vice.com/en_us/article/mesolshare-rural-bangladesh-swarm-electrification-off-the-grid [1 March 2017].
- CGAP. 2010. *Financial access 2010. The state of financial inclusion through the crisis*. (CGAP/The World Bank Group).
- CICOPA. 2014.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 CIFOR. 2009. *Cooperation in forestry: Analysis of forestry cooperatives in Rajasthan, India*.
- Conaty, P.; Bird, A.; Ross, P. 2016. *Not alone: Trade union and co-operative solutions for self-employed workers* (Co-operatives UK).
- De Stefano, V. 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Geneva, ILO).
- FAO. 2014. *State of the World's Forests: Enhancing the socioeconomic benefits from forests* (Rome).
- Gorenflo, N. 2015. 'How platform coops can beat death stars like Uber to create a real sharing economy', <http://www.shareable.net/blog/how-platform-coops-can-beat-death-stars-like-uber-to-create-a-real-sharing-economy> [6 February 2017].
- Gutberlet, J. 2016. *Urban Recycling Cooperatives: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London,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ICA; EURICSE. 2016. *World Cooperative Monitor. Exploring the co-operative economy. Report 2016*.
- ICMIF. 2016. *Global mutual and cooperative market infographic 2016*, <http://www.icmif.org/global-mutual-and-cooperative-market-infographic-2016> [6 February 2017].
- ILO. 2009. *Plan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Africa*. ILO Regional Conference "The Social Economy – Africa'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 Johannesburg, 19-21 October 2009, <http://socialeconomy.itcilo.org/en/files/docs/ilo-regional-conference-on-social-economy-johannesburg-october-2009.pdf> [6 February 2017].
- ILO. 2013a. *Providing clean energy and energy access through cooperatives*. (Geneva).
- ILO. 2013b.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operatives*. (Geneva).
- ILO. 2014a. *Cooperating out of isolation: Domestic workers' cooperatives*. Issue Note No. 2,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Series.
- ILO. 2014b.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Geneva).
- ILO. 2014c. *Job preservation through worker cooperatives: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strategies*. (Geneva).
- ILO. 2014d. *Tackling informality in e-waste management: The potential of cooperative enterprises*. (Geneva).
- ILO. 2015a. *Labour migration and cooperatives*. Labour Migration Highlights No. 2,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migrant/documents/publication/wcms_384859.pdf [6 February 2017].
- ILO. 2015b.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older persons lack quality long-term care', October 1, 2015,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406984/lang--en/index.htm [6 February 2017].
- ILO. 2015c.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ILC, 104th Session, 2015: *The 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Geneva).
- ILO. 2016a. *A challenging future fo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Time for affirmation or alternatives?* The 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Issue Note Series No. 3.
- ILO. 2016b. *Cooperation in a changing world of work: Exploring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future of work*.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Series No. 6.



- ILO. 2016c. *Cooperative responses to refugee crisis*. Note for discussion,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coop/documents/genericdocument/wcms_455734.pdf [6 February 2017].
- ILO. 2016d. *Providing care through cooperatives 1: Survey and interview findings*. (Geneva).
- ILO. 2016e. *Social contract and the future of work: Inequality, income security, labour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The 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Issue Note Series No. 4.
- ILO. 2016f. *Technological changes and work in the future: Making technology work for all*. The 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Issue Note Series No. 1.
- ILO. 2016g. *The future of labour supply: Demographics, migration, unpaid work*. The Future of Work Centenary Initiative Issue Note Series No. 2.
- ILO. 2017. Providing care through cooperatives 2: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Geneva).
- JPMorgan Chase & Co. 2016. *Paychecks, paydays, and the online platform economy. Big data on income volatility*. JPMorgan Chase & Co. Institute.
- Martin, C. 2016. 'The sharing economy: A pathway to sustainability or a nightmarish form of neoliberal capitalism?', *Ecological Economics* 121, pp. 149-159.
- Peck, M. 2016. 'Building the people's ownership economy through union co-ops', in Scholz & Schneider (eds.) *Ours to hack and to own: The rise of platform cooperativism, a new vision for the future of work and a fairer internet*. (New York, OR Books), pp. 208-212.
- Perotin, V. 2014.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worker co-operatives?*. (Co-operatives UK).
- Schneider. N. 2016. "The rise of cooperatively owned internet. Platform cooperativism gets a boost", *The Nation*, October 31, 2016, <https://www.thenation.com/article/the-rise-of-a-cooperatively-owned-internet/> [13 March 2017].
- Scholz, T. 2014. *Platform cooperativism vs. the sharing economy*, <https://medium.com/@trebors/platform-cooperativism-vs-the-sharing-economy-2ea737f1b5ad#.bydrs7l39> [6 February 2017].
- Scholz, T. 2016. *Uberworked and underpaid: How workers are disrupting the digital economy* (John Wiley & Sons, Inc. UK).
- Sutton, M. 2016. *A Shareable explainer: What is a platform co-op?*, <http://www.shareable.net/blog/a-shareable-explainer-what-is-a-platform-co-op#What is a platform co-op?> [6 February 2017].
- Tianga, K. 2016. 'The next boom for worker co-ops?' *Shelterforce*, May 3, 2016, http://www.shelterforce.org/article/4468/the_next_boom_for_worker_co-ops [6 February 2017].
- Troncoso, S. 2017. Is the cooperative economy next in a post-consumer world? January 7, <https://blog.p2pfoundation.net/cooperative-economy-next-post-consumer-world/2017/01/07> [6 February 2017].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 UWCC. 2007. *What is a worker cooperative?*. <http://www.uwcc.wisc.edu/pdf/What%20is%20WC.pdf> [6 February 2017].
- UNRISD. 2015. *Social and solidarity finance: Tensions, opportunities and transformative potential*. Concept note, [http://www.unrisd.org/80256B42004CCC77/\(httplInfoFiles\)/0E7405B8843E9D78C1257E660051E1D5/\\$file/Concept%20note_SSF%20workshop.pdf](http://www.unrisd.org/80256B42004CCC77/(httplInfoFiles)/0E7405B8843E9D78C1257E660051E1D5/$file/Concept%20note_SSF%20workshop.pdf) [6 February 2017].
- Van Slyke, B. 2016. 'Unions and Cooperatives: How workers can survive and thrive', *Truthout*, February 26, <http://www.truth-out.org/news/item/34944-unions-and-cooperatives-how-workers-can-survive-and-thrive> [6 February 2017].

일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일의 미래와 협동조합

- 브루노 롤렌츠 (ICA 사무총장)



POSITION PAPER

30 April 2018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which serves and represents around 3 million cooperatives and 1.2 billion cooperative members globally and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welcom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entenary Initiative with its focus on the Future of Work, and, within this con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n the first part of this document, we comment the Global Commission's Inception Report,¹ using its own structure and numbering, with inputs showing that cooperatives are both one of the largest world actors in work and employment and a significant laboratory of future trends; in the second part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aimed at promoting cooperatives' contributions to the future of work, based on the ILO standards.²

I. COMMENTS TO THE INCEPTION REPOR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OPERATIVES

1 - A global snapshot: megatrends in the world of work

A.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of work

According to a recent and conservative estimate, cooperatives around the world employ or ar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more than 279 million people, almost 10% of the total employed population³, without counting the jobs and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loans granted by credit cooperatives, or through other key inputs provided by insurance cooperatives or electricity cooperatives to millions of producers, nor the indirect jobs generated for providers and clients. The wid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which also includes mutuals, worker-owned enterprises, associations, foundations, non-profits, NGOs, social enterprises etc.), of which cooperatives are a key pillar, represents an even wider share of the world's employed population. In addition, many cooperatives are involved in producers' and SME clustering, as has been recognized by the ILO,⁴ thus covering an even wider proportion of the world of work, with a very high expansion potential.

¹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² Many inputs in this report have been provided by CICOPA,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s sectoral organization for industry and services. The ICA wishes to thank CICOPA for such contribution.

³ Eum HS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⁴ ILO (2015)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 Geneva: ILO



Beyond numbers, cooperative employment tends to be more sustainable in time, suffers less income inequality, and is characterized by a better distribu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an the average.⁵ Cooperatives also constitute a large laboratory experimenting innovative and sustainable forms of work and work relations within the enterprise, like community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cooperatives between consumers and agricultural producers, cooperative on line platforms etc.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mentioned above are particularly relevant when considering the Inception Report's observations regarding today's high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level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stagnating ratios of employment to the population, increased job insecurity and flexibility,⁶ deterioration of social protection, widening inequalities⁷, and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of work and of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s experiencing profound changes that may strongly alter the way in which we work and the future of work itself.

B. Megatrends and future of work implications

The Inception Report's considerations regarding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as well as technological change, will be discussed below (3.A and 3.B respectively). Here, we will just briefly mention demography and climate change.

Cooperatives are growing very quickly in economic sectors that are linked to demograph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ageing, with care services in particular to the elderly, and migrations with work integration.⁸ They are also expanding rapidl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as part of initiatives aimed to combat climate change.⁹

2 - Work and Society

A. The attributes of work people value

The inception report states that “*workers around the globe, with some variation across country income groupings, also value the contribution of a job to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interesting job) an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help other people through their work (jobs which allow someone to help others). They also value the usefulness of work to socie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¹⁰ The increased sense of identity and meaning attributed to work according to the

⁵ Roelants R, Eum HS & Terrasi E (2014)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p. 8

⁶ According to the ILO,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has even fallen marginally between 1991 and 2016; see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

⁷ *Ibid.*, p 6-7

⁸ ILO (2016) *Global Mapping of the Provision of Care through Cooperatives*; Geneva: ILO

⁹ See www.RESCoop.eu

¹⁰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6.



Inception Report contrasts with the growing disenchantment about one's work experience also mentioned in the report.¹¹

The qualitative component of cooperative work, combined with cooperatives' quantitative importance,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is regard. The report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reveals, from a series of interviews on how people working in or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eel "*a combination of economic rationale, a quest for efficiency, shared flexibility, a sense of participation, a family-type environment, pride and reputation,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a focus on values.*"¹²

B. Making “invisible” work “visible”

Cooperatives contribute to making “invisible” work “visible” in at least four ways:

- a. By contributing strongly to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economy, where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often not recognized as workers, to the formal economy (see 4. A below);
- b. By institutionally recognizing volunteers’ work in some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in particular social cooperatives, as being part of work delivered by an enterprise;
- c. Through the voluntary contribution of millions of cooperative members to the general assembly or board meetings of their cooperative, which is institutionally recognized and recorded in minutes; in fact, this is one of the largest movements of voluntary work in enterprises existing in the world, and without which the cooperative experience, based on members’ joint ownership and democratic control, would not exist;
- d. By making visible “virtual labour” and “digital labour” (see 3 B below)

C. Work and well-being

The increasing levels of workplace accidents and psychological violence at the workplace¹³ with direct consequences on health and, increasingly, on life itself mentioned in the Inception Report and relayed in other documents and studies makes the experience of cooperatives, where such extreme phenomena tend to be rare thanks to their member-based and community-embedded identity, particularly relevant.¹⁴

¹¹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5-18

¹² Roelants R, Eum HS & Terrasi E (2014)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 Brussels : CICOPA, p. 9

¹³ The quest for efficiency at all cost has spurred human resource management techniques that strongly affect the staff’s psychological balance. For example, a New York Times article quoted an executive in Amazon’s book marketing division saying that “*nearly every person I worked with, I saw cry at their desk*”. Kantor J. & Streitfeld D. *Inside Amazon: Wrestling Big Ideas in a Bruising Workplace*; The New York Times, 15 August 2015, http://www.nytimes.com/2015/08/16/technology/inside-amazon-wrestling-big-ideas-in-a-bruising-workplace.html?_r=0. In many large companies, there has been a dramatic reduction in middle-level management, giving workers the perception of an anonymous, remote and faceless employer.

¹⁴ According to the ILO, 2.7 million deaths per year (7600 per day) are due to 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 while unemployment is also a source of illness: see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 p19-20.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British medical review *The Lancet* based on World Bank and WHO data over 15 years, there were 160 000 more deaths through cancer in the EU between 2008 and 2010 in



Balancing the time dedicated to work and family i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quality employment, particularly for women, as the report points out. In many cases, cooperatives have been able to provide their workers, and particularly women, with flexible working times, thus promoting the work-family balance.

Cooperatives have also been contributing to employment creation and work integration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As the ILO has pointed out¹⁵, cooperatives in several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integrating migrants into the workforce or providing them with support, including in reducing health and psycho-social risks.

D. Effective social protec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abour flexibilization, including interim and casual work and zero hour contracts, as well as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and ratio of self-employed observed in a number of countries, often result in disconnecting workers from social security and social rights. Despite the diversity of situations, legal statutes and national's contexts, one of the major problems for non-standard workers is the absence of mechanisms providing access to existing social rights, while, as the Inception Report observes, as much as 55%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no access to any social protection whatsoever, and only 29% have access to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¹⁶

Like it has often been the case in the past, cooperatives are proving to be places for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when it comes to securing people's needs and work situations. An increasing trend of cooperatives established and owned by independent workers/producers shows that the cooperative model responds to the needs of both conventional occupations characterized by self-employment (artisans, architects, doctors, taxi drivers etc), and the emerging category of non-standard workers characterized by a high risk of precariousness, like those active in creative industries or digital economy (graphic designers, artists, journalists, couriers, etc), but also domestic and home-based workers, in particular women.¹⁷ By offering them both autonomy in the organisation of their work, and mutualised services, those cooperatives provide them with social rights and protection, in some cases as high as what employees are entitled to.¹⁸

conjunction with both the rise in unemployment and reduction in public spending, and over 500 000 more in the world: Maruthappu M. The Role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Reducing Cancer Death and Disparities, *The Lancet*, 25 May 2015,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816%2930376-2/fulltext> ; In addition, *The Lancet* stated in 2015 that unemployment was at the origin of around 45 000 suicides every year in 63 countries: Nordt C. *et al.* Modelling suicide and unemployment: a longitudinal analysis covering 63 countries, 2000–11, *The Lancet Psychiatry*, February 2015,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psy/article/PIIS2215-0366%2814%2900118-7/abstract>

¹⁵ ILO, Labour Migration Highlights No. 2: Labour Migration and Cooperatives, 2015: <http://s.coop/2685o>

¹⁶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3

¹⁷ <https://www.wecandoit.coop/>

¹⁸ <http://smart-eu.org/team/belgium/>



3 - Decent jobs for all: full employment and raising standards of living

A. What future for full employment?

As the inception report points out, while both the ILO Philadelphia Declaration and the UN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dvocate full employment, macroeconomic policies have shifted their emphasis from boosting employment to focusing on monetary and price policies, austerity and flexibilization, while the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linked to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a tendency towards short-termism in seeking 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gain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Nobel prize winner Elinor Ostrom, participatory systems including cooperatives allow for "*the intensiv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initial design and continuing maintenance of the system*".¹⁹ In fact, cooperatives tend to prioritize long-term effectiveness over short-term, managerial efficiency, both because they are driven by citizens' needs and aspirations, and because they involve those same citizens in an enterprise which the latter jointly own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is, in turn, entails a strong element of entrepreneuri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²⁰ In addition, their inner financial regime, based on capital accumulation and returns calculated according to members' transactions with the cooperative and not according to amounts of share capital invested, protects them against financialization.

B. Technological changes and jobs: Risks or opportunity?

The world is undoubtedly undergoing one of the most profound and radical waves of technological change it has ever known,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IT and robotics, with profound applications in industrial automation, the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an organization of work and production in which individual workers, producers and users are often more disseminated in space.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tinued growth of robotization will change the sorts of jobs available in the future. Women may be disqualifying themselves from jobs altogether and certainly from the management ranks by leaving these fields to men. In the developed world, technological change could have the unhappy consequence of reversing the trends that have been so beneficial to women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particular of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ields in post-secondary education.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echnological change leaves many components of the world of work unresolved, especially as far as the social dimension of work is concerned, it also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ring people together. Machines are still not capable of acting in the same way as we are, in regard to care and relationship to each other. Cooperatives are important actors in this process, they promote this union, now aided by technology while contributing to employment and citizenship. Technological change can also favour more genuine forms of collaborative work, such as

¹⁹ Ibid. p. 1081

²⁰ See Stephen C. Smith and Jonathan Rothbaum *Co-operatives in a global economy: key issues, recent trends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pp 221-241, in Novkovic and Webb, eds. (2014) *Co-operatives in a Post-Growth Era: Creating Co-operative Economics*; London: Zed Books



cooperation among producers, freelancers and SMEs through cooperatives, as well as among cooperatives themselves.²¹

In addition, many cooperatives are presently dealing with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more they cooperate among themselves in generating economies of scale through networks and groups, the more they tend to be successful in carrying out this transformation.²²

Technological change may even offer solutions to improve democracy within the enterprise (on line consultations, electronic voting etc.), something fundamental for cooperatives as they are governed by the “one person one vote” system.

C. Potential for new jobs?

The Inception Report states that the changing landscape, including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may be offering opportunities to the future of work.²³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omments in this respect that “*it's likely that work done by humans will increasingly involve innovative thinking,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skills, the things machines don't do well*”.²⁴ Cooperatives undoubtedly have a strong potential advantage in all the activities that require mainly knowledge and the human factor. An increasing trend towards the creation of cooperatives active in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²⁵ has been notice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re are a host of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in which cooperatives can act in niche markets where the large companies, including those organized as platforms, find it more difficult to operate. Cooperatives in various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taking advantage of the new opportunities made available in the “white economy”, “green economy”, “circular economy” and creative industries. In many of these activities, the cooperative form has a comparative advantage because decentralized and democratic management is often conducive to their delivery. They also tend to be more gender-balanced. Regrouping in cooperative groups and networks offer better conditions to develop in these sectors thanks to the economies of scales that such groupings generate.

The needs and demands for goods and services have also undergone a profound transformation everywhere. The needs of society and, more generally, of civilization as a whole, have changed. The needs that are appearing are not only linked to consumers' or users' choice, but also to evolutions that are leaving society with few or no options, such as the need to tackle environmental degradation, climate change, migrations, the refugee crisis (including the incipient climate refugees),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ageing. The expansion of activities revolving around IT, health and

²¹ Mandl I. et al. (2015) *New Forms of Employment*; Dublin: Eurofound, p. 118-128

²² Such as Ikerlan and the other technology innovation centres of the MONDRAGON cooperative group, see <https://www.ikerlan.es/en/>

²³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27.28

²⁴ MIT Technology Review Business Report, p. 2

²⁵ Such as biotechnology, computer engineering, nanotechnology, robotics, telecommunications, data management, e-education etc.



social service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energy production, organic food, for example, also have to do with these changes.²⁶

Cooperatives have a clear advantage in these activities given their particularly strong adaptability to knowledge-intensive production. Indeed, they are characterised by a high level of legitimacy and service quality since they provide solutions **for** and **by** the concerned group of individuals. By including the community or beneficiaries in the design and delivery process, they increase the chances to link the offer adequacy to the real needs.

4 - The organization of work and production: "Labour is not a commodity"

A. Informal employment and the future

According to the new ILO definition, the informal economy “refers to all economic activities by workers and economic units that are – in law or in practice – not covered or insufficiently covered by formal arrangements” and “does not cover illicit activities”.²⁷

Today, the deterioration of existing social rights and protection granted to workers and a consequent tendency towards informalization is drawing more people away from formal employment arrangements. The inform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has come to stay, with informal employment reaching up to 90% of total employment²⁸ while in the industrialised ones, atypical forms of work inappropriately covered by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temming from within the formal economy have been increasing, including, among others, the so-called “uberization” phenomenon. Empirical research, in particular at the ILO, shows that, since the 1980s, the informal economy has been continuously on the rise.²⁹ While the precise impact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es on the size of the informal economy in different countries still needs to be better defined, new forms of informality, often related to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drawn attention particularly in the most industrialised countries³⁰ and in emerging economies.³¹

Cooperatives have been recognised as a tool for address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formal economy as well as informalisation. The ILO’s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 states that “Governments should promote the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what are often marginal survival activitie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informal

²⁶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in a study dedicated to the future of work, states that “62 per cent of new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jobs added through 2022 will be in health care” in the USA; MIT (2015) The Future of Work; MIT Technology Review Business Report, p. 3

²⁷ ILO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 204

²⁸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5

²⁹ ILO (2012) The informal economy and decent work: A policy resource guide - Supporting transitions to formality, Geneva: ILO

³⁰ Like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see contributions from Smart and JWCU; In some countries, like Romania, informal work involves up to 31.5% of the employed population, with more than the double for the youth

³¹ Such as India, China, Brazil or Indonesia; see Eum, H.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 CICOPA



economy") into legally protected work, fully integrated into mainstream economic life" (paragraph 9). ILO's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 204) also recognizes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transition.

Cooperatives have been created to support and strengthen economic activities of self-employed producers or entrepreneurs in the informal economy, through various forms of shared services. Whereas these cooperatives cannot always provide a stable legal status or formal social protection to their members, they contribute to raising and stabilising members' incomes, increasing th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of members' business, and making members' voices heard collectively. Through cooperatives, self-employed producers and entrepreneurs in the informal economy can enjoy various services which were not available to them due to the small size of their business and lack of applicable formal arrangements. In the debates on the problems in the informal economy related to work and employment, several categories of workers who are in vulnerable situations have drawn special attention: these include waste pickers, domestic workers, migrant workers, street and market vendors, transport workers, home-based workers and providers of social services. Cooperative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in particular, in bringing income-generation opportunities to women, especially through women-only cooperatives.³² Many studies and reports show that shared service cooperatives among workers and produc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supporting and representing them, by providing them a formal framework through which their economic activities can be recognised as real businesses and members can negotiate with public authorities in order to introduce appropriate social security and protection schemes.³³

B. The organization of work within global supply chains

With globalization,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has been taking place over the last 30 years. On the one hand,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ends to take place either where it costs less or where the clients are situated, or both. On the other hand, with the strengthening of global supply chains, a good or service is increasingly produced in a complex and multistage process involving several regions of the world.

Cooperatives in the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are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rough it, to decent jobs. They provide scale to small and marginalised groups such as small-scale farmers, enabling them to access market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e with conditions that they could not enjoy as individuals. They provide a governance model that allows participation and inclusion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workers, i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They redistribut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operation of global

³² Like the SEWA cooperatives, see <http://www.sewfederation.org/>

³³ See Birchall, J. & Simmons, R. (2009) *Co-operatives and poverty reduction - Evidence from Sri Lanka and Tanzania*, Manchester: Co-operative College; ILO, 2012, *The informal economy and decent work: A policy resource guide - Supporting transitions to formality*, Geneva: ILO; and Wanyama, F. O. (2014)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Geneva: ILO



supply chains to its members and stakeholders including small-scale producers, workers and consumers.

Cooperatives have shown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modify their production in order to remain or insert themselves in global supply chains provided they receive the appropriate advisory services, while cooperative groups have often been in a stronger position to internationalize and control larger parts of the chains, allowing for the creation of new jobs both in the original location of the enterprise and in new ones.³⁴ Fair trade cooperatives are another example of cooperative internationalization, based on value chains.³⁵

Worker buyouts under the cooperative form often take place in enterprises that are part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at are closing down or where there is an intent to delocalize them elsewhere. Wherever business support services from the cooperative movement offer professional consultancy to these enterprises, like in France, Italy and Spain, these operations show a high rate of success.³⁶

C. Diversific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everal of the non-standard employment forms mentioned in the inception report are essentially negative, such as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dependent self-employment, zero hour contracts and the “gig economy”. However, the cooperative system has generated a series of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that are based on an effort to implement decent work, such as the status of worker-members in worker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salaried employment for self-employed in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interim work in labour cooperatives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than in average interim agencies, etc.³⁷ The latter, however, should not be confused with false cooperatives which are involved in labour intermediation, as has been the case in particular in Latin America.

The Inception Report also mentions the “platform economy”. Conventional technology platforms benefit from the dispersal of the work force and the loss of physical connection with it. Separate parts of a same project are assigned to a constellation of workers disconnected from each other.³⁸ As a result, the workers only maintain a virtual and disembodied link with their employer, making them unable to join forces to make common social demands.

³⁴ Luzarraga JM La estrategia de multilocalización internacional de la Corporación Mondragon, Ekonomiaz N.º 79, 1st term, 2012, www.ogasun.ejgv.euskadi.eus/r51.../es/.../downloadPDF

³⁵ Sanchez Bajo, C. and Silvestre, B. (2014) Cooperatives in global value chains; Coffee in Guatemala and cooperatives, in Congrès des Sciences Humaines 2014

³⁶ CECOP (2013)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under the Form of a Cooperative in Europe; Brussels: CECOP

³⁷ Eum HS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p. 66

³⁸ For example, Amazon’s on line labour brokerage Mechanical Turk “allows for a project to be broken down into thousands of bits, which is then assigned to so-called crowd workers. Often well-educated, novice workers are making between two and three dollars an hour in this environment. Just like migrant workers, barristers, or temps in the fast food industry, they are working long hours, are underpaid and treated poorly by their virtual bosses, and have few or no benefits”, in Scholtz T. (2015) *Platform Cooperativism – Challenging the Corporate Sharing Economy*, New York; Rosa Luxemburg Stiftung, p. 8



But online platforms do not necessarily predetermine a type of organization of work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e workers or producers. By putting the interest of digital platform users at the forefront, and by involving them in financing, commercial life and business management, cooperative platforms can direct their efforts towards the satisfaction of this interest and not towards the accumulation of profits for the benefit of external investors who have a purely speculativ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Despite the spatial dissemination which characterizes the platform economy, cooperatives mainta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the workers or producers.

Embryonic initiatives of platforms using the cooperative democratic control model tend to suggest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ntrol by a few can be de-coupled, and that the platform model can be compatible with the inner structural features which characterize cooperatives, no matter whether they are producers', users', worker or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5 - The governance of work

A. Governance of work: The state, employers and workers

While trade unions have suffered a fall in membership over the last few years as the Inception Report mentions, the membership of cooperatives has reached 1.2 billion, and the level of cooperative employment involves a substantially higher amount of persons than those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279 million against around 180 million). As for the ratio of unionization in cooperatives, it is often similar to the rest of enterprises in the same sectors and in the same countries.

Cooperative apex organizations (federations, confederations, unions etc.) are usually classified as employers' organizations and, like the latter, have been growing in numbers and membership over the last few years. Since cooperatives are member-based enterprises with a social mission, their apex organizations also have a specific nature and mission as compared to conventional employers' organizations.

B. Innovation in governance and labour regulation

Cooperatives have been key innovators in the governance of work, providing members, in the case of worker and producer cooperatives, with the double status of workers and producers and of co-owners of their own enterprises.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a model now expanding rapidly in several countries, make workers and/or producers share the governance of the enterprise with other stakeholders such as the users. These models in the governance of work provide a strong innovative and experimental character to cooperatives, based on member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ontrol.

While social dialogue and tripartitism should certainly be pursued, the world of work would certainly gain a lot by inserting cooperatives in social dialogue and tripartism. At the same time, alliances between cooperatives and both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sought.



II.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The ILO, through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 193),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in job creation, mobilizing resources, generating investment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nd (...)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It would thus be very important that the Global Commission extend this recogni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future of work. As this document suggests, promoting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can be part of the solution to many of the challenges that the changing world of work is fac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herefore call on the Global Commission to:

- Recognize that cooperatives make up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world employment and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ackling the challenges highlighted in the Inception Report, and promote the cooperative model as a creator of quality jobs and collective wealth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Recommend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o identify and showcase examples of good practice by cooperatives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highlighted in the inception report;
- Recommend that national governments fully implement cooperative promotion policies enshrined in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 193), in particular in:
 - Issuing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ICA's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Promoting policies for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ve reserves and access to credit;
 - Helping cooperatives develop social policy outcomes like benefitting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migrants and refugees;
 - Promoting policies for the participation of women;
 - Promoting cooperative education and training at all levels of the educational system, information on cooperatives and skills training in cooperative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 Supporting research on cooperatives and the introduction of a harmonized methodology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to demonstrat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ooperatives;
 - Promoting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informal economy activities into formal ones;
 - Promoting initiatives that facilitat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start-up, consolidation, growth and clustering of cooperatives through access to business support services;
 - Encouraging exchanges of experience among cooperatives;
 - Encouraging the representation of cooperatives by cooperative organization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Help cooperatives implement the ILO's Decent Work agenda and the UN SDG n°8

Through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193),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committed itself to promoting Decent Work (mentioned in the preamble and in para 4)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mentioned in the preamble and in para 4. 1 a)), while SDG n° 8 formally relays the concept of decent work within the SDGs.



The ICA therefore requests governments to promote cooperatives' efforts in promo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rking systematically to promote conditions that lead to decent work – job creation, labour rights,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dialogue aligned with the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Employment. Governments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operative model as a creator of quality jobs and collective wealth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Soci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The conditions of access to social protection should change so that all workers can have access to it, independently from their work status.
- Workers' rights. The absence of any type of discrimination is enshrined in the first cooperative principle. States should approve legislation allowing for monitoring of the proper functioning of cooperatives, including in the field of workers' rights.
- Social dialogue. The importance and role of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at all levels and to address the impacts of major digital,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 changes that cause profound changes for employees, employers and their relationships should be upheld. In addition, dialogue and alliances between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the trade unions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 AB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is a non-profit inter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1895 to advance the cooperative model. The ICA is the voice for cooperatives worldwide, representing 308 national level cooperative federations, individual cooperative organisations and government offices concerned with cooperatives across 107 countries (figures of April 2018).

The ICA works with glob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organisations to create the legislative environments that allow cooperatives to form and grow.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promot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values-based business model.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unites cooperatives worldwide and is the custodian of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and makes the case for their distinctive values-based economic business model which also provide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ith an instrument of self-help and influence over their development. The ICA advocates the interests and success of cooperatives, disseminates best practices and know-how, strengthens their capacity building and monitors their performance and progress over time.

One in every six people on the planet are cooperators. Through its membershi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represents 1,2 billion people from any of the 2.94 million cooperatives worldwide. The largest 300 cooperatives in the world have combined annual revenues of 2.16 trillion USD (2015) and 28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10% of the employed population) secure their livelihoods in cooperatives, either through direct employment or by organizing through a cooperative.

Operating from a global office in Brussels, Belgium,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s organised with four Regional Offices (Europe, Africa, Americas, and Asia-Pacific), and eight Sectoral Organisations (Banking, Agriculture, Fisheries, Insurance, Health, Housing, Consumer Co-operatives, and Industry and Service cooperatives).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Uniting,
representing 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s South Korea, July 2018

www.ica.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Uniting,
representing 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서울/대구, 2018년 7월 12-13일

www.ica.coop

The cooperative movement

- Above 1.2 billion members (an estimated 1 out to 6 people in the world);
- 3 million enterprises worldwide
- 10% of the world's employed population
- The cooperative share of GDP in the 10 biggest economies is equivalent to the GDP of Italy



* Figure as of May 2018

협동조합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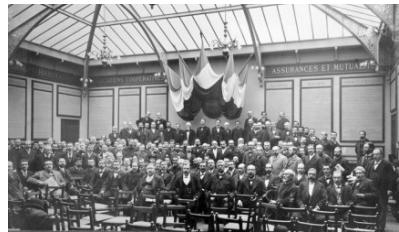
- 12억명 이상 조합원 (세계 인구 6명 당 1명 추산);
- 전세계 300만 개 협동조합 기업
- 전세계 고용인구 10%
- 10대 경제강국 내 협동조합 경제 규모의 합이 이탈리아 GDP에 상응



* Figure as of May 2018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 Non-profit inter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1895;
 - The custodian of the **cooperative identity** (definition, values and principles):
 - **The apex organisation** for cooperatives worldwide, representing cooperative federations and organisations **across 108 countries***;
 - The ICA members are **national level cooperative federations** and **cooperatives**;
 - The ICA associate members are organizations promoting cooperatives.



Congress of the ICA, 1895



The ICA's General Assembly in Cape Town, 2013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1895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민간 단체
 - 협동조합 정체성 (정의, 가치, 원칙) 수호자
 - 108개 국가 협동조합 연합회들과 관련 조직들을 대표하는 전세계적인 수준의 연합조직;
 - ICA 회원은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협동조합
 - ICA 준회원은 협동조합 지원 조직



ICA 대회, 1895



ICA 총회, 케이프타운, 2013



The cooperative identity

- 1844 Rochdale “Recommended practices”
- 1937 ICA Paris Congress: first review of the “Rochdale Principles”
- 1966 ICA Vienna Congress: second review of the cooperative principles
- 1995 ICA Manchester Congress: third review of the cooperative principles (7 years of consultation) and publication of 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2015 ICA publishes the Guidance Notes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



협동조합 정체성

- 1844 로치데일 “권고되는 실천들 (Recommended practices)”
- 1937 ICA 파리 대회: “로치데일 원칙들” 첫번째 개정
- 1966 ICA 비엔나 대회: 협동조합 원칙 두번째 개정
- 1995 ICA 맨체스터 대회: 7년에 걸친 토론에 기반한 협동조합 원칙 세번째 개정 및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 발표
- 2015 ICA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안내노트” 발간



The ICA as the global voice of cooperatives

- Observer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since 1946;
 - Continuous relations with the ILO since 1920;
 - Actively engaged with other UN organizations like FAO and IFAD and with the EU institutions;
 - Member of COPAC (gathering UNDESA, ILO, FAO and WFO)
 - Secure policy and legal recognition for cooperatives as a source of sustainable growth, decent work, food security, production, consumption, habitat, credit, insurance, social inclusion, peace, etc.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협동조합의 국제적 목소리로서 ICA

- 1946년부터 국제연합의 옵저버 지위
 - 1920년부터 ILO와 지속적인 관계
 - FAO, IFAD 등 국제연합 기구들 및 유럽연합 기구들과 적극적인 연계
 - UNDESA, ILO, FAO 및 WFO와 함께 COPAC 구성원
 -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 식량 안전, 생산, 소비, 주거, 신용, 보험, 사회통합, 평화 등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주요 과제에 대한 해법임을 정책과 제도로 인정받고자 노력



200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6/114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Recognizes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including women, youth, older pers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re becoming a major factor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001: UN 총회 결의안 56/114 “사회발전에서 협동조합”

“다양한 형태를 가진 협동조합들은 여성,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2002: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n° 193)

- First intergovernmental text spelling out the whol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nd providing policy guidance on cooperatives
- Approved almost unanimously by governments, employer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except for 2 abstentions)
- Only ILO text mentioning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 Cooperatives have been mentioned in other ILO Recommendations since then (in particular on the transition to the formal economy and on peace)



2002: ILO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 (n° 193)

-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전문을 명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는 첫번째 정부간 문서
- 정부, 고용주조직 및 노동조합에 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 (2개의 기권 예외)
- 시민사회 조직을 언급한 유일한 ILO 문서
- 이후 다른 ILO 권고안들에서도 협동조합이 언급되어 옴 (특히, 공식경제로의 전환 및 평화와 관련한 권고안)



201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entenary

In 2019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established in 1919, will have 100 years

The ILO will focus the whole year on the issue of the Future of Work

Several high profile events are due to take place, and important documents could be published



2019: ILO 백주년

2019년은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 (ILO)의 100주년이 되는 해

ILO는 전체 1년 동안 일의 미래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고위급 행사가 개최되고 중요한 문서들이 추진될 것임.



2018: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This year, an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s discussing the Future of Work issue, and is due to release a report at the end of the year

The ICA has sent comments to the Commission, with a text called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2018: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올해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는 일의 미래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관련 리포트를 출간할 예정임.

ICA는 글로벌위원회에 “협동조합과 일의 미래”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음.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협동조합과 일의 미래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협동조합과 일의 미래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5. **Cooperative work and technological change**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5. 협동조합 일과 기술변화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5. Cooperative work and technological change
 6. **Cooperatives and informal work**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5. 협동조합 일과 기술변화
 6. 협동조합과 비공식 노동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5. Cooperative work and technological change
6. Cooperatives and informal work
7. **Cooperatives contribut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5. 협동조합 일과 기술변화
6. 협동조합과 비공식 노동
7. 고용형태 다각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5. Cooperative work and technological change
 6. Cooperatives and informal work
 7. Cooperatives contribut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8. **Cooperative work and supply chains**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5. 협동조합 일과 기술변화
 6. 협동조합과 비공식 노동
 7. 고용형태 다각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8. 협동조합 일과 수요공급사슬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2. Societal components of cooperative work
3. Cooperative work and social protection
4. Cooperatives and work stability and security
5. Cooperative work and technological change
6. Cooperatives and informal work
7. Cooperatives contribut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8. Cooperative work and supply chains
9. **Cooperatives and the governance of work**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2. 협동조합 일의 사회적 요소들
3. 협동조합 일과 사회보장
4. 협동조합과 일의 안정성 및 안전
5. 협동조합 일과 기술변화
6. 협동조합과 비공식 노동
7. 고용형태 다각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8. 협동조합 일과 수요공급사슬
9. **협동조합과 일의 거버넌스**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hank you!

www.ica.coop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감사합니다!

www.ica.coop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동향

- 디아나 도브간 (CICOPA 사무총장)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s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My presentation

1. About us **CICOPA**



2. Worker & social cooperatives:
growing trends

www.cicopa.coop



My presentation

1. About us **CICOPA**



2. Worker & social cooperatives:
growing trends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About CICO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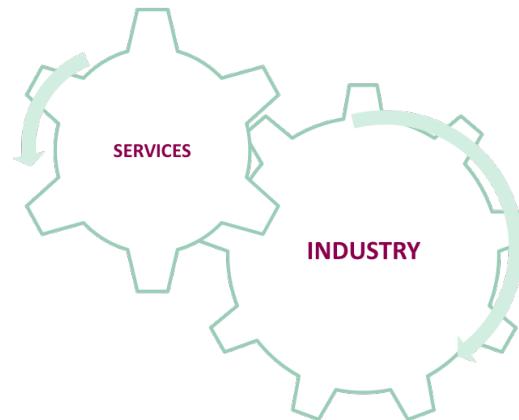
About CICOPA



About CICOPA

a **sectoral** organis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since 1947

2 Regional organisations:
•CECOP-CICOPA Europe
•CICOPA Americ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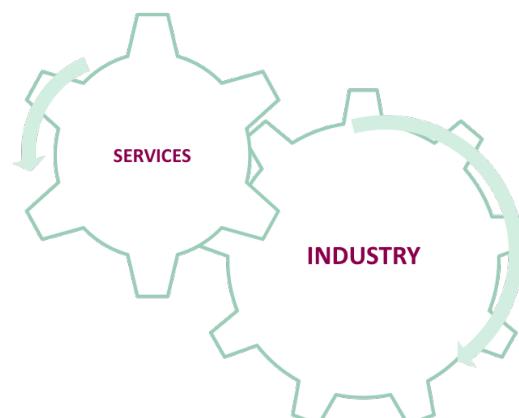
www.cicopa.coop



About CICOPA

1947년 설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부문** 조직

2개의 지역 조직:
•CECOP-CICOPA Europe
•CICOPA Americas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About CICOPA



www.cicopa.coop



About CICOPA



www.cicopa.coop



About CICOPA

Within the **CICOPA** network:

45 members in 29 countries
68,000 enterprises
4 M workers
86% worker-members or producer-members

Beyond the CICOPA network:

16 M workers
10.8 M worker members
5.8 M self-employed producer-members

www.cicopa.coop



About CICOPA

CICOPA 네트워크:

29개국 45개 회원조직
68,000 협동조합 기업
4백만 노동자
80%가 노동자조합원 또는 생산자조합원

CICOPA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1,600만 노동자
1,080만 노동자조합원
580만 생산자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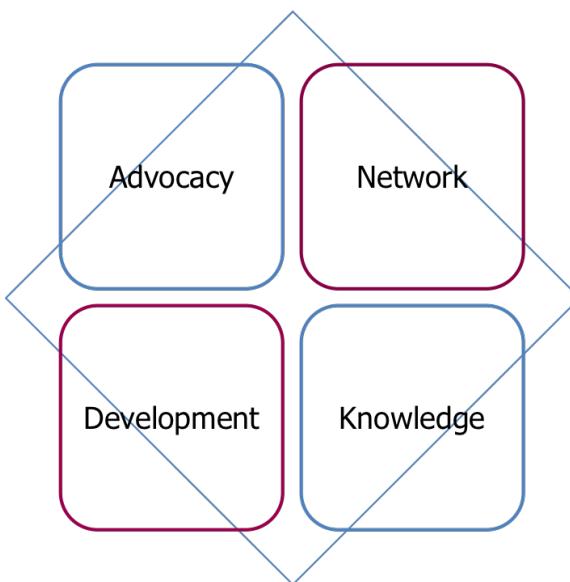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About CICOPA



Day Month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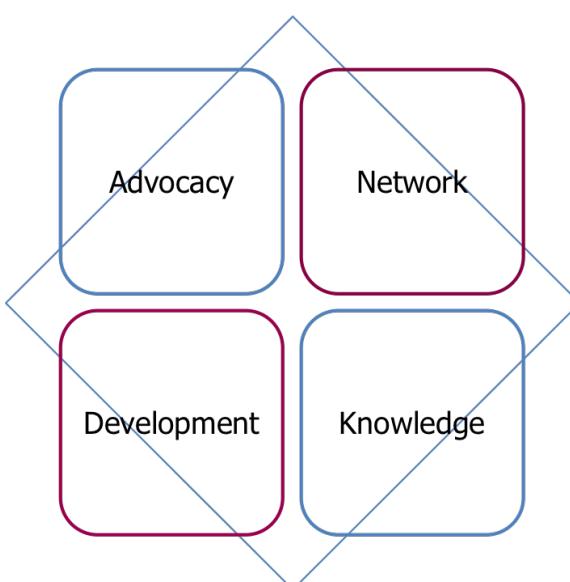
Event

Place

www.cicopa.coop



About CICO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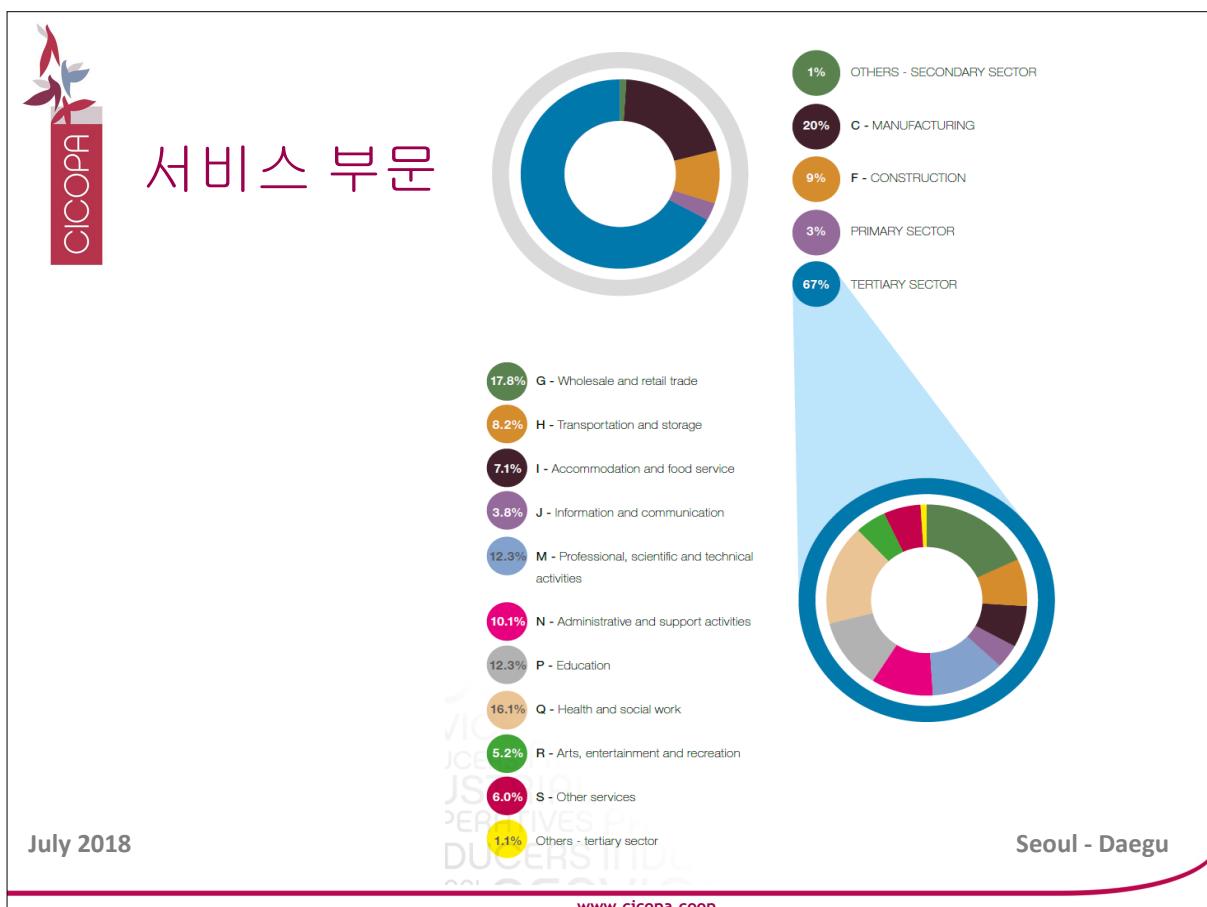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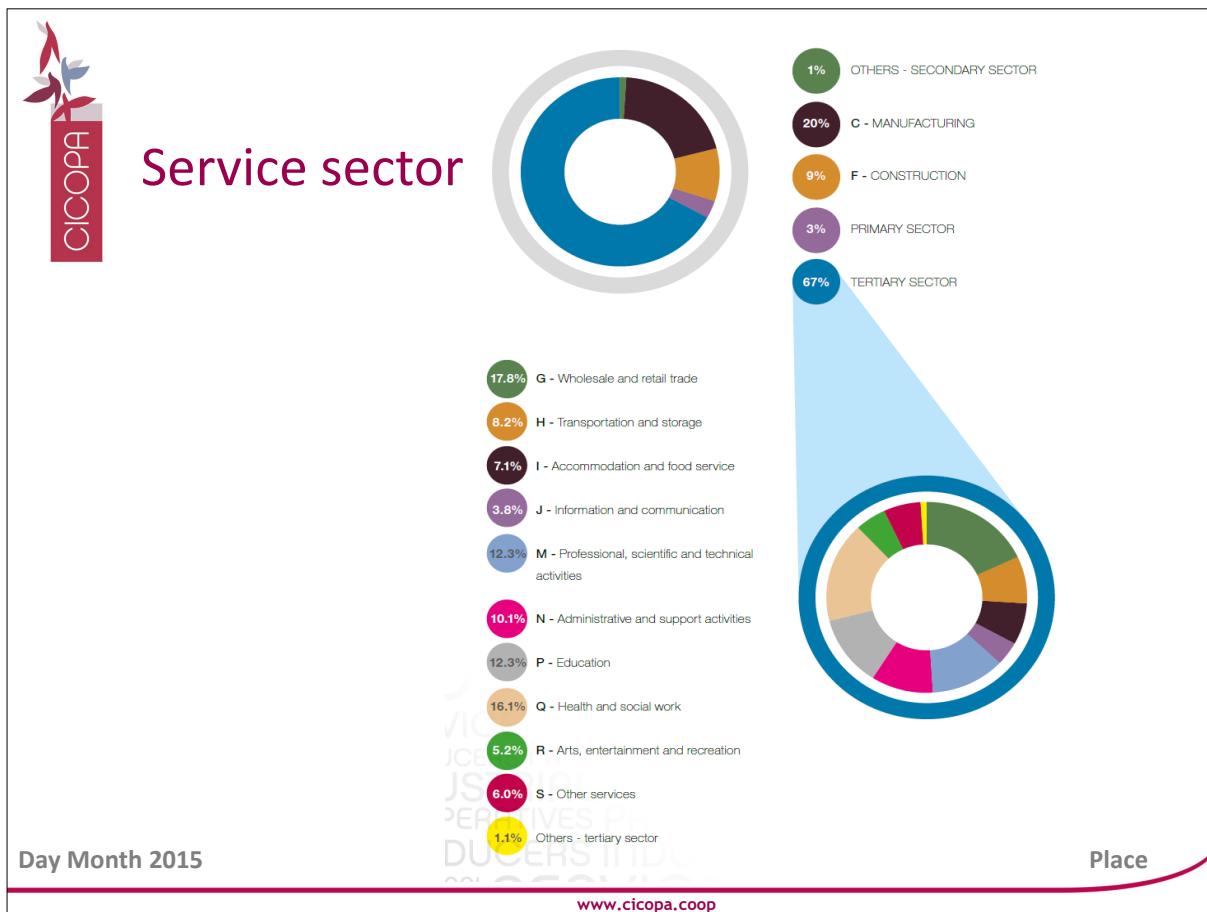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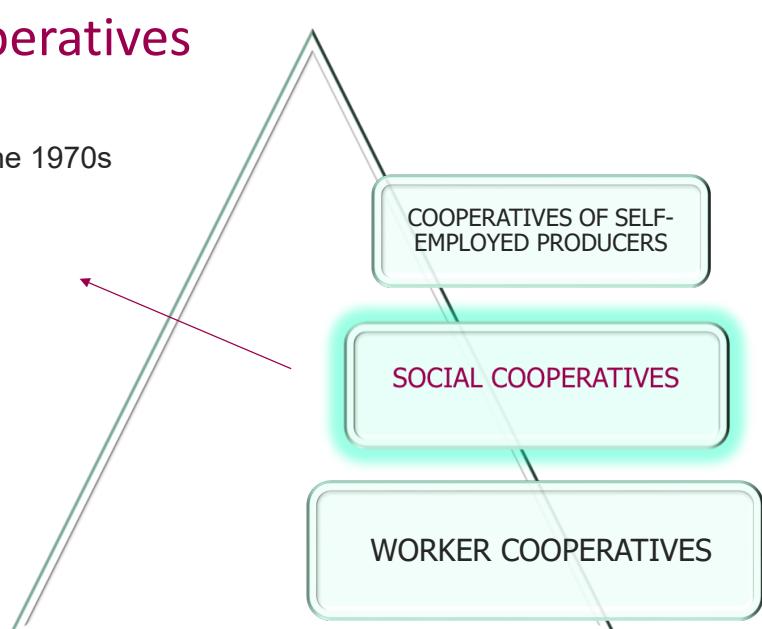
Worker and social cooperatives: growing trends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동향



Social coope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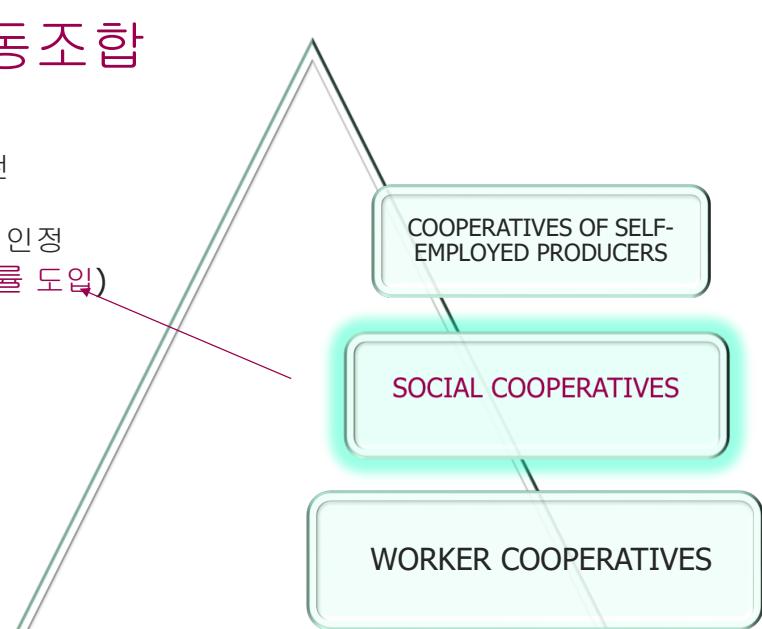
- Quickly developing since the 1970s
- Recognized legal status in different countries
(10 national legislations over the last 25 years)



Day Month 2015 Event Place
www.cicopa.coop

사회적협동조합

- 197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
- 많은 나라에서 법적지위로 인정
(지난 25년 동안 **10개 법률 도입**)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Workers buyouts



Economic crisis and consequent failures and bankruptcies



Demographic changes and aging population: retirement of business owners without succession

Day Month 2015

Event

Place

www.cjcopa.coop



노동자기업인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기업의 실패 및 파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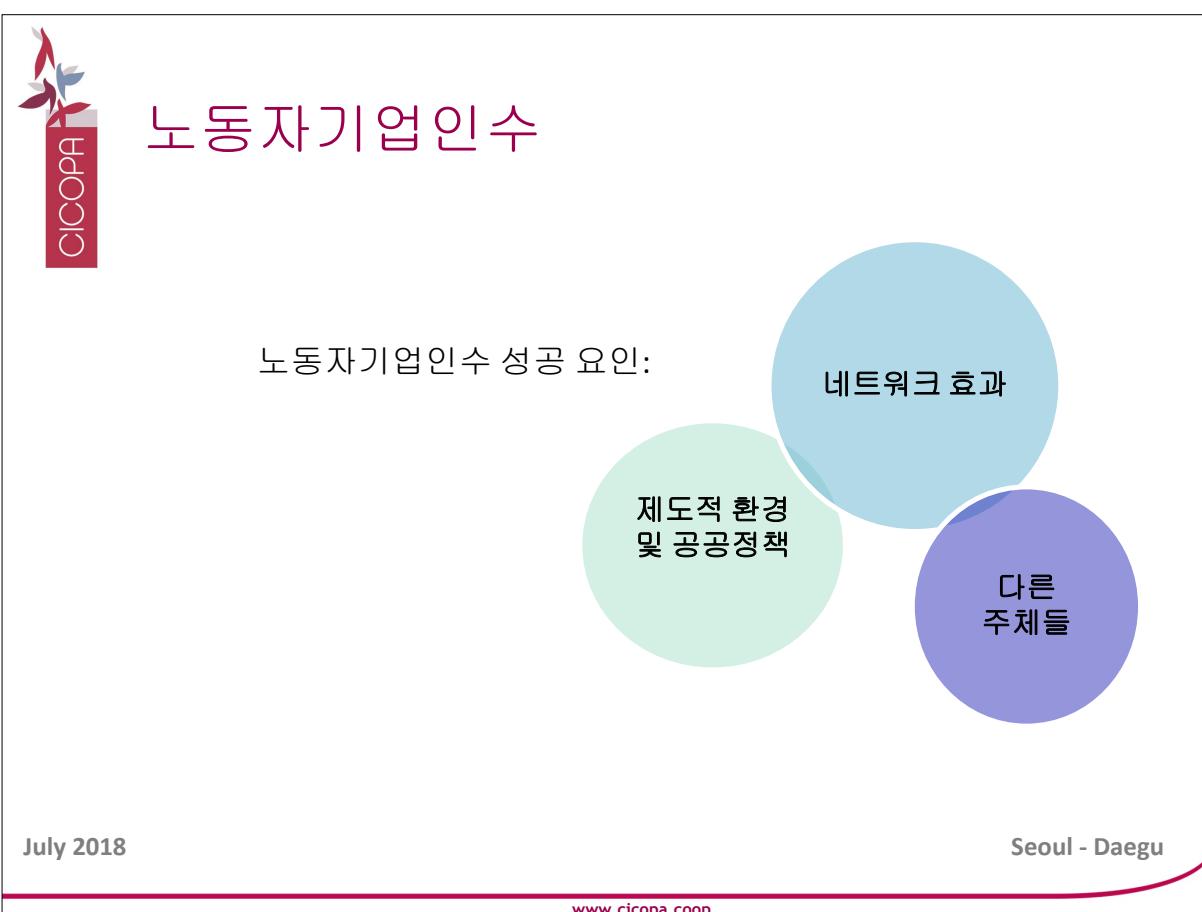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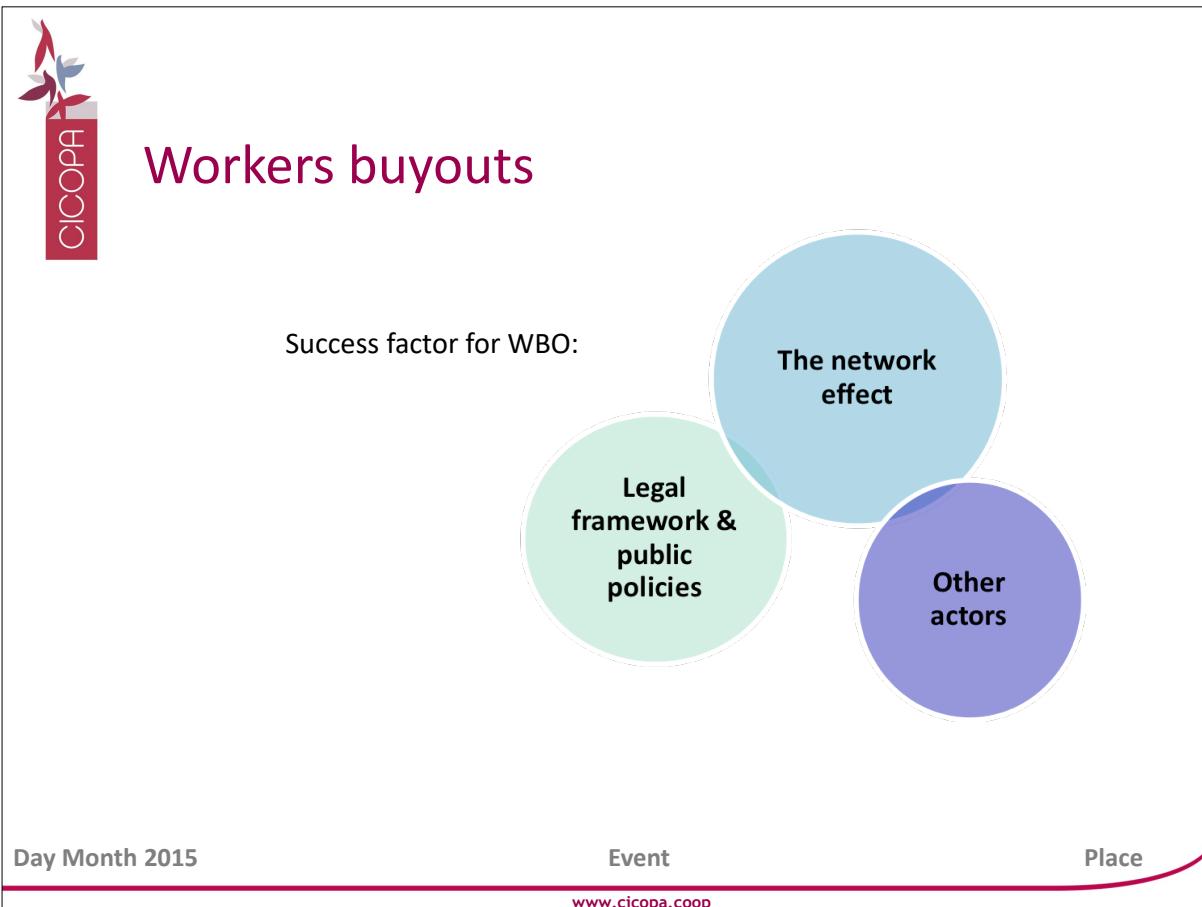


인구학적 변화와 고령화 증가: 경영자들의
승계자 없는 은퇴

July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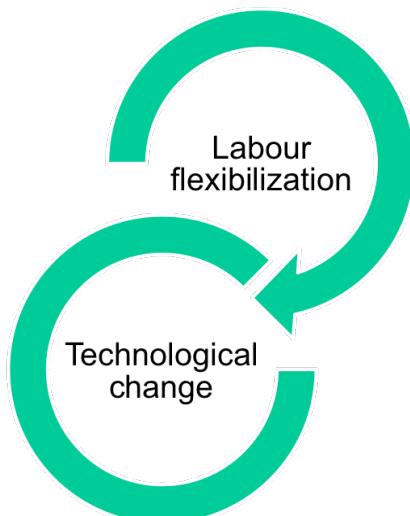
Seoul - Daegu

www.cicopa.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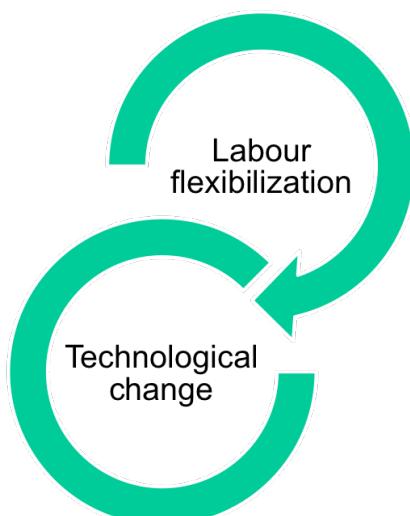
Independent producers'/workers' cooperatives



www.cicopa.coop



독립생산자/독립노동자들의 협동조합



July 2018

Seoul - Daegu

www.cicopa.coop



www.cicopa.coop

Follow us:



www.cicopa.coop

Follow us: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

- 엄형식 (ICA/CICOPA 연구조사 담당)



Worker cooperatives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 How can worker cooperative model be an answer?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노동자협동조합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

- 노동자협동조합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가?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About presentation

- Summary of the chapter 4 «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 (Eum, 2017) published by CICOPA
- A chapter in the joint project of publication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 (ILO Coop Unit, ICA CCR and CICOPA)
- To aim at clarifying several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informal economy situation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발표문에 대하여

- CICOPA 출간 «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 (Eum, 2017) 4장 내용 요약
-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 (ILO Coop Unit, ICA CCR and CICOPA) 중 한 챕터 (2019년 출간 예정)
- 비공식경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실천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자 함.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Background

- Increasing interest o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address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UN SDGs, ILO recommendation N° 204)
 - Informalization of employment and economy is a problem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atypical forms of work, gig economy, uberization...
 - Need to recognize new forms of employment which are neither employees nor self-employed, e.g. self-employed contractors, freelancers, on-line platform workers...
 - Conceptual confusion on cooperatives' role in addressing the problems related to issue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economy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jcpa.coop



배경

-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UN SDGs, ILO recommendation N° 204) 다룸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고용과 경제의 비공식화(Informalization)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점차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gig economy, 우버 등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 등)
 - 피고용인도 자영업자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고용형태를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등장 (가령, 특수고용,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 등)
 - 비공식 경제 및 비공식 고용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존재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What are problems?

- Conceptual ambiguity of the informal economy – Formality and informality themselves are neither good nor bad.
- Focus on problems caused by the informal economy – Deficits of decent work (employment generation, social protection, rights at work and social dialogue)
- Informalization of employment and economy across the world
- **How are cooperatives answering these problems?**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무엇이 문제인가?

- 비공식경제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 – 공식성과 비공식성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님.
- 비공식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함 Deficits of decent work (employment generation, social protection, rights at work and social dialogue)
- 고용 및 경제의 비공식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답할 것인가?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General contributions

- Saving and credit cooperatives, mutual insurance, multi-purpose cooperatives and consumer cooperatives – provide certain formal or semi-formal services and access to formal arrangements
- Shared service cooperatives – strengthen economic activities of self-employed producers or entrepreneurs, through various forms of shared services, such as marketing, collective purchasing, provision of premises, information, R&D, training and consulting.
- **Not directly aim at changing informal employment into formal on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일반적인 기여

- 금융협동조합, 상호보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 비공식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공식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식부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서비스공유협동조합(Shared service cooperatives) – 마케팅, 공동구매, 공동공간 활용, 정보제공, R&D, 훈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영생산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강화시켜줌
-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비공식 고용을 공식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아님.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Specific contributions in addressing employment issues in the informal economy

- Shared service cooperatives specialised in providing work opportunity – play a role as employment agency which provide work-placement services. e.g. domestic cleaning worker cooperatives in the US, actors' cooperative agencies in the UK
- Labour cooperative model – play a role as intermediary employer. e.g. labour service cooperatives in Philippines, some worker cooperatives in Colombia and Brazil
- New initiatives focusing on provision of formal employment contracts – provide freelancer members with legal status as employee. e.g.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in France, Smart in Belgium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비공식경제의 고용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기여들

- 일자리 소개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공유협동조합 - 일자리 소개 및 배치를 제공하는 인력소개소의 역할. (미국 가사청소 노동자협동조합, 영국 배우 협동조합)
- 파견노동협동조합 (Labour cooperative model) – 중개고용인으로서의 역할 (필리핀 노동서비스협동조합 labour service cooperatives, 콜롬비아 및 브라질 노동자협동조합 중 일부)
- 공식고용계약 제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실험들 – 프리랜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 벨기에 스마트)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Worker cooperatives as a direct solution to formalize informal employment but...

- Primary aim of worker cooperatives is to provide formal and decent employment to their members
 - But only when conditions would be met
 - ✓ Can worker-member benefit from legal status as employees and social protection & rights at work accordingly?
 - ✓ If not, does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ulate social protection & rights at work for worker-members?
 - If any of both would not be met, there is a risk that the cooperative model might be abused by real employers or public authorities as cheap and easy solutions for out-sourcing and/or quick job creation.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를 위한 직접적인
해법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 그러나...

- 노동자협동조합의 우선적 목적은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단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함.
 - ✓ 노동자조합원들이 피고용인 지위에 따르는 사회보장 및 노동권을 적용받고 있는가?
 - ✓ 그렇지 않다면, 협동조합 법 자체가 노동자조합원의 사회보장과 노동권에 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는가?
 -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노동자협동조합이 외주화와 손쉽고 값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A proposi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worker ownership

- Untold dilemma of cooperative model
 - ✓ Self-employed producers' shared-service cooperatives in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 (e.g. handcraft artisans' cooperatives, transport cooperatives) – Are members really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n't they dissimilated form of employees?
 - ✓ Worker cooperatives without legal protection for worker-members + Newly emerging forms of work (e.g. platform work) - flexibility or precariousness?
 - Debates around recognition of new forms of work – more flexibility + certain level of rights and protection + **(collective responsibilit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and worker ownershi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jcpa.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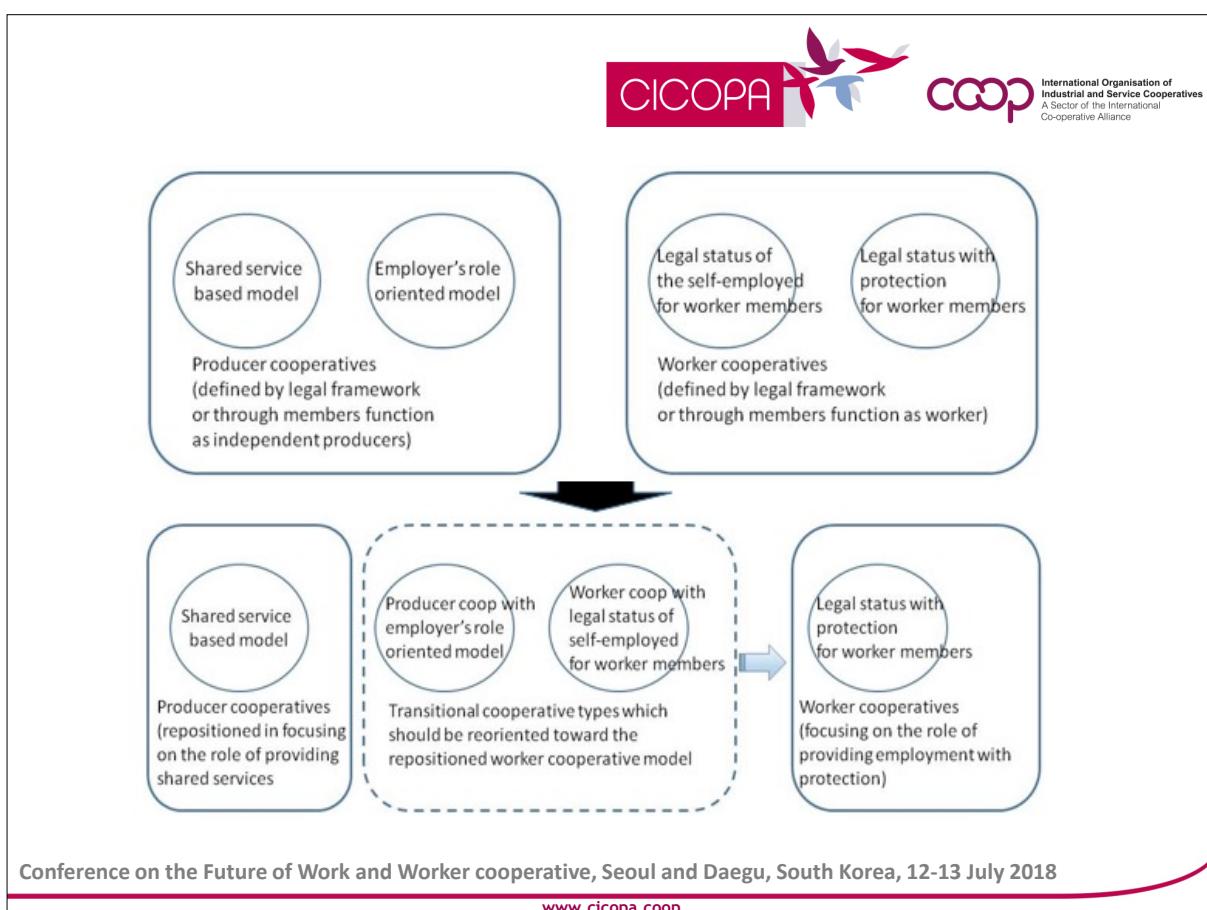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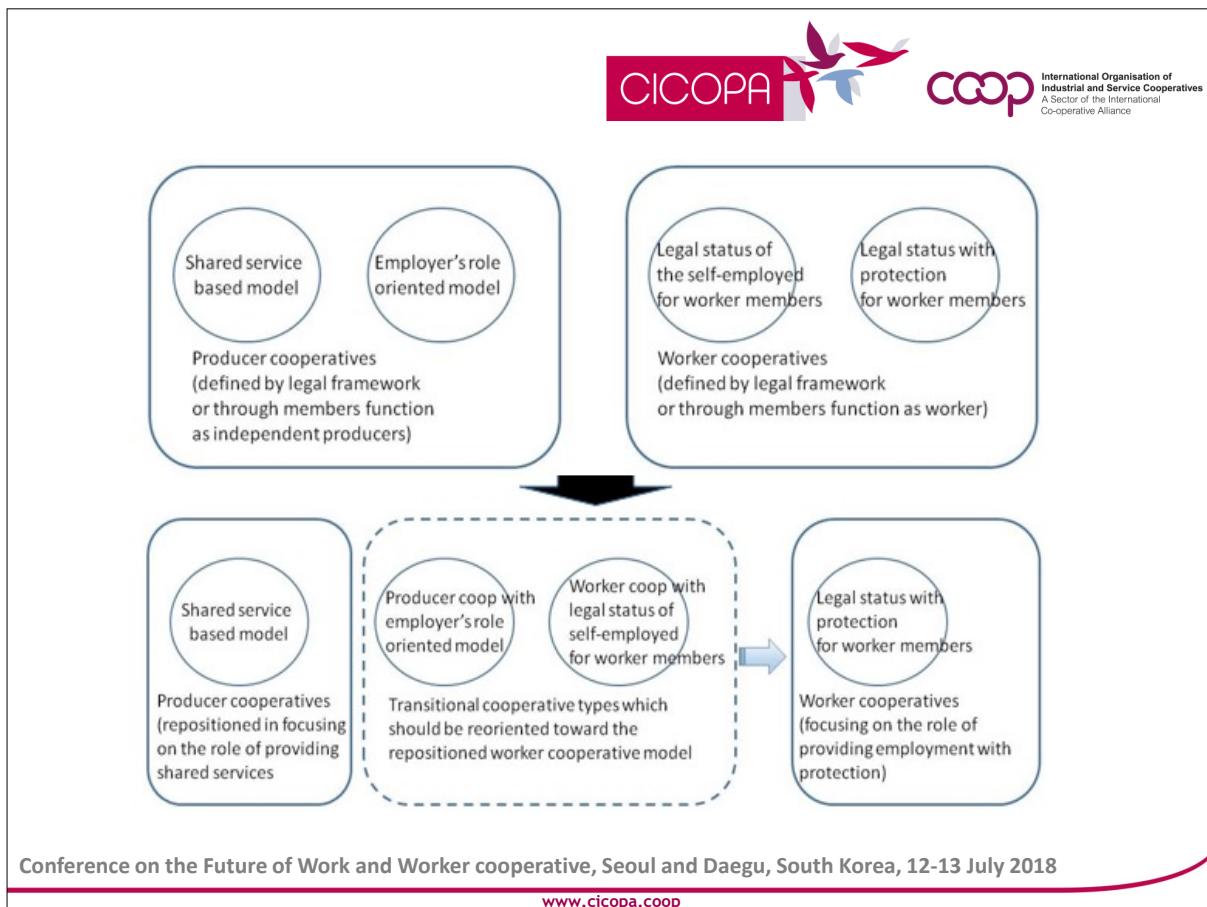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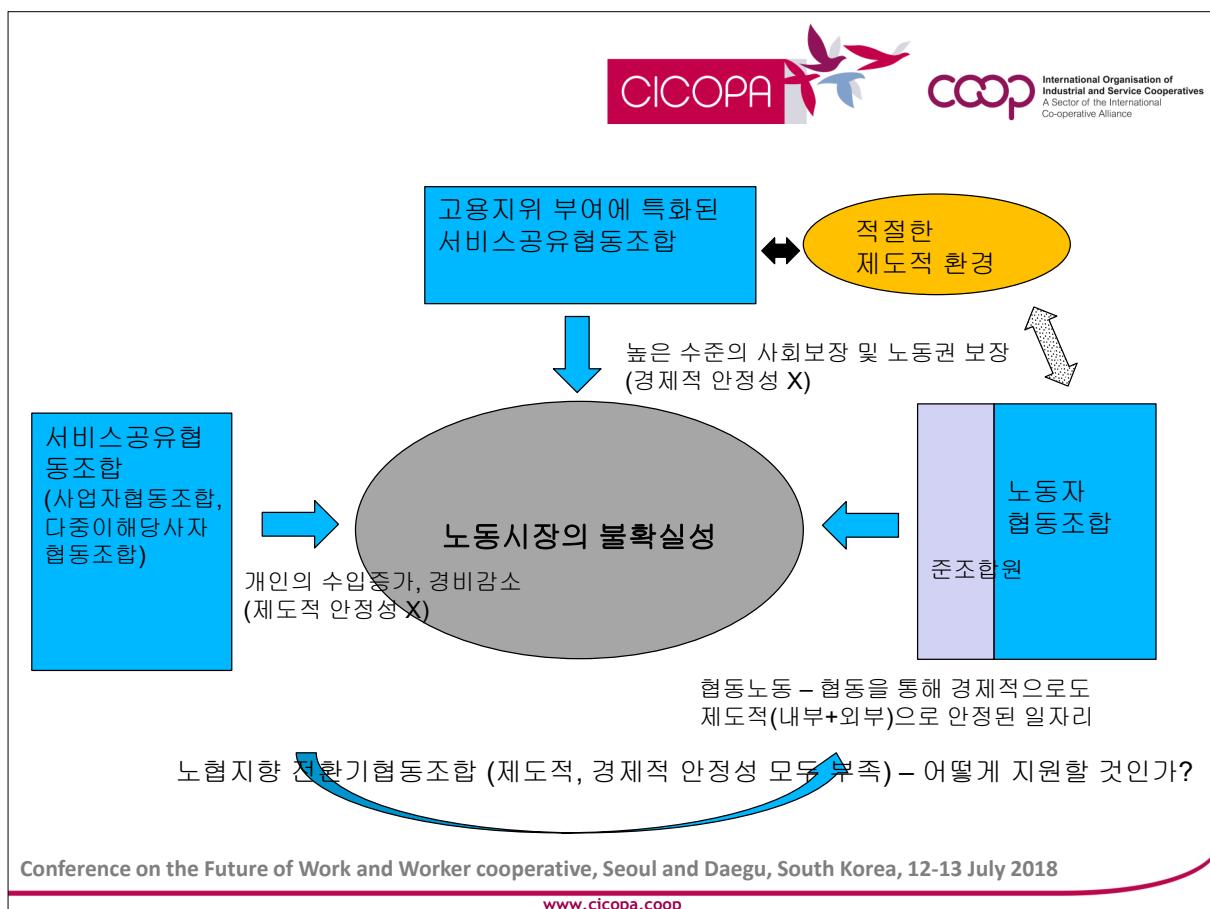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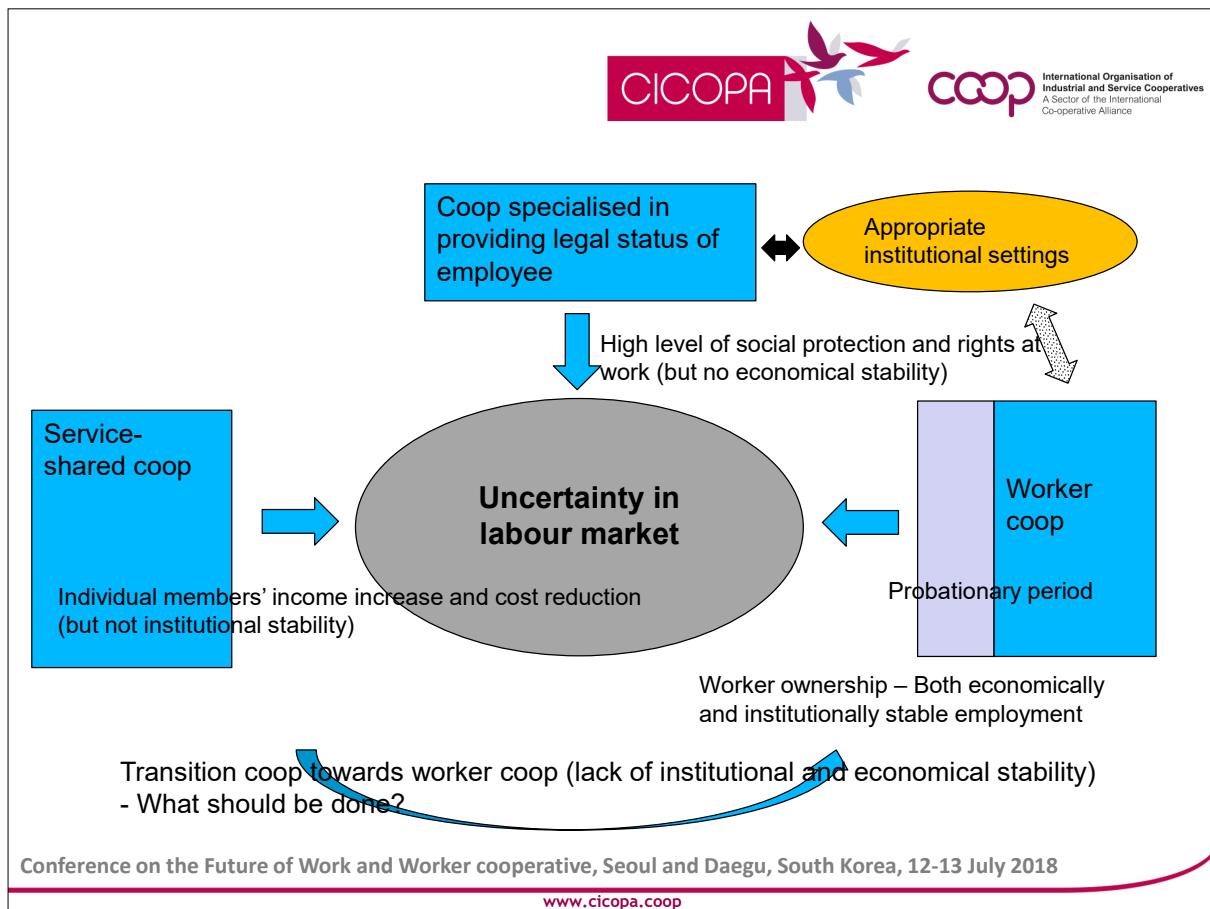
제안 – 협동노동의 제도화

- 협동조합 모델의 불편한 딜레마
 - ✓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생산자들의 서비스공유협동조합
(장인협동조합, 운수협동조합, 한국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
 - 조합원들은 정말로 독립적인 자영생산자들인가? 실질적인 고용상태를 감추는 위장막은 아닌가?
 - ✓ 노동자조합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없는 노동자협동조합 모델 +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 유연화 인가 불안정화인가?
 -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논의 – 보다 많은 유연성 + 일정한 수준의 노동권과 사회보장 + (민주적 거버넌스와 협동노동을 통한 집합적 책임)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cicopa.coop

Hyungsik Eum eum@cicopa.coo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cicopa.coop
eum@cicopa.coo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www.cicopa.coop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 세바스티안 폴(SMart 벨기에 혁신담당)

SMart

We are a platform that offers mutualized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to autonomous workers

www.smart-eu.org

The story

In 1998, SMart stands for 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es.

We started in Brussels, Belgium with artists as our first public.

Our founders started to help them deal with paperwork, standardizing contracts and giving info on how to declare their work.

We started off with a team of 3 advisors working in a basement.

Over the years more and more people came, we didn't look for them, they found us. Now we are open to every sector (not only artists).

We are a platform, we use IT tool in which our members can plug and out of to declare their work.

By invoicing through SMart, they become our employee and we their employer.

The concept and solution

That means they have access to a *better social security package* : health insurance, work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child allowance and they build up for their pension.

We manage the risks linked to freelancing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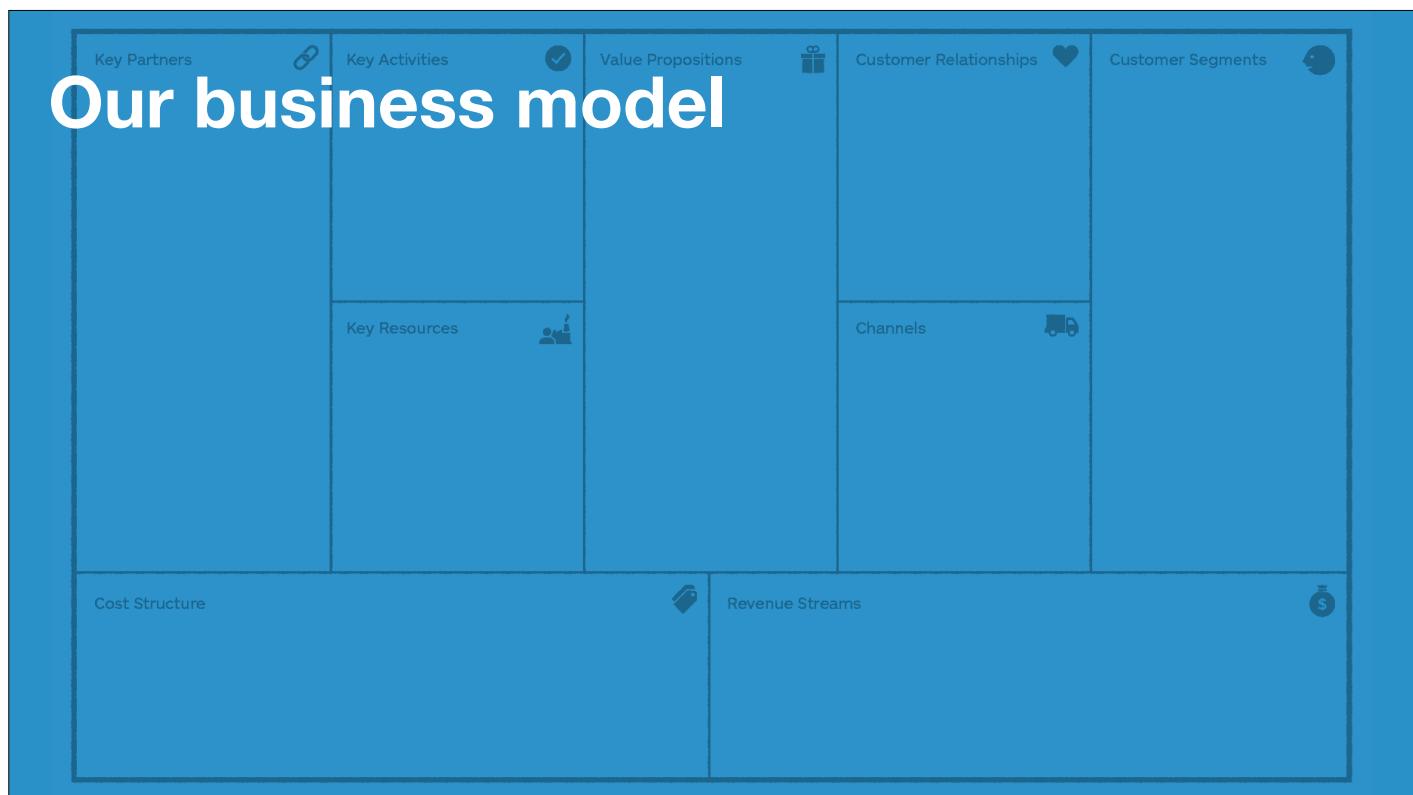
We allow the freelancer to stay autonomous, independent while working in shared structure which gives them security.

SMart take cares of the debt collection, the freelancer is paid 7 days after he finished his job thanks to the mutual guarantee fund which all users contribute to.

Members profile



- Develop multiple skills & jobs
 - Undertake different roles : employer/employee
 - Have multiple employers
 - Have irregular income
 - Are highly mobile
 - = complex legal issues, high risk, lot of administration



All of our members paid the same fee for the use of our services, 6.5% of the amount they invoice to their clients.

The revenues cover our operational costs and the *surplus* is invested in a range of mutualized services.

SMart is a cooperative, our members are the owners.

The value generated is completely reinvested in our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ment.

Mutualized services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 personal career advice, insurance, employment declaration, legal advice, leasing

Financial support : mutualized guarantee fund, debt collection, micro financing

Development/new services : creative hubs, European development, permanent contracts, trainings

Social Impact

We allowed people to transit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allowing them to access the safety net of social security.

- 17 000 shareholders in Belgium
 - 80 000 members for 2 200 FTE
 - 9 European countries
 - Turnover members : 170 000 000 €
 - 230 permanent workers in Be/Fr

Let's Coop



Our members could buy a share for 30€ .

We are a *multi-stakeholders coop* (freelancers, permanent workers, our partners and the clients of the freelancers).

We are officially approved as a coop that respects the 7 values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coops : one person/one vote, open coop, democratic governance model, autonomous (financial autonomy is cruci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Our General assembly became a yearly appointment with 1 000 of our stakeholders. Workshops, keynotes and debates inform on what we are doing.

The future of work





LaVallée : 6.000 m² creative hub in heart of Molenbeek, a neighborhood in Brussels.

130 creatives have a studio or office space, we also connect with many associations and schools.

New type of workers

At SMart, we saw the beginnings of the slasher, the gig worker who combines different jobs and skills for different clients within different social statuses.

For exemple, a visual artists, works 2 days a week as a food delivery biker. He likes the work out and the flexibility, he gets to know all the holes and problematic traffic situations. Food delivery platform refuses to assume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platforms dodge, see themselves as intermediaries), so we take that responsibility.

We started filling the gap between precariat and salariat.

IT & Social Innovation

At SMart we use technology to automate tasks. It allowed us to change scale and offer our solutions to a larger public.

It is also this use of IT solutions which makes it even more crucial to work on participation, to stay connected to needs of our stakeholders.

We believe in

- IT enabled social innovation
 - In Platform coops opposed to neo liberal model in which value and the data are owned by a small group of investors.

Platform Co-ops

PLATFORM COOPERATIVISM BUILDING THE COOPERATIVE INTERNET



It is a growing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uilds a fairer future of work. Rooted in democratic ownership, Co-op members, technologists, unionists, and freelancers create a concrete near-future alternative to the extractive sharing economy.

- Value created via platforms extracted and distributed to citizens, users instead of private stakeholders
- Reconnect the digital economy to the local communities, avoid invasive platforms and encourage local initiatives. Digital economy needs to be inclusive.

Social experimentation

Bikers (Deliveroo, Take Eat Easy...) and the platform economy

Permanent contracts : Providing a more stable income to our members. We calculate an average remuneration based on member's earnings per year. For many, it is an important experience because they feel reassured about their social condition. They can organize themselves as they want, but every month they receive a fixed salary. Those with unstable jobs can buy an apartment because they have a contract.

Embedding companies into SMart.coop : we plan a new service proposal for company constituted

For the future of work and social business

We propose 4 concrete approaches.

First, promote a *truly collaborative economy* rather than a predatory one.

Secondly, increase solidarity to encourage *large-scale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Thirdly, reconcile different forms of work and workers by creating a truly inclusive European-wide social welfare system.

Finally, defend the right to conduct *social experiments*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Sébastien PAULE

Chief Innovation Officer - SMart.coop

spa@smartbe.be

Officer - Smart.coop That's it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SMart

We are a platform that offers mutualized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to autonomous workers

www.smart-eu.org

The story

In **1998**, SMart stands for 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es.

We started in Brussels, Belgium with artists as our first public.

Our founders started to help them deal with paperwork, standardizing contracts and giving info on how to declare their work.

We started off with a team of 3 advisors working in a basement.

Over the years more and more people came, we didn't look for them, they found us. **Now** we are open to every sector (not only artists).

We are a platform, we use IT tool in which our members can plug and out of to declare their work.

By invoicing through SMart, they become our employee and we their employer.

The concept and solution

That means they have access to **a better social security package** : health insurance, work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child allowance and they build up for their pension.

We manage the risks linked to freelancing together.

We allow the freelancer to stay autonomous, independent while working in shared structure which gives them security.

SMart take care of the debt collection, the freelancer is paid 7 days after he finished his job thanks to the mutual guarantee fund which all users contribute to.

Members profile

- Develop multiple skills & jobs
- Undertake different roles : employer/employee
- Have multiple employers
- Have irregular income
- Are highly mobile

= complex legal issues, high risk, lot of administration

Our business model

All of our members paid the same fee for the use of our services, **6.5 % of the amount they invoice to their clients**.

The revenues cover our operational costs and the **surplus** is invested in a range of mutualized services.

SMart is a cooperative, **our members are the owners**.

The value generated is completely reinvested in our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ment.

Mutualized services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 personal career advice, insurance, employment declaration, legal advice, leasing

Financial support : mutualized guarantee fund, debt collection, micro financing

Development/new services : creative hubs, European development, permanent contracts, trainings

Social Impact

We allowed people to transit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allow them to access the safety net of social security.

- **17 000** shareholders in Belgium
 - **80 000** members for 2 200 FTE
 - **9** European countries
 - Turnover members : **170 000 000 €**
 - **230** permanent workers in Be/Fr

Let's Coop

Our members could buy a share for 30€.

We are a ***multi-stakeholders coop*** (freelancers, permanent workers, our partners and the clients of the freelancers).

We are officially approved as a coop that respects the 7 values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coops : one person/one vote, open coop, democratic governance model, autonomous (financial autonomy is cruci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Our General assembly became a yearly appointment with 1 000 of our stakeholders. Workshops, keynotes and debates inform on what we are doing.

The future of work

Creative Hubs

La Vallée

LaVallée : **6.000 m²** creative hub in heart of Molenbeek, a neighborhood in Brussels.

130 creatives have a studio or office space, we also connect with many associations and schools.

New type of workers

At SMart, we saw the beginnings of the slasher, the gig worker who combines different jobs and skills for different clients within different social statuses.

For exemple, a visual artists, works 2 days a week as a food delivery biker.

He likes the work out and the flexibility, he gets to know all the holes and problematic traffic situations. Food delivery platform refuses to assume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platforms dodge, see themselves as intermediaries), so we take that responsibility.

We started filling the gap between precariat and salariat.

IT & Social Innovation

At SMart we use technology to automate tasks. It allowed us to change scale and offer our solutions to a larger public.

It is also this use of IT solutions which makes it even more crucial to work on participation, to stay connected to needs of our stakeholders

We believe in

- IT enabled social innovation
 - In Platform coops opposed to neo liberal model in which value and the data are owned by a small group of investors.

Platform Co-ops

It is a growing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uilds a fairer future of work. Rooted in democratic ownership, Co-op members, technologists, unionists, and freelancers create a concrete near-future alternative to the extractive sharing economy.

- Value created via platforms extracted and distributed to citizens, users instead of private stakeholders
- Reconnect the digital economy to the local communities, avoid invasive platforms and encourage local initiatives. Digital economy needs to be inclusive.

Social experimentation

Bikers (Deliveroo, Take Eat Easy...) and the platform economy

Permanent contracts : Providing a more stable income to our members. We calculate an average remuneration based on member's earnings per year. For many, it is an important experience because they feel reassured about their social condition. They can organize themselves as they want, but every month they receive a fixed salary. Those with unstable jobs can buy an apartment because they have a contract.

Embedding companies into SMart.coop : we plan a new service proposal for company constituted

For the future of work and social business

We propose 4 concrete approaches.

First, promote a **truly collaborative economy** rather than a predatory one.

Secondly, increase solidarity to encourage **large-scale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Thirdly, reconcile different forms of work and workers by creating a truly **inclusive European-wide social welfare system**.

Finally, defend the right to conduct **social experiments**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Sébastien PAULE

Chief Innovation Officer - SMart.coop

spa@smartbe.be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 엔조 페치니 (정치학 박사,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Experiences of worker buy-out in Italy and its institutional environment

Enzo PEZZINI

Research Centr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é Saint-Louis Brussels

Seoul/Daegu, 12 -13 July, 2018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경험과 제도적 환경

엔조 페치니

브뤼셀 생루이 대학 정치학연구센터

서울/대구, 2018년 7월 12 -13일

Outline

- 1 – The characteristic of Italian cooperative movement
- 2 – The worker cooperatives and the experiences of WBO
- 3 – The Marcora Law (Law 49 of 1985 & Law 57 of 2001)
- 4 – CFI (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 the institutional tool to manage the Marcora Law,

개요

- 1 –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 특징
- 2 – 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자기업인수 경험
- 3 – 마르코라 법 (Law 49 of 1985 & Law 57 of 2001)
- 4 – CFI (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 - 마르코라 법 운용을 위한 제도적 수단

General features of Italian cooperatives

- Ideological traditions (Liberal, Socialist, Christian)
- Umbrella organisations “centrals” (centrali)
- Inter-sectoral
- Reference in the Italian Constitution
- Involvement in the social dialogue with T.U.
- A specific GD within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 특징

- 이데올로기 전통들 (자유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 총연합회 (centrali)
- 이종연합 (Inter-sectoral)
- 이탈리아 헌법에 명시
- 노동조합과 사회적대화
- 경제개발부 내부에 협동조합 관련 부서

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Art. 45 :

« The Republic recognizes the social function of co-operatives with mutual and non-profit purposes. The law promotes and encourages co-operative development through the most appropriate means and guarantees its character and objectives through suitable controls.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45不



Alliance of Italian Cooperatives

(established on 27 January 2011)

Agci, Confcooperative and Legacoop represent more than **90%** of national cooperative sector

1,2 million jobs,
140 billions euros turnover,
43,000 cooperatives societies ,
12 millions of members.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 (Alliance of Italian Cooperatives)

(2011년 1월 27일 설립)

Agci, Confcooperative 및 Legacoop 은 협동조합 부문의 90% 이상을 대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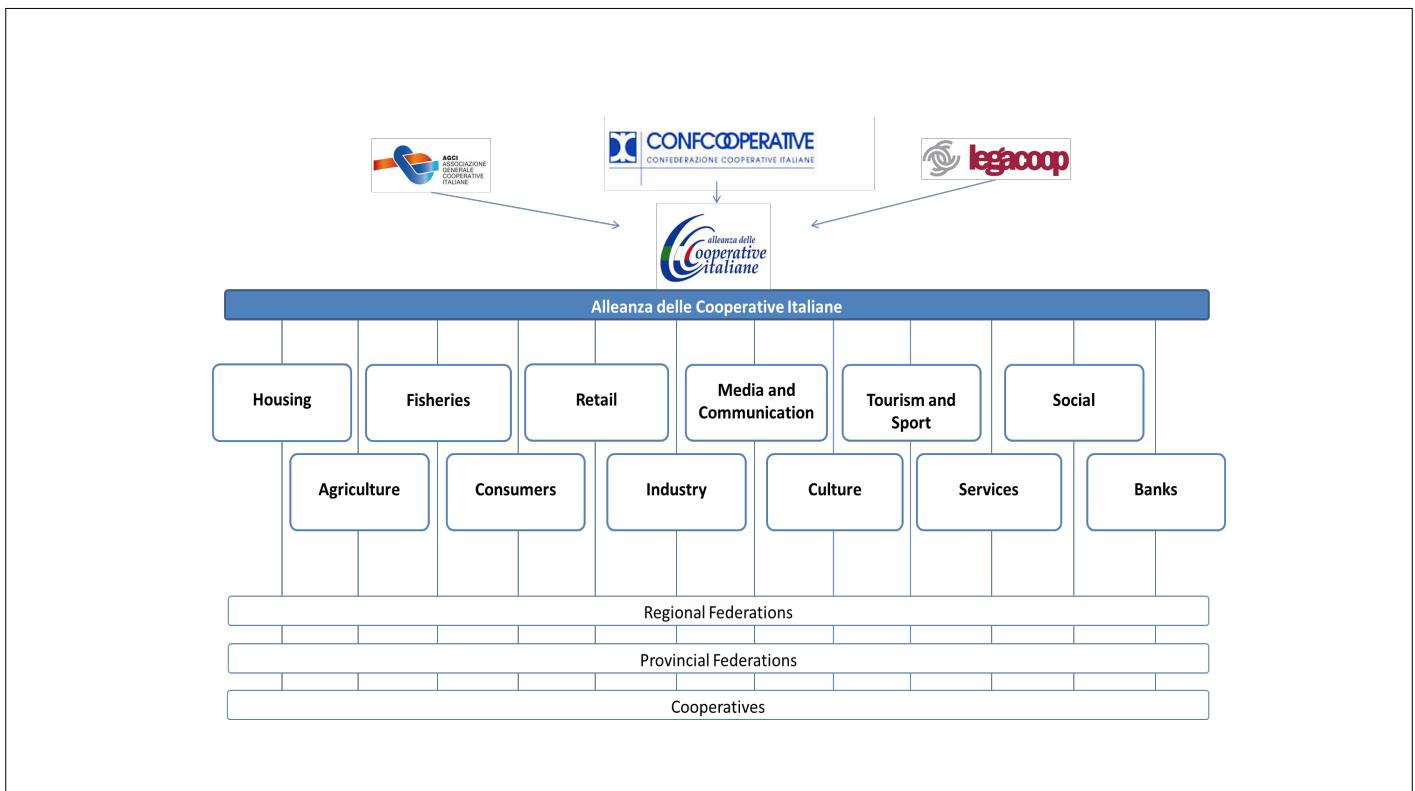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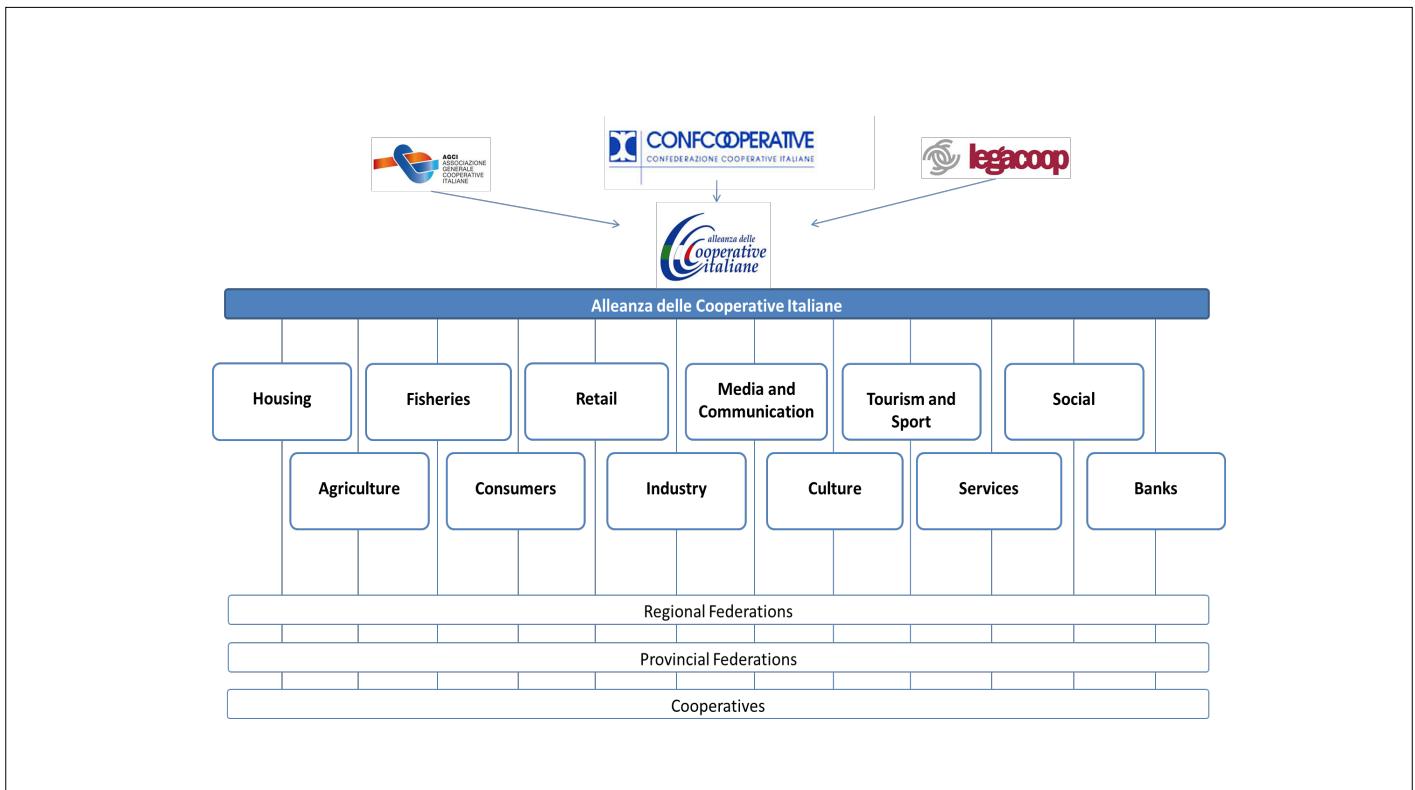
120만 개 일자리,
1,400억 유로 매출,
43,000 개 협동조합,
1,200만 명 조합원



7.3%	of GNP
13.1%	of branch bank and they are the fourth reality for deposit and loans
30%	of consumers and retailers
24%	of the whole Italian agri-food turnover
90%	of co-operatives operating in social and health activities



7.3%	GNP 대비
13.1%	은행사무소 비율. 예금과 대출을 수행하는 4번째 규모
30%	소비자 및 소매업 대비
24%	전체 이탈리아 농식품 매출 대비
90%	사회 및 보건 분야 협동조합 대비



The worker coops in Italy

- The number of cooperatives active in industry, services,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s in Italy are about 11.000
- **WBO**

Since the early 1980s in Italy, the recuperation and conversion of businesses to cooperatives have mostly emerged from WBOs. Almost all have arisen from the conversion of convention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crisis or, to a lesser extent, with succession issues.

이탈리아 노동자협동조합

- 제조업, 서비스, 건설, 교통 및 유통,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은 약 11,000개
- **노동자기업인수**

1980년 초반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의 인수 및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화가 주요하게 노동자기업인수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음. 거의 모든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 중 어려움에 처했거나, 승계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었음.

WBO

- Since the mid 1980s and the passing of Law 49/1985, Italy's WBO framework has promoted and assisted both the conversion of firms into worker cooperatives and the consolidation, refurbishing, and start-up of employment-generating cooperatives.
- The most recent surge in WBOs in Italy took place starting in 2008 with the persistent negativ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ubsequent austerity measures on Italy's GDP and labour markets.

노동자기업인수

- 1980년대 중반 49/1985 법 (마르코라 법) 통과 이후,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시스템은 기업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공고화, 정비 및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오고 있음.
- 최근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증가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경제위기 및 이로 인한 긴축정책이 이탈리아 GDP 및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서 기인하고 있음.

The Marcora Law



• **Giovanni MARCORA**

(1922-1983)

- Senator of the Christian Democracy party from 1968
- In 1974 minister of Agriculture until 1980.
- Minister of Industry in 1981–82.

마르코라 법



• **지오반니 마르코라
(Giovanni MARCORA)**

(1922-1983)

- 1968년부터 기독교민주당 상원의원
- 농업부 장관 (1974 – 1980)
- 산업부 장관 (1981–82)

The Marcora Law (2)

- Law 49 was introduced in 1985 with the intention of providing support to cooperatives that were created out of private companies in a situation of crisis, was the result of fruit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cooperative and trade union movements.
 - Law 49/85 provided for the possibility of creating financial companies that had received non-returnable public fund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equity capital of new cooperatives that had been set up by workers who had been temporarily been laid off or had been excluded from the employment market.

마르코라 범 (2)

- 마르코라 법은 위기 상황에 처한 민간기업들에서 전환된 협동조합들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85년에 도입되었음. 이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생산적인 협력의 결과였음.
 - 마르코라 법은 해고되었거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이 금융회사에 공적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음.

The Marcora Law (3)

- The cooperatives associations and the trade unions created **CFI**,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as tool for manage Marcora Law.
 - This intervention could be the equivalent of **three times the equity capital underwritten by the members**, with an upper limit that corresponded to three year’s worth of the short-time allowance (known as the CIG) given to the workers.
 - The European Commission’s GD for Competition opened **infringement proceedings** against the Italian State, declaring the mechanism of the Marcora law to be a form of state aid and therefore incompatible with the EU’s competition law. The Italian State modified the law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57/01**.

마르코라법 (3)

- CFI의 자본참여는 노동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따른 실업급여(CIG)의 3년치 해당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불입한 자본금에 3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
 - 협동조합 연합회들과 노동자협동조합들은 마르코라 법을 운영하는 도구로서 “협동조합 금융회사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CFI)”
 - 유럽연합 집행부 경쟁국에서는 마르코라 법의 메커니즘이 정부보조의 형태를 가지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 경쟁법과 충돌된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 국가를 상대로 경쟁법 위반을 제소하였음. 이 법적분쟁은 이탈리아 정부가 57/01 법을 통해 마르코라 법을 개정한 2001년까지 지속되었음.

The (new) Marcora Law ⁽⁴⁾

Together with its implementing decrees, law 57/01, provides mechanism significantly different to its predecessor:

- a) The ministerial resources are used to underwrite the equity capital of CFI;
- b) CFI may intervene in worker cooperatives (there is no longer the requirement that the cooperatives have been set up by worker who have been made redundant) and also in social cooperatives;
- c) The intervention may take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s capital or through financing or granting of guarantees;
- d) The participation cannot exceed the capital held by the worker-members or other third parties or can be two times this amount in the presence of sufficient assets;

새로운 마르코라 법 ⁽⁵⁾

57/01법과 관련 시행령은 기존 마르코라법과 상당히 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음.

- a) 공적기금은 CFI의 자본금을 위해서 사용됨.
- b) CFI는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개입할 수 있음. 더 이상 협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실직자들에 의해서만 설립될 필요는 없음.
- c) CFI의 개입은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d) 개입은 노동자조합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자본의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두 배까지 가능함.

The (new) Marcora Law ⁽⁶⁾

- e) The intervention must be made at market conditions and must provide for an adequate remuneration of the capital invested;
- f) The equity capital investment is temporary and cannot exceed more than a 10-year period. At least 25% of the intervention must be paid back within 5 years;
- g) The intervention is reserved solely for cooperatives that fall within the parameters used to **define SMEs**:
enterprises which employ fewer than 250 persons and which have an annual turnover not exceeding EUR 50 million, and/or an annual balance sheet total not exceeding EUR 43 million

새로운 마르코라 법 ⁽⁶⁾

- e) 개입은 시장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f) 자본투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이상을 넘어갈 수 없음. 투자금 중 최소 25%는 5년 이내에 상황되어야 함.
- g) 개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협동조합들만을 대상으로 함.
 - 2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연간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재무재표가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CFI - financial instrument in support of cooperation

- CFI –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 is a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 promoted in 1986 by the three main Italian Cooperative Confederations to manage the Marcora Law (L. 49/1985) whose main objective is provide financial and management support to cooperatives established through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workers buyout).
- Main shareholder and financial partner: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holds 98.33% of the capital and is present in the administrative and control bodies;

CFI –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수단

- CFI는 노동자기업인수를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재무 및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마르코라법을 운용하기 위해 1986년에 3개 주요 협동조합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관투자자임.
- 대주주 및 금융 파트너: 경제개발부가 자본의 98.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및 감사 부문에 관여하고 있음.

CFI (2)

- CFI provides equity capital and/or debt capit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and the financial-economic asset profile of the cooperative.
 - Since 1986 up to June 2018 CFI has invested **217 million euros** to support more than **380 cooperatives** and to create/save around **17.800 jobs**, and skills otherwise lost.
 - Since 2003 CFI has been financing start up, development, consolidation and repositioning projects in existing cooperatives, not only workers cooperatives but **also social cooperatives**.

CFI (2)

- CFI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협동조합의 재무적/경제적 자산을 고려하여 자본 및 대출을 제공함.
 - 1986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80개 이상 협동조합들에 2조 1,70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없어질뻔 했던 17,800개 일자리와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보전하였음.
 - 2003년 이후, CFI는 창업 및 기존 협동조합들의 개발, 공고화 및 재구조화에 금융지원을 해왔음.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이 됨.

CFI data: 1986 – June 2018



Cooperatives financed: **380** of which **220 WBO**



Total Investment : 217 Milion €

Number of jobs: **17.882** of which **7.999** are from **WBO**

Average investment per worker : **12.175 €**

Cooperatives in portafoglio: 135 of which 48 WBO and 44 social cooperatives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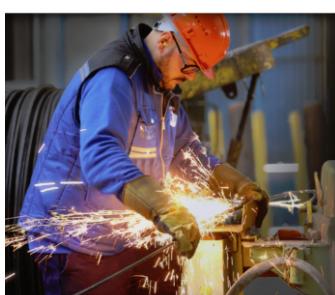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CFI 데이타: 1986 – 2018년 6월



재정지원 받은 협동조합 : 380개 협동조합 중 220개의 노동자기업인수 사례



전체 투자액 · 2조 1700만 으로

일자리 수: 17.882 일자리 중 7.999 개가 노동자기업인수
사례

노동자 당 평균 투자금 : 12 175 €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협동조합: 135 개 중 48 개
노동자기업인수 및 44개 사회적 협동조합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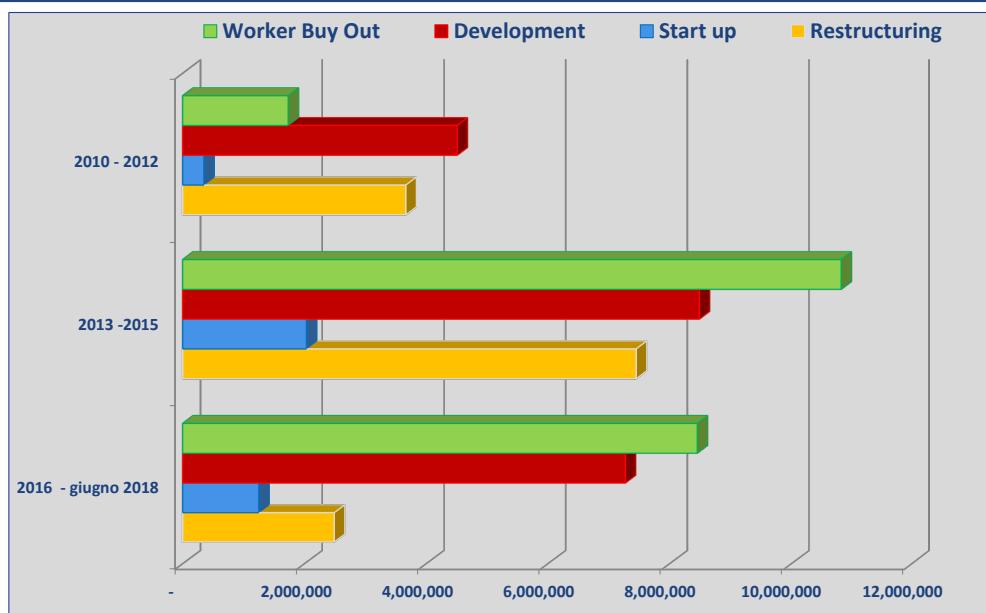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17

Copyright © 2018 CEI. Tutti i diritti riservati.



Interventions by Typology 2010 – Jun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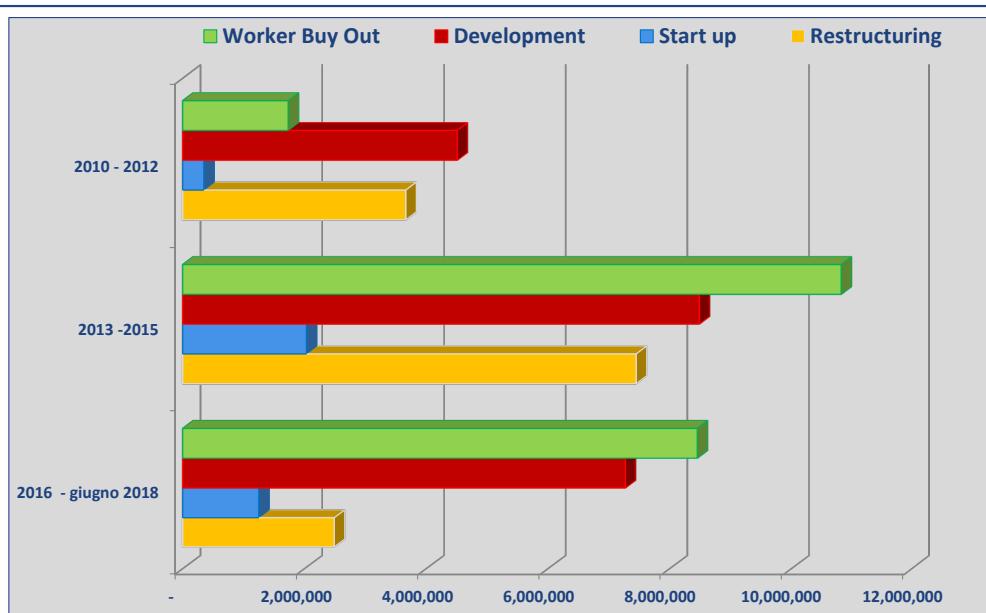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18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유형별 개입 2010년 – 2018년 6월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18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Impact of the Marcora Law on employment and average investment per employed worker

1) The resources made available by Marcora, as a Revolving Fund have produced investments for over € 217 mln

CFI		
	Resources Invested (€ mln)	Jobs (nì)
L. 49/1986	85.746.562	5.964
L. 57/2001	131.960.027	11.918
TOTAL	217.706.589	17.882



2) Average investment per employed worker: € 12.175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19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마르코라 법의 고용에 대한 효과 및 고용된 노동자에 따른 평균 투자액

1) 마르코라법에 의해 운용될 수 있는 자원은 리볼빙 펀드를 통해 만들어진 마르코라 법에 의해 운용되어온 자원은 2조 1700만 유로 이상임.

CFI		
	투자된 자원 (€ mln)	일자리 (nì)
L. 49/1986	85.746.562	5.964
L. 57/2001	131.960.027	11.918
TOTAL	217.706.589	17.882



2) 고용된 일자리 당 평균 투자액: € 12.175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19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CFI (3)

- CFI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swot business analysis, business feasibility studies for assessing the viability of new worker cooperatives, and participate with risk capital or loan capital to the project.
- **CFI team: 13 people** + board of directors.
- The organization **works closely with** employees of enterprises, local trade union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local experts before deciding to invest in or assist a WBO project.
- CFI, in close collaboration with **mutualistic fund** (national funds for cooperative development made up of 3% of all Italian cooperatives' yearly net income) and cooperative federations, has given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build up an effective system to create and boost WBO projects.

CFI (3)

- CFI는 **기술적 지원**, swot 분석, 새로운 노동자협동조합의 사업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하며, 사업에 리스크 캐피탈이나 대출 방식으로 개입함.
- **CFI team: 13명 실무진** + 이사회.
- 노동자기업인수 과정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업의 노동자, 지역 노동조합, 고용주 조직, 협동조합 조직, 지역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함.
- CFI은 협동조합 연합회들 및 연합회들이 관리하는 상조기금(모든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이 연간순수입의 3%를 납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노동자기업인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

CFI (4)

- Although CFI has been working for 30 years facing mainly the crisis of enterprises and repositioning of existing cooperatives, with the aim of saving jobs, **the capital of the main shareholder –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is still well protected by reserves** – moreover **the State has economic returns in term of taxation and labour contributions** paid by cooperatives that are the outcome of WBO, without mentioning the social benefit in term of jobs saved.
- CFI: **a private company with a public shareholder**. This model has allowed this instrument to **operate with an entrepreneurial approach**, ensuring slim and flexible procedures, managerial autonomy and, at the same time, ensuring public control over the respect of mission and of the main operation rules set up by the Law, updated during the last 30 years.

CFI (4)

- Although CFI이 지난 30년간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목적으로하면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사업조정을 하는 기존 협동조합들을 위해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경제개발부의 자본은 내부유보금의 형태로 잘 보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전된 일자리라는 사회적 혜택 외에도 기업인수를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통해 국가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분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음.**
- CFI: **공공부문 주주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임**. 이 모델은 CFI로 하여금 작은 규모와 유연한 절차,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기본 사명과 법에 의해 규정된 (30여년간 개정되어 온) 실행규칙의 준수에 대한 공공의 관리를 담보하는, **기업가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었음**.

일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일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일의 미래와 한국사회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학 박사)

1. 일의 미래, 미래의 일

1) 들어가며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은 5년 내 노동자의 80%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의 쿠타이밍 회장은 6월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만약 5년 안에 못하면 10년 내에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폭스콘의 총 직원 수는 90만 명에 육박한다. 이 공연이 현실화될 경우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 쿠타이밍 회장은 이달 초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스마트 제조업을 전력으로 추진해 중국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8. 6. 27 조선일보)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은 무인 공장과 다름없었다. 웨이퍼를 배달하는 박스형 로봇들이 라인을 타고 자로 잰 듯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기계음만 간간이 들릴 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작업장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한참을 들여다 볼 때 저 건너편에서 방진복을 착용한 사람이 획 지나간다. 로봇을 제어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생산라인에 들어선 지 10여분 만에 처음 본 사람이었다. 2017년 매출 66조4천억원, 영업이익 35조원을 기록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국내 고용인원은 4만9천여명 수준이다. 반도체 뿐 아니라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의 자동화도 빠르게 진척됐다. 한국은 산업현장의 로봇밀도(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7년째 세계 1위인 나라이다. (2017. 11. 14 방문견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작은 도시 바트노이슈타트에 있는 지멘스의 산업용 모터공장. 80년 전부터 모터를 생산해 온 이 공장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핵심인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공장이다. 기계와 재료에 붙은 수많은 센서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영화 <메트릭스>에서처럼 가상공간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며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처럼 독일은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로 생산을 어떻게 효율화 할지를 탐색하는 ‘인더스트리 4.0’을 10여 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며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모두가 우려하듯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의 질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동화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좋은 노동’(Gute Arbeit)에 대한 합의를 찾는 ‘노동 4.0’을 병행한 덕분이기도 하다. (2017. 10. 19 방

문견학)

위의 3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일과 노동이 변하고 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인구변화 등으로 일 자리, 일하는 방식, 고용구조가 바뀌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가세해 일에 본질적인 변화 까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임금노동-정규직-전일제 노동자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분배, 재분배(복지), 노동법 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 지표만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틀로 접근해서는 잡히지 않는 영역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일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논의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좋은 노동’ 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고용이 안정되고, 생활임금 이상이 지급되며, 가정 및 개인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을 바탕으로 고용, 노동, 분배, 교육 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다.

2) 일의 미래에 대한 시각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새로운 빈곤>(천지인)에서 전후 복지국가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말한다. 전후 복지국가를 이룬 합의는 우연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생산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했고, 노동윤리를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재교육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역할을 복지국가가 담당했다. ‘조직 노동’ ‘전일제 노동’ ‘장기근속 노동’을 전제하는 정규직은 이런 전후의 합의에 조응하는 고용형태다.

그 뒤 세상은 달라졌다. 세계화, 기술발달 등으로 “오랜 세월의 노동이 축적한 어마어마한 능력 덕택에 수많은 구성원의 개입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사회의 엔진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전환됐다. “생산자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사회로, 노동윤리의 사회에서 소비의 미학이 지배하는 사회”로 탈바꿈 한 것이다. 당연히 새 주인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고용과 노동의 형태도 변해왔다. 이른바 수시로 고용하고 해고하며, 직무를 바꾸는 시공간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프레카리아트’(불안정성을 뜻하는 precarious와 임금노동자를 뜻하는 proletariat의 합성어)라는 임시직 노동자층이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바우만은 또 다른 저서인 <유동하는 근대>(한국어 번역 <액체 근대>(강))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동은 이제 우리의 자기 정의, 정체성, 삶의 프로젝트들을 묶어둘 수 있는 확실한 축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사회의 확실한 윤리적 기초로 간주할 수도 없고, 개인적 삶의 윤리적 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변화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로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

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증가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낮설지 않게 됐다. 이런 기술변화가 생산 및 서비스의 변화를 넘어 노동, 복지, 교육 등 우리 삶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저성장, 고령화, 노년 빈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중첩된 속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촉진하는 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공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흐름이 기술변화로 ‘여울목’이 되려는 시기다. 일자리, 일하는 방식, 분배(복지), 혁신(생산성)이란 4개의 열쇳말로 ‘일의 미래’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일자리: 미래가 두려움만은 아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우리는 은연중 “완벽했던 옛날”을 꿈꾼다. 일하고 싶은 모든 이가 직장을 가진 완전고용, 그것도 전일제-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 말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를 그 반대 방향으로 끌어 왔다. 생산력이 이미 더 적은 노동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정부가 노력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는 것도 근원을 따지면 여기에 닿는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전된 나라 중 하나이다. 송호근 교수(서울대)가 쓴 <가보지 않은 길> (나남)을 보면 자동화가 현대자동차 노동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노동자 인터뷰가 나온다.

“58초5에 한대가 생산돼야 합니다. (...) 58초 중 우리가 임팩트를 갖고 작업하는 시간은 볼트 한 6개 박는 거 해봐야 7초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장비가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죠. (...)”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의 미래를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정보지능 기술은 노동을 표준화, 자동화한다. 고도의 숙련이 필요치 않은 일, 정형화된 일을 하는 직업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데, 이번에는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이나 전문직까지 영향이 퍼지리란 전망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주요 나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에 큰지를 보여주는 보고서 등을 포함해 많은 예측이 쏟아졌다. 실제로도 아디다스는 2017년부터는 독일의 바이에른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1990년대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아시아 등지로 이전한 해외 생산 공장이 24년 만에 귀환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공장은 지능화된 로봇이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이다.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하는데,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필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직업의 소멸은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란 반론도 많다. 경제사를 살펴보면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낳고,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부터 50년간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2가 줄었다. 그 대신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다. 급여는 85%나 증가했으나 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 직업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일부 직업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특히 인간의 공감이나 관계 형성 능력에 기댄 돌봄 같은 서비스 업종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다. 남은 직업은 일부 직무만 자동화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의사가 데이터와 진단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되 복잡한 수술은 직접 맡는 식이다.

다만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유망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의 차이가 벌어져 자리다툼이 심해질 수 있다.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노동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기계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남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부차적인 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소득’이란 공식을 벗어난 분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하는 방식: 큰 변화가 온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일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서 갈수록 ‘정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진다. 디지털 기술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한다. 플랫폼 경제(O2O 경제)의 대표주자인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하나 갖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가 됐으며, 우버도 자동차 한 대 없이 가장 큰 렌터카 업체가 됐다. 이런 변화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고용의 형태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일자리의 가장 큰 구분법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가 모호한 고용이 확산하고 있다. 배달 앱이나 대리운전 앱은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일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 전 세계를 상대로 노동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소싱’도 늘고 있다. 노동의 형태도 달라진다. 디지털 기술이 가능케 해 준 이동성은 노동의 시공간 경계를 허문다. 스마트폰 등으로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작업장에 고정된 노동이란 노동개념은 의미를 잃게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일제나 파트타임이냐의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언제나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직업과 사생활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덕분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칼퇴근’ 법 제정이나 최근 발의된 근무시간 이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

지하는 법안 등은 이런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아울러 직장 문화도 몰입형 근무(딥워크)를 강조하고, 출근 중심이 아니라 산출물로 보여주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분배(복지):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우버 운전자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은 2016년 10월 2명의 운전자가 우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우버의 피용인 신분이다. 따라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소속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버는 항소했는데 운전자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해 온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노동이 늘어나면서 노동 관련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프레카리아트’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는 모호한 정체성만큼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노동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최저 임금, 해고보호, 단체협약에서 제외된다. 저소득계층인데도 보호를 더 못 받는 것이다.

노동은 소득과 복지의 원천이었지만 점차 이런 관계가 어긋나고 있다.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와 복지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그것도 정규직 기반의 산업시대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통합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9월 필자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도록 이를 나누어 소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교수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자동화 속도는 점점 빨라졌는데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자본 소유자가 가져가다 보니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장래에는 소득 격차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프리먼 교수는 진단한다.

“소수의 사람과 공장이 새로운 기술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로봇 소유자는 번창하는 반면 대다수는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기술발달에 따른 과실을 자본과 노동이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기업의 지분과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수에서 다수로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꿔서 디지털화의 이익이 로봇 소유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사회정책의 미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프리

먼 교수는 기업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을 변화된 자본주의의 미래상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약해지는 사회에서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배제도를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현재 진행되는 기술주도의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활발히 논의되는 분배의 패러다임이다. 자산이나 능력,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없는 미래> (비지니스맵)의 저자인 팀 던럽은 ‘탈노동’의 미래와 관련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탈노동은 일을 하지 않는 미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미래”를 말한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제가 필요로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도는 임여인구인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분배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구의 상당수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말로 못다 할 만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 더 이상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뒷받침되는 세상은 이를테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참여도 가능케 해주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재능을 소득을 올리거나 이익을 내는데 쓸지 않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상, (...)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말이다.”

팀 던럽의 주장은 ‘노동 없는 삶’에 관해 얘기되는 익숙한 3단 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노동은 그 의미와 경제적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해 최소 노동으로 충분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쟁점은 재원마련인데 은 이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곧 돈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부터 기업의 산출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비율을 따져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은 해결할 난점이 많지만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서 묘사한 것 같은 복지행정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알레스카등 일부 지역의 실험에서는 수혜자가 자존감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를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혁신(생산성): 노동자도 기업도 ‘좋은 일’이어야 한다

탈노동이 강조되는 가운데 노동 그 자체가 가진 가치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토마스 바셰크는 ‘탈 노동’이 아니라 ‘몰입된 노동’을 용호하며 일의 미래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열림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더 적은 노동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과 욕구에 부응하는 뜻 있고 좋은 노동이라면 말이다. (...) 중요한 것은 더 일찍 일을 끝내고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을 더 낫게 개조하는 것이다”

바셰크의 주장의 요지는 노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동은 자기 존중의 핵심적 조건인데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은 좋은 삶을 산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일의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과제를 준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와 노동조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기계와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숙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성과를 거둔 30개 기업의 우수사례집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었고, 근무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이직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져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게 이 사례집의 요지이다.

실제 직원이 만족하는 ‘좋은 일’은 혁신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축적의 시간>(공저)이나 <축적의 길>(이상 지식노마드) 같은 책을 통해 한국 산업의 혁신 방안을 체계화한 이정동 교수(서울대)는 “혁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스케일업(실용화) 하는 사람의 몸에 체화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몰입노동’이 혁신의 원천이라는 얘기다.

실제 만족하고 존중받는 노동자가 혁신을 이룬 사례는 많다. 생활용품 업체 유한킴벌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감원을 하지 않고 일을 나누는 방식으로 4조3교대제를 채택했다. 충분한 휴식과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다. 그 결과, 기저귀와 생리대 시장에서 바닥으로 향하던 시장점유율을 뒤집으며 2000년대 초 이 분야 1위 이던 P&G를 누르게 된다. 뉴 패러다임 경영으로 불리는 이 방식도 노동자의 만족과 역량향상에 기초하고 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17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양질의 근로조건은 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노동법이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 한국사회의 현실과 과제

1) 불평등과 취업난 심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돼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불평등은 우리 삶을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이란 시각이 확산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17년 세계 70개국 100명의 학자가 함께 작성한 <2018 세계불평등보고서>를 보면 1980년 이후 지난해 까지 37년간 세계 상위 부자 0.1%, 약 760만 명과 하위 50%인 38억 명이 늘린 부가 같았다. 이런 불평등은 해결되기 보다 차츰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1%가 소유한 부의 비중이 현재 20%에서 2050년에는 24%를 웃돌 것으로 경고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연간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무엇보다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망가져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1분위)인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8% 넘게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올 초에 나온 OECD의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3.7%였다. 이는 지표 비교가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25%)과 아일랜드(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OECD회원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평균은 16.6%였다. 한국은 노동자 사이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비교했을 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였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의 1차 원천인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비록 자산이 없더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통계청의 ‘2018년 5월 고용동향’ 을 기준으로 10.5%에 이르렀고, 체감실업률은 23.3%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은 언제 앞에 정차할지 모를 취업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오늘도 고시원에서 수십 장씩 원서를 쓰고 있다. 아울러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5월에 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인데 대체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저임금을 받고 일자리

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5월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7만2,000명으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 임시일용직 급감이 결정적이었다. 올해 들어 임시일용직은 매달 10만~20만 명씩 취업자가 줄고 있다.

개업하고 바로 문 닫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로 OECD 35개국 중 7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이 가운데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하는 기회형(21%)도 있지만, 다른 할 일이 마따치 않아서 창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63%로 OECD 평균(27.3%)의 2배가 넘는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지만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계속되고 있어 한계형 자영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데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에도 원인이 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 격차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다. 전체 부의 절반은 토지나 빌딩 같은 자산인데, 여기서 얻는 소득은 노동 소득 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증가한다. 아이가 장래 꿈을 ‘빌딩 주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현업에서 은퇴한 노인의 빈곤률은 로 심각하다. 노인들은 아침부터 폐지를 줍고, 생활고에 시달려 적지 않은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못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펴진다는 ‘낙수효과’는 고장난 지 오래고, 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겉돌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된 일자리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들이고, 낮은 임금과 빈번한 고용단절로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양산되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을들의 다툼’ 양상 마저 보이고 있다.

2) 기술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경시

급속한 무인자동화로 질주하는 한국

이런 속에서 한국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성격과 분배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일자리 소멸 가능성,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등 불평등을 더 심화할 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태동한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은 소득이 매우 낮음에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등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은 겉돌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 등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정규직을 포함한 상당

수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거제 등 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의 변화는 이처럼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일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취약하다. 국제로봇연맹(IFR)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6년 노동자 1만명당 로봇 수(531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1990년대 이후 강성노조 등에 대응해 대형 사업장에서 공학자가 중심이 돼 생산과정을 재설계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체가 빠르게 자동화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숙련이나 전문성을 차츰 잃고 로봇의 보조자로 위축됐으며, 자동화되지 않은 노동은 저가의 하청으로 돌려져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를 만들어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런 변화 앞에서 연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용 및 임금을 지켜내는 데 그쳐야 했다. 최근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하며 2025년엔 한국 제조업 생산인력의 40%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예측했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편화한 세상은 신세계이기는커녕, 나빠진 노동조건, 실업, 분배의 불평등이 기다리는 우울한 미래일 수 있다.

독일의 접근법은 어떻게 다른가?

기술의 변화에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하는 사람과 기계의 협업을 조직하며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변동에 대처하는 독일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독일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트리(산업) 4.0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노동) 4.0’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이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에 대비해 노동권의 후퇴를 방지, 실업 예방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노-사-정 교섭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노동개혁과제의 주된 내용은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유연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근로시간 △온디멘드(On-demand)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고려한 산업안전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종업원 대표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는 직장 민주화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증진 △복지국가의 재정확보 등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 뒤 이를 지방정부, 시민단체, 노동계, 재계에 돌려 1년 이상 지속적인 토론을 유도했다. 시민들에게 <녹서>의 핵심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래(Future)>라는 영화 시리즈를 만들어 전국 18곳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화하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 강화될 수 있을까?”

좋은 일에 관해 사회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에 접근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공영역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의 거의 반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쳐우가 크게 다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 학교 밖 교사 지망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 정규직화가 쉬운 것이 아님에 틀림없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수입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불안, 차별, 저소득의 상징이다. 고용도 보장되고 수입도 좋아서 모두가 원하는 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될까? 대략 대기업에 근무하는 120만 명, 공무원 160만 명, 공공기관 근무자 40만 명 등 300만 명 남짓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10% 정도인 ‘희귀한’ 자리를 두고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몇 년간 고시원에 들어앉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 ‘좋은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기업이 태도를 바꿔 정년도 보장하고, 연차가 오래되면 임금과 복지 혜택을 올려주려고 할까?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가 일하고 싶은 사람의 완전고용과 정규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일자리마저 임시직, 파견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변해가고 있다. 일자리에 어떤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완전고용-정규직’이란 기대는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신기루는 아닐까? 차라리 변화하는 방향에 맞게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좋은 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현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과 삶의 균형(WLB)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한계소비성향이 큰 계층의 소비증대를 통해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을 주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부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지 않는 난관이 있다. 이 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과 일자리, 분배와 재분배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이 ‘노동 4.0’을 추진

할 때 “디지털화하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 강화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듯이 ‘좋은 일’, ‘좋은 노동’에 대한 우리의 합의된 상(像)을 만들어갈 때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좋은 일’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를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과제로 삼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의 6가지 측면(고용안정, 직무·직업특성, 개인의 발전, 임금, 근로조건, 관계)에서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수렴된 좋은 일의 이상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특히한 것은 설문조사에서 임금(12%)이나 고용안정(16%)보다 근로조건(48%)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은 응답자가 많은 것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의 측면을 말한다. 특히, 20~30대는 ‘업무가 재미있는 일’, ‘업무와 조직에서 배울 것이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누구나 생활 가능한 임금, 고용 안정성, 안전, 어느 정도의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일의 질과 그에 따른 분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헬조선’을 벗어나고,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장시간 노동 관행을 벗어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여성 전문인력의 경력단절을 줄이며 출산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일은 최소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유연성이 기업 쪽에서 ‘해고의 자유’를 뜻했다면, 개인이 자기발전, 가족과 일의 양립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시공간 운영하는 유연성, 안정성과 함께 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회사 경영이 악화돼 해고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나라의 복지제도 역시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기술변화가 ‘가진자’와 ‘강한자’에게만 자원을 몰아주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기술변화를 두려움으로 여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생산과 서비스의 원천”이라는 공감 아래 노사정이 디지털사회

의 ‘좋은 일’을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일의 미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 : 불안정고용과 노동자협동조합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구조의 변화와 돌봄서비스

사회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맞벌이가구 증가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의제

돌봄 수요 대응

좋은 돌봄 확장

돌봄의 공식노동자와 비공식노동자

공식노동자 formal sector labors

-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모두 적용

- 요양보호사 elderly(long term) care helper
- 보육교사 Infant care teacher, Kindergarten teacher
- Voucher(government based) Labors

비공식 노동자 informal sector labors (domestic worker)

-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직업훈련 모두 미적용

- 가사관리사 home helper
- 산후관리사 afterbirth care worker
- 재가보육사 sitter

최근의 흐름

세계의 흐름 : ILO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 협약)

-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연맹)이 주도하여 돌봄노동자를 노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조직
-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

국내의 흐름 : 법 발의와 불안정노동의 확장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발의 :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
- 대자본, 외국자본의 진출과 플랫폼노동의 급격한 확장
- 재중동포를 뛰어넘어 동남아의 이주가사노동자 증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rea Domestic Workers Association

- 1998년 IMF 대량실업 시대에 탄생
 - 전국 12개 지부
 -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NGO
 - 비공식 돌봄노동자(Domestic Workers) 조직
 - 여성 스스로 만드는 workers cooperative
 - Domestic Workers의 고용안정, 법적 보호
 -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확대
 - 연대와 협동을 통한 돌봄지역사회 만들기

2004년 비영리단체 산하 전국네트워크 설립



[설립정신] 단순히 직업소개조직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당사자 스스로 실업운동으로서 일자리사업을 모색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설립목적] 시장경쟁력 확보, 여성일용노동자 제도적 보호,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 구성

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전국 12개 지부의 조직 정체성

지역		지부명	기타
서울	서남지역	(사협)행복한돌봄	예비사회적기업
	동북지역	(사협)강북행복한돌봄	마을기업
	강남지역	(사협)성동행복한돌봄	예비사회적기업
경기	부천시	(주)우렁각시 매직케어	사회적기업
	시흥시	(사협)시흥주거복지센터	
	남양주시	(사협)일과나눔도우누리	사회적기업
	수원시	(주)돌봄세상	사회적기업. 노동자지주회사
강원	원주시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중 사회적기업육성가팀
호남	전주시	(사협)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육성가팀
	광주광역시	노동실업광주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영남	양산시	(사협)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육성가팀
	창원시	(협)창원손길	예비사회적기업

활동1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의 표준화 : 표준교육カリ큘럼, 교육교재, NCS 개발
사업의 표준화 : 사업매뉴얼, 고객관리매뉴얼

활동2 :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운동



비공식부문 노동자 권리 확보, 고용 안정을 위한 캠페인, 입법활동, 조사연구 등

활동3 : 당사자 역량 강화와 생활공동체운동



조합원 월례회의, 임원회의, 총회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제도 도입
상조회와 주민금고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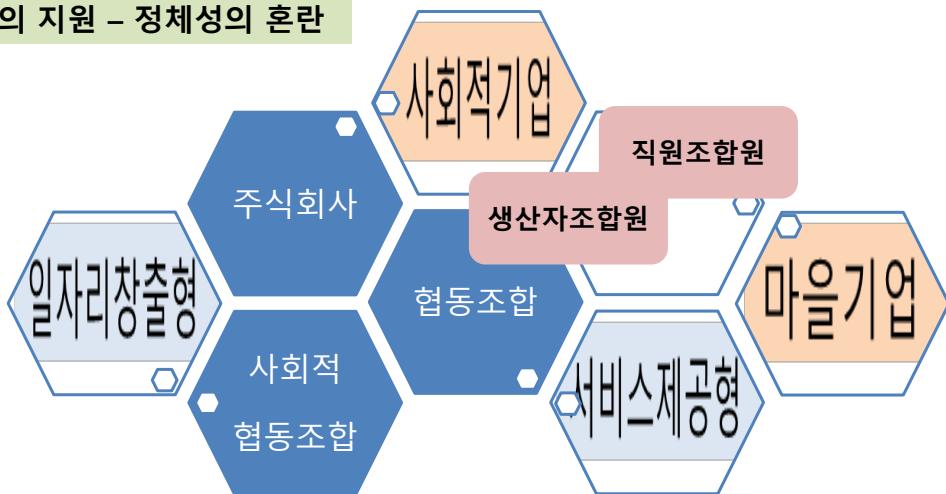
활동4 :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협동조합어린이집, 노인돌봄시설 설립 지원
워킹맘, 한부모, 장애인 가사돌봄사업
돌봄분야 어르신일자리 만들기

과제1 : 조직 정체성의 확립

법제도 – 정부의 지원 – 정체성의 혼란



과제2 : 노협에 맞는 제도개선

직원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산자조합원

노동자 임원일 경우 정부 지원의 제약(사회적일자리, 보조금)

이사장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자격증 등기이사제 필요

가정내돌봄 부가세 면제 필요(직업소개소 지원 준용)

과제3 : 노협에 맞는 생태계 조성

경영지원	인재양성	전략사업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경영인 파견제도• 소상공인협 업사업을 노 협 일반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지역별 직업훈련센터 위탁• 노협에 적합 한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고용/ 플랫폼노동 (돌봄, 문화 예술, 운수, 이주노동 등) 에 자원의 집중 투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협연합회에 노동자협동조합 지원 기능 부여 (상담·컨설팅·교육 등)

참고 : 고용불안에 대한 노협의 응답

미국 : 노동인구 중 약 35%(2016년 기준)인 5500만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유럽 : 영국은 16~75세 생산가능인구의 10% 이상인 490만 명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독일은 14%,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2%가 플랫폼 노동 경험(영국 하트퍼드셔대 경영대학원. 2016년 1월)

한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6년 보고서. 국내 O2O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1000억 원에서 2020년 8조7000억 원으로 급증 전망

이주노동, 플랫폼노동과 노협

- 비영리단체, 노동조합이 노협 조직
 - 2000년 이후 폭발적 증가, 이민자 노협 증가
 - 노동자소유 플랫폼 실험 시작
 - CHCA(1985) : 12명의 가정내돌봄노동자로 시작, 현재 2,000명 이상 고용



존중 품위 밤에는 있는 노동! 노동!

노동자협동조합이 만들어갑니다.



일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토론 : 노동자 부문

–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

한국에서의 예술의 자율성과 사회보장을 위한 시도: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경우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우선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노동이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하나의 노동으로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참조가 된 SMART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SMART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조합을 넘어서서 예술인들의 노동을 사회 속으로 전달되고 확산되는데 적절한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예술계가 가지지 못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노동의 보장을 위한 SMART의 노력을 참조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SMART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한국의 예술계가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1. 한국 예술인의 조건

한국에서 예술인이 처한 조건은 이중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소위 예술계와 문화계가 분절되어 있고 무엇보다 1차적 창작의 기원인 예술영역이 문화산업과 동떨어져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정부가 밝힌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고 법적으로 사업자단체라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2,000여개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류’라고 부르는 문화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술인들 중 절반은 년간 300만 원 정도의 예술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2015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러다 보니 겸업이나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아니

라,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예술창작지원 정책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비중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모 등 지원사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공공계약에 참여하여 수입을 얻습니다. 즉 문화산업 구조에서의 소외가 정부의 창작지원금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주되게 추진했던 사회적 기업의 사례 중에서 특히 예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존속하기 힘든 환경을 보여줍니다. 공공부문의 지원이 아니면 예술인들의 기업이 생존할 수조차 없는 환경입니다.

2. 예술활동 종속의 배경

이런 환경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설립과 관련된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술정책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주력했던 부분은 예술생태계 내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활동 경과: 공식출범 전까지

- 2011년 12월 3일, <밥 먹고 예술합시다> 집담회 개최
- 2011년 12월 22일, 예술인소셜유니온 제안, 법 장르 예술인 노동조합 준비
- 2012년 1월 12일, 조직 출범과 진행 계획을 논의하는 초동모임 구성
- 2012년 8월 2일, 조직체계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 2012년 9월 27일, <108 토론회> 개최, 준비위원회 공식 발족
- 2013년 1월 1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국회)
- 2013년 4월 18일,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 2013년 7월 11일, 저작권법 개정안,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국회)
- 2014년 7월 11일, <공연예술인의 노동환경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4년 11월 18일, 공연법 개정안 발의(국회)
- 2015년 5월 1일, 예술인소셜유니온 공식출범

음악인들의 주요한 수입원인 저작권료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음악인들은 ‘국민들에게 값싼 음악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합니다. 음악인들에겐 생존을 위한 비용이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끊임없이 물가로 통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등과 같은 디지털 음원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관철됩니다. 개별 곡에 대한 다운로드보다 정액제 스트리밍 중심의 수익구조는 음악인이 선택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인이 전체 수익금 중에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공연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음악인들의 공연료 역시 공식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없습니다. 전체 공연규모에 따라 임의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정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연의 전문스태프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표준노무단가가 정해져서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반영되지만 공연예술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는 2004년 정도의 기준으로, 현재는 2015년의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역시 공공공연장은 물론이고 민간 공연장마다 일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술인소셜유니온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저작권료 분배과정에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한 노무단가를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들 스스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서 관철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도입 마저도 반대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술인소셜유니온이 출범하게 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각 장르별로 협회 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술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이거나 혹은 성격상 사용자에 가까운 이들도 함께 합니다. 한국의 예술계 특징 상 경력이 오래될수록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사용자성을 뛴 예술인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장르별로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다보니, 예술계 전체의 공동 이익보다는 각 장르별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개별적인 경쟁에 빠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민간합의 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각종 장르별 지원기구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장르를 벗어나 현재의 예술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3.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넘어서

안타깝지만 한국의 예술계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특정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즉 블랙리스트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자율과 독립성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설은 한국의 예술이

얼마나 예술정책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투 운동 역시 문화예술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장르별 협단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예술인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에 앞서 정부의 정책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장르별 협단체 구조에서 벗어나 예술인의 창작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단체나 조직이 기존의 협단체와 동등한 법적 위상을 지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예술정책과 문화산업 내에서 예술인들의 창작노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예술인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예술인들을 창작노동자로 규합하는 사회적 노동조합을 추구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예술인과 같이 경계에 있는 노동의 형태는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삶의 조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 조차 배제된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고용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획득한 최소한의 노동권을 획득하는 것이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SMART가 보여주는 경로와는 완전히 겹치지 않는 활동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서 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창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다른 사회의 예술인들에게도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예술인소셜유니온이 SMART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한가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SMART의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예술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한국의 예술인소셜유니온이 하고 있는 고민이 한국의 특수성을 넘어서 전세계의 예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존중을 위한 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SMART에 속한 예술인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토론 : 정책 부문

– 정민형 기획재정부 사무관



MEMO



MEMO



MEMO



MEMO

인권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ILO 193호 의안 번역본

협동조합 진흥에 관한 권고

(R193, ILO, 2002.)

서 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집행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져 2002년 6월 3일자에 제90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일자리 창출, 자원 동원, 투자 창출 및 경제 기여에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온전한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화로 인해 새롭고 상이한 압력, 문제, 협동조합에 대한 도전 및 기회가 창출되었고, 지구화의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보다 강한 인간연대의 틀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86차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채택된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주목하면서, 특히 「1930년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 「1952년 사회보장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1957년 강제근로의 철폐에 관한 협약」, 「1958년 차별대우(고용 및 직업)에 관한 협약」, 「1964년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73년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5년 농촌근로자 조직에 관한 협약」, 「1975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협약」, 「1984년 고용정책(부칙)에 관한 권고」, 「1998년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관한 권고」,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의 국제노동 협약 및 권고안에 구체화 된 권리와 원칙에 주목하고,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구체화 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세계 곳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적정노동 실현이 국제 노동기구의 주요 목적임을 상기하고, 이 회의 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로서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제안이 권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협동조합 진흥에 관한 권고」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권고를 2002년 6월 20일에 채택한다.

I. 범위, 정의 및 목표

1. 협동조합은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운용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 권고안은 모든 협동조합의 유형과 형태에 적용된다.
2. 본 권고안의 목적상, "협동조합"이란 용어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를 의미한다.
3.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일은 다음에 기초하여 장려되어야 한다.
 - (a)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및 연대의 협력적 가치, 그리고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과 타인을 돌보는 윤리적 가치.
 - (b) 국제 협동조합 운동에 의해 개발되고 "부속 문서"에 언급된 협동조합 원칙. 이러한 원칙들은 자발적 및 개방적 회원제, 민주적 회원국 관리, 회원국의 경제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과 정보, 협동,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등이다.
4. 협동조합과 그들의 회원국을 돋기 위해서는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채택되어야 한다.
 - (a) 소득향상활동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의 창출과 발전을 만들어낸다.
 - (b)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능력,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장점·이익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다.
 - (c) 기업가적 능력과 경영 능력을 비롯한 사업 잠재력을 개발한다.
 - (d) 시장 및 제도적 금융에 대한 접근권 획득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 (e)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킨다.
 - (f)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개선한다.
 - (g)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한다.
 - (h)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실행가능하고 역동적이며 독특한 경제영역을 설립, 확대한다.
5.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통해 연대에 기초한 사업체이자 조직인 협동조합들이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비롯한 사회의 요구와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정책 프레임 워크와 정부의 역할

6. 균형 잡힌 사회는 건강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뿐 아니라 건강한 협동조합, 공제조합, 기타 사회적 분야, 비정부 부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기능에 일치하고, 다음과 같은, 제3항에 규정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지원 정책 및 법률 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 (a) 가능한 빠르고, 간편하며, 적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체제를 수립한다.
- (b) 분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적절한 적립금의 창출과 협동조합 내부의 연대기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촉진한다.
- (c)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의 법률 및 관행에 부합하며, 다른 형태의 기업과 사회 조직들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특성과 기능에 적절한 조건으로 협동조합을 감독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 (d) 협동조합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구조에서 협동조합의 가입을 촉진한다.
- (e) 특히 협동조합이 하지 않았다면 제공되지 않을 서비스를 다루거나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자율적이며 자율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한다.

7. (1) 제 3 항에 명시된 가치와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둥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협동조합은 국내 법 및 관행에 부합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다른 형태의 기업 및 사회 조직들에게 부여된 것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용 촉진, 취약집단이나 취약지역을 위한 유익한 활동의 개발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공공적 정책 결과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곳에서 지원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가능한 한 세제혜택, 대출, 보조금,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특별 조달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 (3) 협동조합 운동의 모든 수준, 특히 경영 및 리더십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데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8. (1) 국가 정책은 특히 다음에 주목해야 한다.

- (a)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차별 없이 ILO의 필수적 노동기준과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촉진해야 한다.

- (b) 협동조합이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위장된 고용관계를 수립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동법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에 위반하는 ‘사이비 협동조합’을 방지해야 한다.
 - (c) 협동조합과 그들의 업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한다.
 - (d)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하여 모범적 노동관행이 협동조합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
 - (e) 협동조합 조합원, 노동자, 경영자들의 전문기술 및 직업관련 기술, 기업가적 능력과 경영 능력, 사업 잠재력과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그들의 접근이 향상되도록 한다.
 - (f) 국가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서 협동조합 원칙과 실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할 것을 장려한다.
 - (g)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 (h) 협동조합의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 (i) 신용에 대한 협동조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j) 시장에 대한 협동조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k)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의 전파를 촉진한다. 그리고,
 - (l) 개발정책의 형성과 실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국가통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장려한다.

(2) 그러한 정책은

 - (a) 협동조합과 관련된 정책 및 규제의 형성과 실행은 적절한 곳에서는 지방수준으로 분권화한다.
 - (b) 등록, 회계감사와 사회적 감사, 그리고 면허증의 획득과 같은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 (c) 협동조합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사례를 촉진한다.

9. 정부는 한계적 생존활동("비공식 경제"라고도 함)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로 바꾸고, 주류 경제생활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III. 협동조합 진흥을 위한 공공정책 이행

10. (1) 회원국은 제3항에 명시된 협동조합의 가치 및 원칙에 따라 지도되는 협동조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 정부는 협동조합에 적용 할 수 있는 법률, 정책 및 규정의 수립과 개정에 있어 관련 단체와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와 협의해야한다.

11. (1) 정부는 협동조합과 그들의 사업적 생존능력, 그리고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협동조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 가능하면,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해야한다.

- (a)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 (b) 조사와 경영자문 서비스
- (c) 금융과 투자에의 접근
- (d) 회계와 감사 서비스
- (e) 경영정보 서비스
- (f) 정보와 공공관계 서비스
- (g) 기술과 혁신에 대한 자문 서비스
- (h) 법률과 과세 서비스
- (i) 마케팅을 위한 지원 서비스
- (j) 적절한 곳에서의 기타 지원 서비스

(3) 정부는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그들의 조직은 이러한 서비스의 조직과 관리에 참여하고,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곳에서는 이 서비스들에 자금을 대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4) 정부는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수단을 발전시킴으로서 협동조합과 그들 조직의 역할을 공인해야 한다.

12. 정부는 적절한 곳에서 투자금융과 신용에 협동조합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a) 대출과 다른 재정 시설들이 제공되도록 허용한다.
- (b)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충분한 협동조합 자산 수준을 개선하며, 대출 거래비용을 줄인다.

- (c) 저축과 신용, 은행업무와 보험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을 위한 자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촉진한다.
 - (d) 취약집단을 위한 특별 조항을 포함한다.

13.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들을 위해 기술적이고, 상업적이며 금융적 연계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험의 교환과 위험 및 이익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IV. 고용인과 노동자 조직 및 협동조합 조직의 역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14.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의 조직들은 협동조합 조직들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야한다.

15. 사용자 조직들은 사용자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회원자격의 확대를 고려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으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6. 노동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장려된다.

- (a)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언 및 지원한다.
 - (b) 기본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을 비롯하여 노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 (c) 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위원회와 작업그룹에 참여한다.
 - (d) 폐업을 앞둔 기업의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참여한다.
 - (e)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한다.
 - (f) 협동조합에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한다.
 - (g) 협동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촉진한다.
 - (h) 교육과 훈련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타 활동을 수행한다.

17. 협동조합과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장려된다.
- (a)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자 및 노동자의 조직, 관련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과의 활발한 관계를 수립한다.
 - (b) 그들 자신의 지원 서비스를 관리하고 그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
 - (c) 소속 협동조합에 대한 상업 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d) 조합원, 노동자, 경영자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
 - (e) 더 나아가 국가수준 및 국제적 협동조합 조직들에 가입하고 발전을 촉진한다.
 - (f)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변한다.
 - (g)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타 활동을 수행한다.

V. 국제 협력

18. 국제적 협력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 (a) 협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고용창출과 소득발생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교환.
 - (b) 협동조합 발전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적 기구 및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조장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i) 직원들과 아이디어, 교육 및 훈련자료, 방법론, 참고 자료의 교환
 - (ii) 협동조합과 그들의 발전에 대한 조사 자료 및 기타 데이터의 편찬과 활용
 - (iii) 협동조합간의 연합체와 국제적 파트너십의 수립
 - (iv)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의 촉진과 보호
 - (v) 협동조합간의 상업적 관계 형성
 - (c) 시장 정보, 법률, 훈련 방법 및 기법, 기술 및 생산 기준과 같은 국가적, 국제적 데이터에 대한 협동조합의 접근
 - (d) 관련된 협동조합들,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들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지역 및 국제적 지침과 법률 제정을 개발.

VI. 최종 규정

19. 본 권고안은 1966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권고한 협동조합(개발도상국) 권고를 개정하고 대체한다.

부 록

1995년 국제 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에 대한 발췌문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1표),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은 민주적으로 관리 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목적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

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부 등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인접국가간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에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R193 -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motion of Cooperatives

Adoption: Geneva, 90th ILC session (20 Jun 2002) - Status: Up-to-date instrument.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90th Session on 3
June 2002,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in job creation, mobilizing
resources, generating investment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nd

Recognizing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and
Recognizing that globalization has created new and different pressures,
probl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ves, and that
stronger forms of human solidarit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 required to facilita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and Not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6th Session (1998), and Noting the rights and
principles embodied in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the Rural Workers'
Organisation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the

Employment Policy (Supplementary Provisions) Recommendation, 1984; the Job Cre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mmendation, 1998;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nd

Recalling the principle embodied in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that "labour is not a commodity", and

Recalling that the realization of decent work for workers everywhere is a primary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tw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I. SCOPE, DEFINITION AND OBJECTIVES

1. It is recognized that cooperatives operat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is Recommendation applies to all types and forms of cooperativ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ooperative" mean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 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

3. The promo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on the basis of:

- (a) cooperativ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as well as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and

- (b) cooperative principles a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and as referred to in the Annex hereto. These principles are: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democratic member control;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and concern for community.

4.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in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level of development, in order to assist them and their membership to:

- (a) create and develop income-generating activities and sustainable decent employment;
- (b) develop human resource capacities and knowledge of the values,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 (c) develop their business potential, including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capacities;
- (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s well as gain access to markets and to institutional finance;
- (e) increase savings and investment;
- (f) improve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g) contribute to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nd
- (h) establish and expand a viable and dynamic distinctive sector of the economy, which includes cooperatives, that responds to the social and economic needs of the community.

5. The adoption of special measures should be encouraged to enable cooperatives, a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spired by solidarity, to respond to their members' needs and the needs of society, including those of disadvanta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ir social inclusion.

II. POLICY FRAMEWORK AND ROLE OF GOVERNMENTS

6. A balanced society necessitates the existence of str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a strong cooperative, mutual and the other social and non-governmental sector. It is in this context that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supportive policy and legal framework consistent with the nature and function of cooperatives and guided by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which would:

- (a)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for the registration of cooperatives in as rapid, simple, affordable and efficient a manner as possible;
- (b) promote policies aimed at allowing the creation of appropriate reserves, part of which at least could be indivisible, and solidarity funds within cooperatives;
- (c) provide for the adoption of measures for the oversight of cooperatives, on terms appropriate to their nature and functions, which respect their autonomy, and ar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which are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pplicable to other forms of enterprise and social organization;
- (d) facilitate the membership of cooperatives in cooperative structures responding to the needs of cooperative members; and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s autonomous and self-managed enterprises, particularly in areas where cooperativ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or provide services that are not otherwise provided.

7. (1)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guided by th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illar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 Cooperatives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other forms of enterprise and social organization. Governments should introduce support measures, where appropriate, for the activities of cooperatives that meet specific social and public policy outcomes, such as employment promotion or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benefiting disadvantaged groups or region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among others and in so far as possible, tax benefits, loans, grants, access to public works programmes, and special procurement provisions.

(3)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 movement at all levels, particularly at management and leadership levels.

8. (1) National policies should notably:

- (a) promote the ILO fundamental labour standards and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for all workers in cooperative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 (b) ensure that cooperatives are not set up for, or used for, non-compliance with labour law or used to establish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combat pseudo cooperatives violating workers' rights, by ensuring that labour legislation is applied in all enterprises;
 - (c) promote gender equality in cooperatives and in their work;
 - (d) promote measures to ensure that best labour practices are followed in cooperatives, including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 (e) develop the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abilities, knowledge of business potential, and gener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skills, of members, workers and managers, and improv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f) promote education and training in cooperative principles and practices, at all appropriate levels of the 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in the wider society;
 - (g) promote the adoption of measures that provide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 (h) provide for training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to improve the level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cooperatives and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they produce;
 - (i)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credit;
 - (j)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markets;
 - (k)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cooperatives; and
 - (l) seek to improve national statistics on cooperatives with a view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olicies.
- (2) Such policies should:
- (a) decentralize to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where appropriat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cooperatives;

- (b) define legal obligations of cooperatives in areas such as registration, financial and social audits, and the obtaining of licences; and
- (c) promote best practice on corporate governance in cooperatives.

9. Governments should promote the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what are often marginal survival activitie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informal economy") into legally protected work, fully integrated into mainstream economic life.

III.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10. (1) Member States should adopt specific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cooperatives, which are guided by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and revise suc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en appropriate.

(2) Governments should consult coope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concerned, in the formulation and revision of legisla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cooperatives.

11. (1) Governments should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m, their business viability and their capacity to create employment and income.

(2) These services should include, wherever possible:

-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mes;
- (b) research and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 (c) access to finance and investment;
- (d) accountancy and audit services;
- (e)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 (f)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services;
- (g) consultancy service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 (h) legal and taxation services;
- (i) support services for marketing; and
- (j) other support services where appropriate.

(3) Governments shoul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se support

services. Cooperatives and their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services and, wherever feasible and appropriate, to finance them.

(4)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the role of cooperatives and their organizations by developing appropriate instruments aimed at creating and strengthening cooperative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12. Governments should, where appropriate, adopt measures to facilitate the access of cooperatives to investment finance and credit. Such measures should notably:

- (a) allow loans and other financial facilities to be offered;
- (b)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remedy any inadequate level of cooperative assets, and reduce the cost of loan transactions;
- (c) facilitate an autonomous system of finance for cooperatives, including savings and credit, banking and insurance cooperatives; and
- (d) include special provisions for disadvantaged groups.

13.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movement, governments should encourage conditions favour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ommercial and financial linkages among all forms of cooperatives so as to facilitate an exchange of experience and the sharing of risks and benefits.

IV. ROLE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M

14.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cooperatives for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seek, together with cooperative organizations, ways and means of cooperative promotion.

15. Employer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where appropriate, the extension of membership to cooperatives wishing to join them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ervice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pplying to other members.

16. Workers'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 (a) advise and assist workers in cooperatives to join workers'

organizations;

- (b) assist their members to establish cooperatives, including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access to basic goods and services;
- (c) participate in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a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ssues having an impact on cooperatives;
- (d) assist and participate in the setting up of new cooperatives with a view to the creation or maintenance of employment, including in cases of proposed closures of enterprises;
- (e) assist and participate in programmes for cooperatives aimed at improving their productivity;
- (f)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in cooperatives;
- (g) promote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worker-members of cooperatives; and
- (h) undertake any other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17. Cooperative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m should be encouraged to:

- (a) establish an active relationship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oncerned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gencies with a view to creating a favourable climate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 (b) manage their own support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ir financing;
- (c) provide commercial and financial services to affiliated cooperatives;
- (d) invest in, and furth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ir members, workers and managers;
- (e) further the development of and affili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organizations;
- (f) represent the 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 (g) undertake any other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V. INTERNATIONAL COOPERATION

18.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

 - (a) exchanging information on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have proved to be effectiv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for members of cooperatives;
 - (b) encouraging and promoting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in order to permit:
 - (i) the exchange of personnel and ideas, of educational and training materials, methodologies and reference materials;
 - (ii) the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research material and other data on cooperatives and their development;
 - (iii) the establishment of alliance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between cooperatives;
 - (iv)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and
 - (v)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cooperatives;
 - (c) access of cooperative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such as market information, legislation, training methods and techniques, technology and product standards; and
 - (d) developing, where it is warranted and possible, and in consultation with cooperative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concerned, comm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legislation to support cooperatives.

VI. FINAL PROVISION

19. The present Recommendation revises and replaces the Co-operatives (Developing Countries) Recommendation, 1966.

Annex

EXTRACT FROM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N 1995

The cooperative principles are guidelines by which cooperatives put their values into practice.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Cooperatives are voluntary organizations, open to all persons able to use their services and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without gender, social, racial, politic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Democratic member control

Cooperativ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their policies and making decisions. Men and women serv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re accountable to the membership. In primary cooperatives members have equal voting rights (one member, one vote) and cooperatives at other levels are also organized in a democratic manner.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Members contribute equitably to,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e capital of their cooperative. At least part of that capital is usually the common property of the cooperative.

Members usually receive limited compensation, if any, on capital subscribed as a condition of membership. Members allocate surpluses for any or all of the following purposes: developing their cooperative, possibly by setting up reserves, part of which at least would be indivisible; benefiting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transactions with the cooperative; and supporting other activities approved by the membership.

Autonomy and independence

Cooperatives are autonomous, self-help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If the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governments, or raise capital from external sources, they do

so on terms that ensure democratic control by their members and maintain their cooperative autonomy.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Cooperative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members, elected representatives, managers, and employees so they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operatives. They inform the general public - particularly young people and opinion leaders - about the nature and benefits of cooperatio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Cooperatives serve their members most effectivel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ve movement by working together through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ructures.

Concern for community

Cooperatives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through policies approved by their members.

설명문

오늘날 국제노동기구(ILO)는 협동조합에 관한 명시적 권한을 가진 UN의 유일한 전문기관입니다. ILO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 하에서 대다수 인구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기 위해 협동조합분과의 설치(1920) 이래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이러한 ILO의 협동조합 운동과의 밀접한 관계는 초대 사무총장인 알베르 토마(1919-1932)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협동조합가 이자 세계적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알베르 토마는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ILO에서 사용자 및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게도 동일한 발언권을 주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ILO 총회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 정책 지침인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The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193호를 채택했습니다. 많은 국제노동기준이 협동조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협동조합에 대해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93호 권고입니다. 이 권고는 이전의 것인 1966년의 협동조합(개발도상국) 권고(Co-operatives (Developing Countries) Recommendation) 제127호를 개정하여 대체한 것입니다.

193호 권고에서는 국가가 비공식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주류 경제적 삶과 통합된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고는 정부와 사용자 조직 및 노동조합에 의해 채택되고 관련 시민 사회조직에 의해 지원받은 부가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유일한 국제적 정책체제입니다.

2012년 기준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가 권고 193호에 기초하여 정책과 법률을 변화시켰으며 ILO는 2002년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고 적절한 정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CA와 협력하여 권고 193호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힘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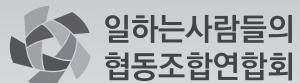
CICOPA 보고서 번역본

GLOBAL REPORT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2015
2016

cicopa 70 years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GLOBAL REPORT
2015 – 2016

AUTHORS:
ELISA TERRASI AND EUM HYUNGSIK

INDEX

INTRODUCTORY NOTE.....	P4
METHODOLOGY.....	P6
NUMBERS AND FACTS.....	P9
TRENDS IN ENTREPRENEURIAL DEVELOPMENT.....	P22
KEY ISSUES.....	P27
TACKLING CHALLENGES AND SEIZING OPPORTUNITIES.....	P35
POLICY ISSUES.....	P41
OUR NETWORK: OUR MEMBERS WORLDWIDE.....	P48

INTRODUCTORY NOTE

2013년과 2014년의 내용을 담았던 첫 번째 글로벌 보고서에 이어, 2015년과 2016년의 내용을 담아낸 두 번째 글로벌 보고서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첫번째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분석의 양적요소 및 질적요소 모두에서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진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를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상황을 기록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수년간의 참을성 있는 준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2004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일반 설문조사를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에 기반한 경제활동에 대한 첫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조합원들의 질적 데이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네트워크의 그림을 어느정도 충실히(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퍼즐조각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우리의 네트워크는 15년 만에 18개국에서 32개국(미국과 브라질과 같은 대형 국가 포함)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보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보고서의 또 다른 가치는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넘어서, 세계의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의 양적 평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CICOPA가 지난 수년동안 참여한 또 다른 대규모의 보고 활동 (<Cooperative and Employment, 2014 and 2017>¹⁾) 덕분에 가능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보고서들은 이 보고서와는 달리 전체 협동조합 운동에서의 고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¹ Roelants B, Eum HS and Terrasi E,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Brussels & Levis: CICOPA & Desjardins, 2014; and Eum HS: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2017

하지만 현실은 CICOPA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CICOPA가 모든 협동조합(일부는 ICA의 회원조직이며,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음)을 포함시키는데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수준에서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에 대한 보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8월에 두 번째 협동조합 고용에 대한 보고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의 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CICOPA네트워크와 그 이외의 분야에서 오늘날의 협동조합 섹터의 주요점들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지난 2년 동안 네트워크 내에서 관찰 해 온 기업의 발전 추세에 관해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이 보고서는 청년 협동조합 기업가정신과 녹색경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협동조합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보고한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사안과 CICOPA 스스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사안들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의 조합원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문지 작성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공해준 모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협력없이는 출판될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두명의 CICOPA 동료, 데이터 분석가인 엄형식 씨와 개발 및 연구원인 Elisa Terrasi, 보고서 작성 위해 수개월간 함께 일해준 David Zuluaga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했던 커뮤니케이션 담당 Reza Opdebeeck에게도 감사드립니다.

Bruno Roelants

CICOPA Secretary General

28 November 2017



METHODOLOGY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를 면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화된 문헌연구와 함께 정성적 및 정량적인 조사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QUALITATIVE INFORMATION

질적 방법론은 주로 다음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 > 첫째, 우리는 2015년 1월부터 과 2016년 6월까지의 CICOPA 회원들²의 주요 트렌드와 도전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 게시판 및 웹사이트에서 회원협동조합 국가의 언어로 된 그들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며, 자동번역기의 도움으로 모든 제목을 나열하고 검토했으며, 가장 많이 반복되는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의 CICOPA e-magazine Work Together³의 모든 뉴스 제목들을 검토했습니다.
- > 둘째, 우리는 각 회원협동조합 및 국가에 특별히 적용된 맞춤형 설문지를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를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설문지에는 청소년과 <녹색경제>⁴에 관한 특별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모든 회원협동조합들의 응답을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회원협동조합들의 데이터 및 온라인 관련 자료들의 보완적인 분석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특별 질문과 명확한 요청을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2 The members consulted were the ones affiliated to CICOPA in the years 2015 and 2016

3 Available at <http://www.cicopa.coop/Work-Together>

4 By “green economy”, we mean the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w-carbon economic activities

질적인 자문으로는, 네 대륙⁵의 40명의 자문위원 중 18개 국가에서 27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7개국의 23개의 CICOPA 회원 조직이 참여한 2013-2014 보고서와 비교하여 CICOPA 회원조직의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회원조직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의 양은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직의 참여와 피드백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원조직의 노력덕분에 본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QUANTITATIVE INFORMATION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UN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⁶에 따라 분류된 정보와 집계된 정보에 대한 두가지 설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설문지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4년간(2012년~2015년)의 데이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수집된 2012년과 2013년의 정보가 유효성을 위해 표에 삽입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조직에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집계된 정보에 대한 설문에는 성별, 연령, 녹색경제 이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데이터 수집 과정은 주로 질적정보를 위한 자문과 병행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수행되었습니다. 질적 데이터 수집과는 다르게, 양적 데이터 수집은 국가차원의 연합회인 CICOPA의 정회원조직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개의 회원조직이 양적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부문별로 분류된 데이터는 주로 유럽국가의 회원조직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유럽의 데이터에 치우쳐 있습니다. 게다가 수집된 데이터 외에도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5 From Europe: AGCI PSL (Italy); AGCI Solidarietà (Italy); ANCPL (Italy); Federlavoro (Italy); Federsolidarietà (Italy); Legacoop Servizi (Italy); COCETA (Spain); Confesal (Spain); CG Scop (France); Scop BTP (France); Kooperationen (Denmark); NAUWC (Poland); UCECOM (Romania); NUWPC (Bulgaria); SCMVD (Czech Republic); Co-operatives UK (United Kingdom); Coompanion (Sweden). From Africa: UCA (Uganda). From Asia: JWCU (Japan) and VCA (Vietnam). From America: CNCT (Argentina); Fe-cootra (Argentina); FCPU (Uruguay); ASCOOP (Colombia); CONFECOOP (Colombia); CWCF (Canada); USFWC (USA)

6 https://unstats.un.org/unsd/cr/registry/isic_4.asp

이전에 수집된 자료뿐만 아니라 새로 수집된 자료(21개 회원조직)를 사용하여 40개의 회원 조직 중 30개의 회원 조직을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25개의 회원조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 조합의 광범위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2017)⁷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세트에서는 실제로 CICOPA가 대표하는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생산자 협동조합, 사회복지, 교육, 건강, 지역개발, 노동조합에서 종사하는 협동조합에 관한 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7 <http://www.cicopa.coop/Second-Global-Report-on.html>

NUMBERS AND FACTS

일반적인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CICOPA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의 모든 협동조합) 개관

CICOPA의 회원조직의 협동조합을 분석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협동조합(즉, CICOPA 네트워크 내부 및 외부의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려 한다. 2차 고용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세트에서 우리는 노동자협동조합,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들과 동일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협동조합 이렇게 4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추출했다. 표 1에서 볼수 있듯이, 전체 377,984개 협동조합이 1,360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6백만개 이상의 협동조합과 연관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생산자와는 다르게, 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자 중 상당부분은 그들 스스로의 협동조합에서 고용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자 협동조합의 유형(표 2)을 살펴보면 이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를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노동자 협동조합과 얼마나 유사한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세계의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 개관

COOP TYPE	N° of coop	N° of worker members (A)	N° of employees (B)	N° of producer members (C)	Total n° of jobs (A+B+C)	N° of user members
Worker coop	253,274 (67.0%)	10966,776	1,208,777	280,159	12,455,712	2,473,391
Producer coop	66,311 (17.5%)	7,641	800,955	3,762,018	4,570,614	0
Social coop	16,746 (4.4%)	265,337	166,232		431,569	485,977
Possible social coop	41,653 (11.0%)	256,313	234,167	1,977,986	2,468,466	1,111,960
TOTAL	377,984 (100%)	11,496,067	2,410,131	6,020,163	19,926,361	4,071,328

Source: Own elaboration from the dataset for the Second Employment Report

그러나 CICOPA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자 협동조합 또한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동조합들에 대해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 협동조합 중 소수만이 CICOPA의 회원조직과 제휴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협동조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협동조합 유형이 주로 생산자 협동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주로 조합원들이 각자 스스로 고용된 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들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이들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기존의 고용계약 또는 협동조합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협동조합 노동계약을 통해 피고용자로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더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협동주의 개념, 프리랜서 협동조합들과 같은 새롭게 나타나는 형태의 협동조합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2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생산자 협동조합

Sub-type	N° of coop	N° of producer members (A)	N° of employees (B)	Total n° of jobs (A+B)
Transport	20,890	1,037,106	401,136	1,438,242
Undefined	20,685	496,191	259,023	755,214
Other producer activities	15,580	41,178	299	41,477
Professional	5,447	150,157	5,497	155,654
Artisan-craft	3,677	2,037,106	135,000	2,172,106
Tourism-culture	32	280	0	280
Total	66,311	3,762,018	800,955	4,562,973

Source: Own elaboration from the dataset for the Second Employment report

1991년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이 승인된 이래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 되어 왔다. 회원 조직의 자문과 기존의 법제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2011년 CICOPA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새로운 법을 참조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세계 표준 (2011 the World Standards of Social Cooperatives)⁸을 내놓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일반적인 관심사와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는 보통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8 <http://www.cicopa.coop/World-Standard-of-Social-1948.html>

<사회적>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의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이 있는데,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s),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다. 스페인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독립적인 법적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이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갖출 수 있는 2차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통계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존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법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에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경제 분야에 있으며, 비슷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및 보건서비스가 공공기관에 의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복지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조합원 제도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을 통해 아직 조사되지 않은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을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는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개발 또는 일반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아시아 국가의 여성협동조합은 이들 국가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한 노동통합의 개념을 공유한다. 조합원 유형에 관계없이 이러한 모든 협동조합은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possible social cooperatives)>으로 볼 수 있다. 명확한 정의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표 3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협동조합 중 일부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 더 깊게 분석한 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재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세계 표준을 잘 다듬는 것이 결국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표 3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POSSIBLE SOCIAL COOPERATIVES)**

Sub-type	N° of coop	N° of producer member (A)	N° of worker member (B)	N° of employee (C)	Total n° of jobs (A+B+C)	N° of user member
Education	454	0	4,738	23,330	28,068	42,716
General + community interest	91	13,353	123	0	13,476	0
Health	1,295	0	225,244	111,793	337,037	1,012,104
Social services	310	0	0	46	46	8,637
Social services and health	185	0	25,597	36,577	62,174	48,503
Work integration	39,318	1,964,633	611	62,421	2,027,665	0
Total	41,653	1,977,986	256,313	234,167	2,468,466	1,111,960

Source: Own elaboration from the dataset for the Second Employment Report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시아 (60 %), 유럽 (19.7 %), 미국 (19.1 %) 순이다.

표 4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지역 분포

Continent (N° of countries)	N° of coop	N° of worker members (A)	N° of employees (B)	N° of producer members (C)	Total n° of jobs (A+B+C)	N° of user members
Asia (14)	225,912 (60.0%)	8,564,526	883,073	3,538,612	12,986,211	266,579
Europe (18)	74,532 (19.7%)	1,558,021	1,007,804	0	2,565,825	157,982
America (23)	72,246 (19.1%)	1,335,684	274,934	282,976	1,893,594	2,830,515
Africa (6)	5,277 (1.4%)	37,836	243,535	2,198,575	2,479,946	4,790
Oceania (3)	17 (0.1%)	0	785	0	785	811,462
Total (64)	377,984 (100%)	11,496,067	2,410,131	6,020,163	19,926,361	4,071,328

Source: Own elaboration from the dataset for the Second Employment report

CICOPA는 이들 협동조합 중 회원조직을 통해 14.23%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50% 이상과 노동자협동조합의 16.5%를 포함하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자 협동조합은 CICOPA 네트워크 외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CICOPA 네트워크 밖에 널리 퍼져있는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표 5
CICOPA 회원조직 중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의 분포(부분적인 자료)

Coop type	N° of coop (A)	N° coop in CICOPA members (B)	Current coverage of CI- COPA membership (B/A)
Worker coop	253,274	41,861	16.5%
Producer coop	66,311	2,203	3.3%
Social coop	16,746	8,902	53.2%
Possible social coop	41,653	813	2.0%
Total	377,984	53,779	14.2%

Source: Own elaboration from the dataset for the Second Employment report and CICOPA dataset

CICOPA네트워크의 협동조합

첫 번째 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로 2016년에 새로 수집된 데이터로 분석이 이루어 졌지만, 새로 갱신하지 않은 첫 번째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에 대한 격년 보고서(2013-2014)⁹의 자료 또한 사용되었다. 40개의 CICOPA 정회원조직들 중 2016년에 가입한 2개의 조직(Liga de cooperativas, Puerto Rico and Coboce, 볼리비아)은 자료 수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조직 외에도 8개의 회원조직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30개의 회원조직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21개 회원조직의 데이터는 해당 조직이 직접 갱신하여 주기도 했지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서도 업데이트 될 수 있었다. 이를 25개의 회원조직의 자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두 시계열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회원조직들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 유형을 대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양한 설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이들의 특이성을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다. 표 6에서는 데이터세트의 이러한 점들이 요약되어 있다. 참조연도는 대부분 2015년의 자료이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로 다른 연도의 사례가 많이 사용되었다.

표 6
사용된 데이터의 주요 특징

	Total number of members	Data included	Updated data	Time-series data
Europe	21	20	14	15
Asia	4	4	3	4
North America	4	2	2	2
South America	9	4	2	4
Africa	2	0	0	0
Total	40	30	21	25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CICOPA의 회원 조직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소유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총 5개의 유형으로 재분류 될 수 있다. 분석된 협동조합의 총 수는 53,779개이며, 이는 CICOPA 네트워크내의 협동조합 65000개¹⁰ 중 약 82%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자료를 살펴봄에 있어, 수치들이 항상 CICOPA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부분만을 나타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표 7에서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주로 유럽의 정보를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남미의 회원조직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의 편차는 양적 분석, 특히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표 11, 12, 13)

9 <http://www.cicopa.coop/Global-biannual-report-o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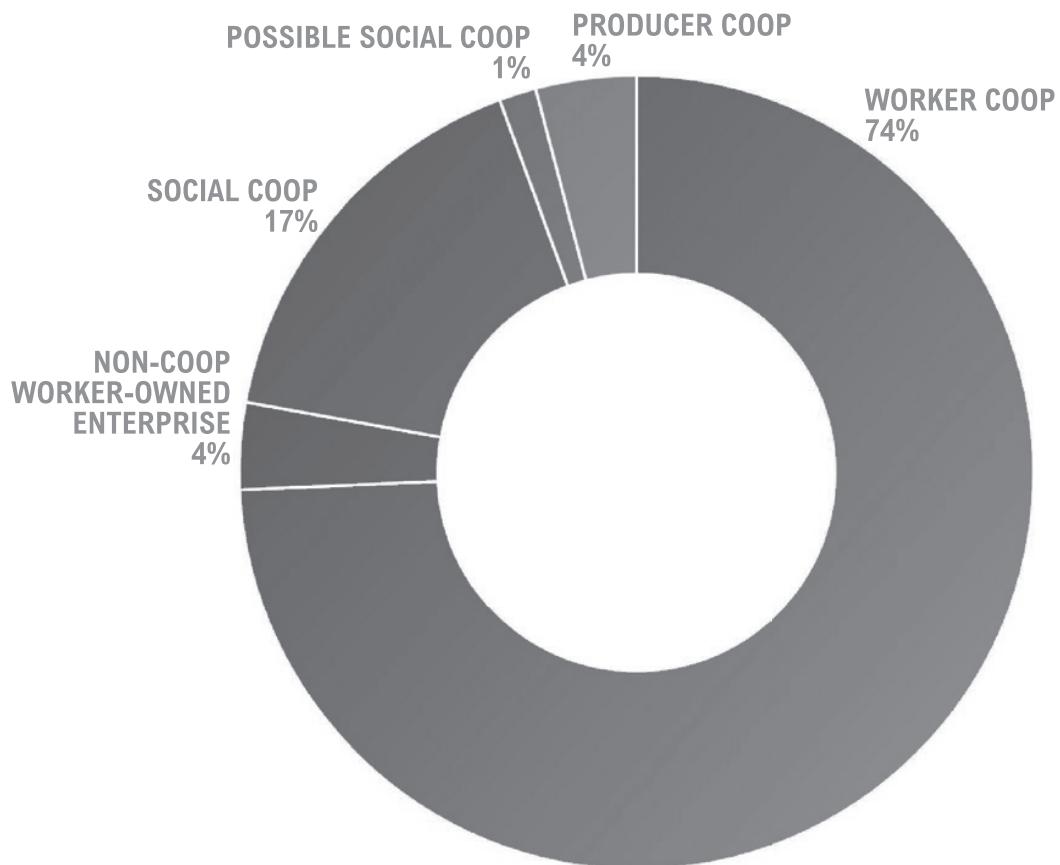
10 This estimation is the same as the one we presented in the previous biannual repor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ICOPA membership and cooperatives in CICOPA member organisations,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is estimation of 65,000, considering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crease in some countries

표 7
CICOPA 네트워크 내의 유형별 협동조합

Coop type	Europe	Asia	South America	North America	Total	Remark
Worker cooperatives	30,038	7,422	2,281	230	39,971	
Non-coop worker-owned enterprises	1,890				1,890	Sociedad laboral (Spain)
Social cooperatives	8,721	170	8	3	8,902	
Possible social cooperatives			813		813	Health cooperatives (OCB, Brazil)
Producers' cooperatives	10	965	1,228		2,203	
Total	40,659	8,557	4,330	233	53,779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그림 1
CICOPA 네트워크 내의 유형별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은 CICOPA 네트워크 중 가장 큰 부분(74 %)을 차지한다. 보고된 협동조합 중 CICOPA 회원조직들을 통틀어 39,971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약 200만개의 일자리(170만명의 노동자 조합원과 271,000명의 비조합원 노동자)를 제공한다.

표 8
CICOPA 글로벌 네트워크의 노동자 협동조합(부분 수치)

Coop type	Continent	N° of coops	N° of worker-members (A)	N° of non-member employees (B)	Total n° of jobs (A+B)
Worker coop	Europe	30,038	653,664	254,141	908,805
	Asia	7,422	657,324	8,576	665,900
	South America	2,281	361,861	7,671	369,532
	North America	230	3,224	762	3986
Total	40,659	39,971	1,676,073	271,150	1,947,223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그림 2
대륙별 CICOPA 네트워크의 노동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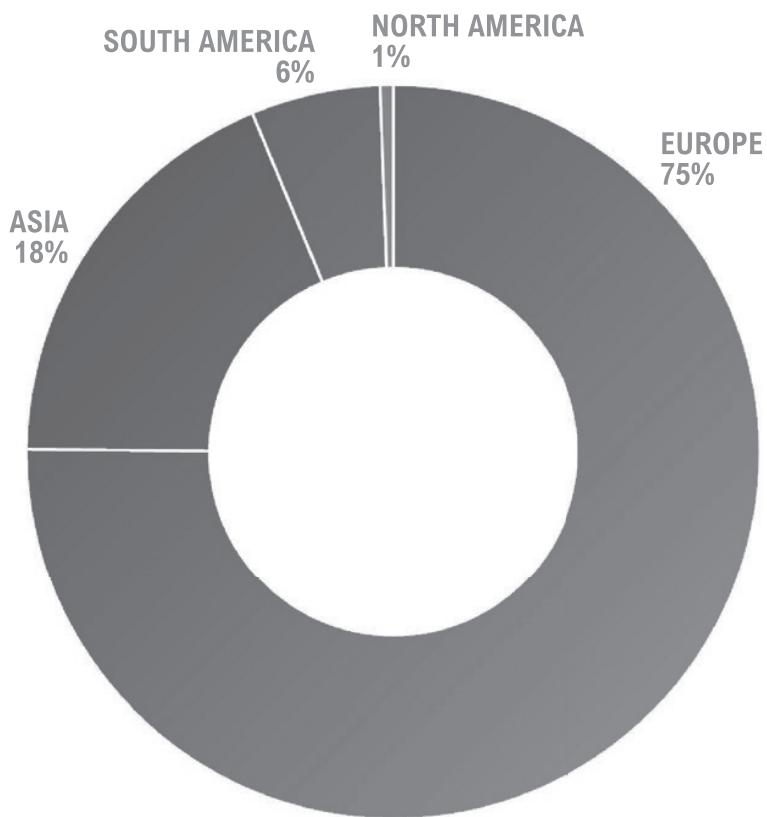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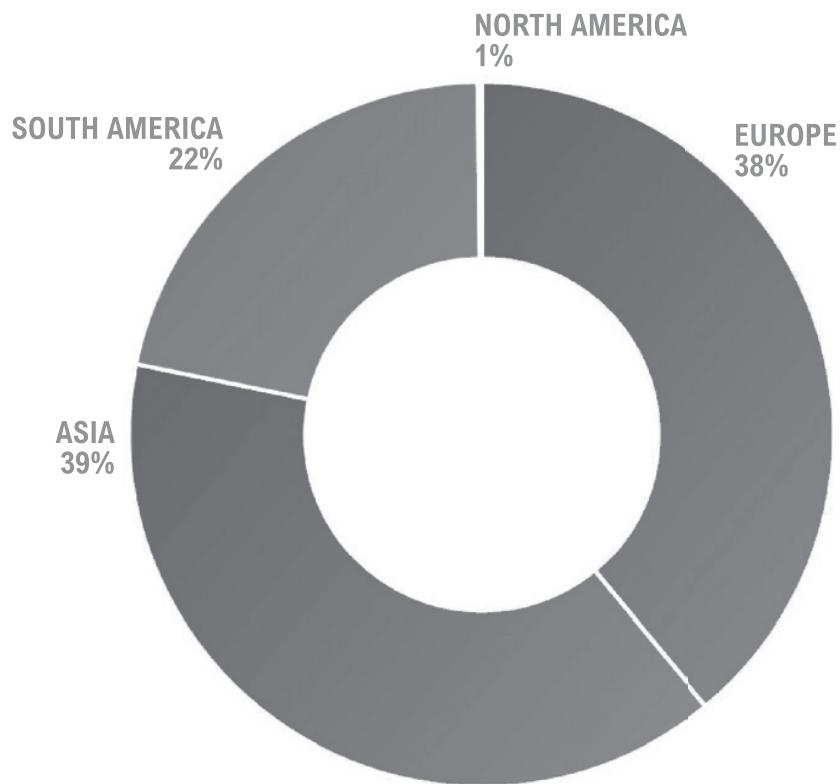


그림 3
대륙별 CICOPA 네트워크 노동자협동조합의 노동자조합원 수



CICOPA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약 17%를 차지한다. 보고된 협동조합 중 2,890개의 노동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8,90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에 속한다. 이는 주로 유럽의 사례이다. 이들은 약 3만명의 가난한 사람의 고용을 포함하여 약 333,000개의 일자리(노동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동자)를 제공한다. 또한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사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서 18,000명의 비노동자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9
CICOPA네트워크의 사회적협동조합

COOP TYPE	CONTINENT	N° of coops		N° of worker-members (A)		N° of non-member workers (C)		Total n° of jobs (A+C)	
		of which n° of coops with disad- vantaged persons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D)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D)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D)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D)	of which n° of disad- vantaged persons (B+D)
Social coop	Europe	8,721	2,882	234,989	25,882	95,001	3,049	329,990	28,931
	North America	3		110		8		118	
	South America	8	8	315	315	9	9	324	324
	Asia	170				2,290		2,290	
Total		8,902	2890	235,414	26,197	97,308	3,058	332,722	29,255
Possible social coop	South America	813		225,191		96,230		321,421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CICOPA 네트워크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은 여전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CICOPA 회원조직 중 2,203 개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CICOPA에 해당 조직들이 가입했을 때 주요 대상 유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이해하려는 CICOPA의 노력덕분에 데이터 분석 중 포함되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러한 협동조합 유형을 더 잘 이해하고 CICOPA 네트워크에 이들을 조직화 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일과 고용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퍼지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플랫폼 협동주의의 개념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자 협동조합과 매우 유사한 모델을 통해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CICOPA 회원조직중 하나인 OCB의 운송협동조합, 관광 및 레저 협동조합, 보건협동조합 ('가능한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함)들은 지난 격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¹¹ 초반의 노동자 협동조합 유형과 구별되었던 이 세 유형의 협동조합은, 현재의 분석에서 포함되었지만, 생산자 협동조합과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유형으로 구분된다.

11 <http://www.somoscooperativismo.coop.br/ramo-trabalho>

표 10
CICOPA 네트워크의 생산자 협동조합

Coop type	CICOPA member	Sub-type	N° of coops	N° of worker-members (A)	N° of non-member employees (B)	Total n° of jobs (A+B)
Producer coop	Co-operatives UK (UK)	Artisan / self-employed coop	10	22	nd	22
	VCA (Vietnam)	Transportation coop	965	nd	nd	
	OCB (Brazil)	Transportation coop	1,205	136,425	11,209	147,634
		Tourism and leisure coop	23	1,823	15	1,838
Total			2,203	138,270	11,224	149,494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CICOPA 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이 수행한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는 ISIC 코드¹²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 중 서비스 부문은 63%를 차지하며 건설부문을 제외한 산업 부문(25%), 건설부문(10%)이 그 뒤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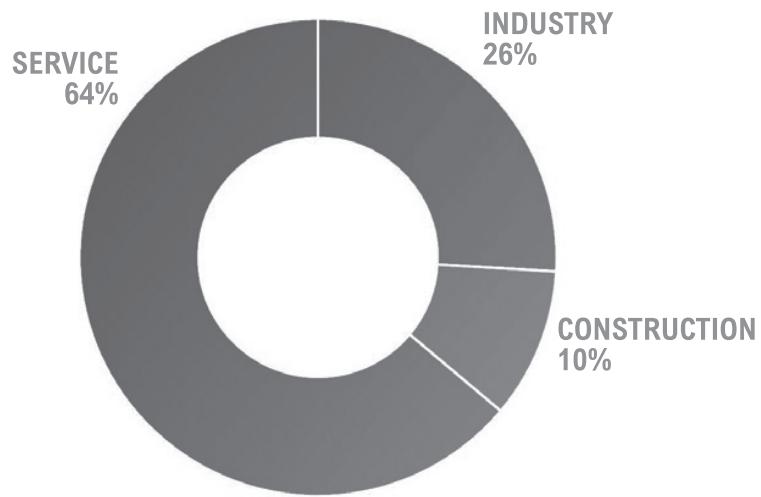
표 11
분야별 CICOPA 네트워크의 협동조합 경제활동

Category	Asia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Total
INDUSTRY EXCEPT CONSTRUCTION	3,429	7,999	67	173	11,668
CONSTRUCTION	2	4,475	11	98	4,586
SERVICE	957	26,985	125	671	28,738
Total	4,388	39,459	203	942	44,992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12 It needs to be noted that economic activity data on SAL (Spain) and worker cooperatives in the USA include information on non-member cooperatives due to their original data which did not distinguish information on member cooperatives and non-member cooperatives

그림 4
주요 분야별 CICOPA 네트워크의 협동조합의 양적 분포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석할 때, 경제활동에 따른 분포는 다른 수치를 보여 준다.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가장 큰 분야는 C. 제조(22.5%), G. 도소매(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 (14.5%), F. 건설(10.2%)이다.



TABLE 12

산업 코드별 CICOPA 네트워크의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제활동(부분적 수치)

Category	Description	Asia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Total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5	922	47	95	1,069
B	Mining and quarrying		55		3	58
C	Manufacturing	3,415	6,625	20	60	10,120
D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131			131
E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	9	266		15	290
F	Construction	2	4,475	11	98	4,586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21	6,496	20	8	6,545
H	Transportation and storage	2	2,576	5	62	2,645
I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44	2,665	17	5	2,731
J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	1,909	30	26	1,967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209		11	220
L	Real estate activities		487		5	492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5	3,855	21	22	3,903
N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371	2,295	6	99	2,771
O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7		2	9
P	Education	8	1,262		7	1,277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494	2,033	23	77	2,627
R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1,176	2	3	1,181
S	Other service activities	10	2,015	1	344	2,370
U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1	1
Total		39,459	203	942	44,992	942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사회적협동조합은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Q. 보건 및 사회사업활동(46.3%), P. 교육(12.7%), N. 행정 및 지원 서비스 활동(9.7%)와 같은 경제분야가 가장 크고 지배적인 반면,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3
산업 코드 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제활동(부분적 수치)

Category	Description	Europe	North America	Total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266	3	269
C	Manufacturing	505		505
D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16		16
E	Water supply; sewerage,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activities	86		86
F	Construction	111		111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178	1	179
H	Transportation and storage	107		107
I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347		347
J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96		96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7		7
L	Real estate activities	7		7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78		178
N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956		956
O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5		5
P	Education	1,254		1,254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4,564	8	4,572
R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189		189
S	Other service activities	562		562
ND	Other activities	422		422
Total		9,856	12	9,868

Source: Own elaboration from CICOPA data set

TRENDS IN ENTREPRENEURIAL DEVELOPMENT

전체적인 동향

대다수의 회원 조직은 생산, 매출, 고용, 기업의 창업과 해산의 비율, 과 같은 경제 지표의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 2015년에서 2016년 동안 협동조합의 긍정적이거나 안정적인 기업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생산 및 매출과 같은 경제지표 및 창업과 해산 사이의 비율과 같은 다른 경제지표에 위기의 신호가 있더라도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지표는 고용 지표이다. (하단 그래프 참조)

그림 5
2015년-2016년 경제 상황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고한 회원조직 중 프랑스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CG Scopdelek. CG Scop에서는 2016년에 총 2,991개의 가입 협동조합(2015년 대비 4% 증가), 근로자 53,850명(2015년 대비 4.2% 증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진화는 최근 몇 년간 기록된 긍정적인 추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매년 평균 299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 창출에 관한 스페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COCETA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고했다. 2015년과 2016년 동안에 스페인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 안에서 22,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중 80%가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¹³.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와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만한 발전은 다른 CICOPA 회원조직들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특히 노동통합 협동조합이 발전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일반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의 발전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최근 노동자 협동조합의 수가 증가해왔으며, 특히 창조적인 산업들, 즉 전문 디자이너, 예술가, 웹 개발자 등의 산업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의 수가 증가해왔다. 덴마크에서는 주로 미디어, 기술 및 문화활동에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증가했다. 체코에서는 자동차 산업, 금속작업,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이 발전되었다. 미국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자금으로 인해 뉴욕에서는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생겨났다¹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양적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역학 관계가 CICOPA 회원조직들의 회원 증가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직들은 지난 2년(2013년~2014년)에 비해 경기 침체의 징조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 회원조직인 CNCT와 FECOOTRA는 주로 섬유, 야금, 건설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입 개방 및 설비 비용의 꾸준한 상승과 같은 불리한 정부 조치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폐업 사례를 보고했다. 한편, 우루과이의 회원조직인 FCPU는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생산, 매출, 고용의 침체를 보고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경제 침체 기간 동안 일부의 기업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고, 여전히 통합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의 악용을 금지하는 공공정책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 협동조합의 수가 급격히 감소(2,500개의 협동조합이 폐쇄됨)했고, 관련된 일자리 수가 급감(3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했다.

13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in COCETA article available at <http://www.coceta.coop/noticias-coceta.asp?idnew=454>

14 It is worth specifying that, as highlighted by our member U.S. Federation of Worker Cooperatives (USFWC), the number of attempted but not achieved creations of worker cooperatives in the United States is much higher than the effective number of successful start-ups. This may be explained by an inadequate entrepreneurial preparation (business plan etc.), which has drawn the attention of USFWC on the significant gap in the technical needs to support the business development of cooperatives more intensely than previously thought

또한 일부 유럽 회원조직들은 지난 몇 년간의 연속된 어려운 동향을 보고해왔다. 프랑스 건설협동조합 연합회인 SCOP BTP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추세를 보고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회원 조직들도 일자리와 신생기업의 점진적인 감소를 알려왔다. 이탈리아의 노동자 협동조합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침체는 일부 국가에서 산업,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어려움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동향

서비스 부문의 동향

서비스 부문은 미디어, 기술, 문화에서부터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국가에서 보고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신생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동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회원조직들이 보고한 주요 발전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프랑스 회원조직인 CG Scop는 협동조합 중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말에 1,350 개의 협동조합과 18,4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100개의 신생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63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저한 증가(2015년 34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따.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우루과이에서도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의 성장 추세가 보고되었다. 이는 양적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분야 Q.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은 국가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에 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정성은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공공예산의 감소로 인해 2014년 말에서 2016년 상반기 까지 고용서비스가 2.4% 감소하였다.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는 23개 회원조직 가운데 2,531개의 협동조합 중 1,25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7,199개의 협동조합 중 4,57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건 및 사회사업 분야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두 부문의 협동조합은 보고된 협동조합 전체 중 17.7%를 차지한다.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사회적, 환경적 서비스, 교육, 문화 등)을 제공하는데 특화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장애인, 장기실업자, 전과자, 중독자 등)의 노동통합 특화된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초의 콜롬비아 사회적 협동조합인 Coopetín은 2016년에 설립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모델의 잠재적인 확장성을 연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지원 및 재통합에 이미 많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협동조합들이 보건 및 사회 복지를 위한 예산의 부족분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폴란드의 회원조직은 미래 신생 기업의 관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는 잠재성을 강조했다. Euricse¹⁵에서 발표한 최근의 연구¹⁶에 따르면, 폴란드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5%의 연간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고, 1,269 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CICOPA 네트워크에서 10개의 회원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한다¹⁶.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 개의 회원조직(AGCI Solidarietà, Federsolidarietà and Legacoop sociali)은 두 가지의 유형을 갖고 있다. 즉 보건, 사회, 교육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유형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B유형이 있다. 일본의 고령자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JWCU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주로 고령자인 사용자 조합원과 노동자 조합원을 포함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노동통합에 특화된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4개의 CICOPA 회원조합이 있다. CICOPA 네트워크의 모든 노동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약 3만명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나타내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법적으로 협동조합이 별도의 협동조합 유형을 갖는 것이 아니며, 2차적인 분류로 사용된다. 폴란드와 한국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직 운동으로서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으며, CICOPA의 회원조직은 이들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CICOPA 네트워크 내의 정량적 데이터는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의 정량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많은 협동조합 유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조사가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15 Euricse, 2017, Selected Aspects of Social Cooperatives in Poland, Euricse Working Papers, No. 93 | 17, available at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940313

16 For more information in detail, see table 9 in the Numbers and Facts section

신생 혁신 분야

흥미롭게도 아르헨티나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발전을 보고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우루과이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ICT 분야는 CICOPA 회원조직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부분적인 자료에 따르면 ICT 분야의 18개 회원 조직이 있으며, 2,06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들은 보고된 전체 협동조합의 3.77%를 차지한다.

일부 회원 조직은 사업과 건설 부문, 관련된 공급사슬에서 변화를 강조하며, 기술 및 환경 혁신과 관련된 성장기회를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역사가 오래된 협동조합들이 건설 부문과 건설과 관련된 산업에서 문을 닫았지만¹⁷, 위기에 처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하고, 선진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들이 생겨난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COCETA(스페인), SCOP BTP(프랑스)는 환경 영향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건설 활동의 증가를 강조했다.

덴마크, 스웨덴, 아르헨티나, 미국, 베트남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및 재활용과 같은 환경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증가 추세가 보고되었다.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새로운 환경 협동조합의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업 분류 체계를 통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전기, 가스, 증기, 에어컨 공급>과 <수도공급,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활동>의 범주를 각각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및 재활용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현재의 분류 시스템에서는 기술 및 환경 혁신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건설부문의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구별 할 수는 없다.

<전기, 가스, 증기, 에어컨 공급> 분야에서 활동 중인 조직으로는 5개의 유럽 회원 조직의 147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수도공급, 하수도, 폐기물 관리 및 개선활동> 부문에서는 10개의 회원조직의 376 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대부분 재활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7 « XIV Indagine Congiunturale dell’Osservatorio Economico e Sociale dell’Ancpl », Ancpl, 2016

KEY ISSUES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협동조합 운동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도전적인 두가지 주제, 즉 청년 협동조합 기업가정신과 “녹색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녹색 경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환경보호 및 저탄소 배출목표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청년 협동조합 기업가정신

최근 국제 노동기구(ILO)¹⁸ 통계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소폭 감소한 후 2016년에 청년 실업이 전 세계적으로 7,100만 명에 이르렀다. 청년들은 특히 빈곤과 비정규 노동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청년의 3분의 1 이상이 직업이 있더라도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경제활동인구의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International Summit of Cooperatives의 청년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Co-operate to transform society>¹⁹의 메시지를 통해 옹호한 것처럼, 최근 몇 년간 협동조합이 어떻게 자원의 재분배와 공동소유를 통해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년 스스로의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ICA의 청년 네트워크²⁰의 영향으로 전세계 수준의 청년 협동조합 리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으며, 최근의 European Young Cooperator Network의 형성 또한 볼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ICA 유럽의 지역 조직인 General Assembly of Cooperative Europe의 틀안에서 201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청년협동조합을 촉진시키며, 협동조합 운동에서 보다 나은 청년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작단계부터 활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첫 번째 회의는 영국 노동자 협동조합인 AltGen²¹, 프랑스 사회적 협동조합인 Solidarité Etudiante²², 이탈리아의 청년간의 협동조합 기업을 촉진하는 조직인 OOP! - Confcooperative²³ and Generazioni – Legacoop²⁴가 조직하였다.

18 ILO: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for Youth 2016, Geneva: ILO, 2016

19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s://ica.coop/en/media/news/summits-young-leaders-issue-declaration-2014-international-summit-cooperatives#overlay-context>

20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s://ica.coop/en/alliance-youth-network>

21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altgen.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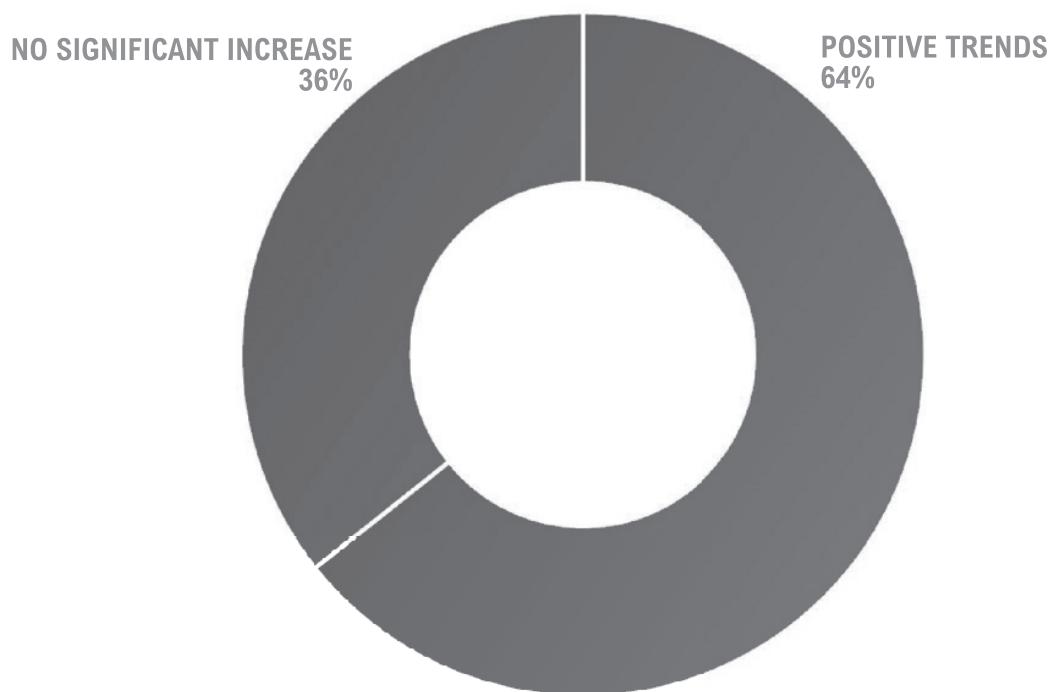
22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solidariteetudiante.fr/>

23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s://www.facebook.com/OOPgiovani>

24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generazioni.legacoop.it/>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CICOPA의 인식은 2013년-2020년 전략계획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서 CICOPA는 2017년의 <We Own it!> 캠페인 개시를 위한 2015년-2016년 자금조달 전략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의 창설을 통해 더 나은 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들이 고용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캠페인은 웹사이트, 연구, 홍보 비디오<Working together for a cooperative future>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다음 세대 및 정책 입안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Working together for a cooperative future>는 CECOP-CICOPA Europe, CICOPA Mercosur,CICOPA과 함께 CICOPA가 2015년에 공동제작 한 것이다.

그림 5
CICOPA 회원조직의 청년에 의한 협동조합 창업



흥미롭게도, 이 주제에 대해 응답한 대다수의 회원조직들은 최근 몇 년동안 청년들이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수치와 양적 추세에 대한 증거가 많지는 않고 회원조직들이 이야기한 인식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 조직들은 연령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수치를 얻는 것은 어렵다.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의 청년참여와 관련된 자료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제공해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말 35세 이상의 젊은 임원이 노동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든 임원 중 15%를 차지했다. 스페인에서는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청년 비율은 25세 미만의 경우 4.3%이며,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37.5%로 나타났다. COCETA에 따르면 스페인 노동자협동조합의 청년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조합원의 80%가 고등교육 수준을 갖춘 35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에 보고된 수치)²⁵.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의 협동조합의 청년들의 참여를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청년들 간의 협동조합 촉진이 많은 국가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CJS²⁶ (<Youth Services Cooperative>의 프랑스어 약자)는 12-17세 학생이 여름동안 잔디깎기, 그림그리기, 청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구만드는 것을 교육받는 퀘벡(캐나다)의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10-15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소규모 노동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사업운영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모델은 1980년 캐나다 퀘벡에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 네트워크인 RESEAU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매년 약 15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최근의 발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RESEAU는 퀘벡에서 이 모델을 더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가, 다른유형의 기업,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가들을 모으는 <*Fabrique entrepreneuriale*>(<기업가 공장, entrepreneurial factory>)을 창설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국가 사이에서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에 체결된 대서양 상호협력 덕분에 최근에는 청년 서비스 협동조합이 프랑스에서도 시작되었다. 2013년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6년에는 33개의 협동조합²⁷이 사업 및 고용 협동조합²⁸(CAE, <*coopérative d'activités et d'emploi*>)의 형태로 설립되었고 프랑스 네트워크인 Coopérer²⁹의 제휴아래 설립되었다.

25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empresaytrabajo.coop/nacional/coceta-lanza-el-proyecto-orientacoop-para-la-juventud/>

26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s://www.projetcjs.coop/france/quest-ce-quune-cjs/historique-des-cjs/>

27 G. Volat et A. Plaindoux, « Les Coopératives Jeunesse de Services, vers une conscience citoyenne pour les jeunes coopérants », in XVII Rencontres du RIUESS, Engagement, Citoyenneté et Développement : Comment former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 Marrakech, 22 au 24 mai 2017

28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were originally designed in France as a specific form of worker cooperative allowing people to develop their own business while benefiting from full-fledged rights and protection as well as back-office services (e.g. accountancy) during a test period.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rench 2014 law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hey have been recognised as a specific form of cooperative, whose members can also be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test period and have their own business and clients, like most freelancers. For this purpose, a new status of « employee-entrepreneur » (entrepreneur-salarié), applying only to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has been introduced in the French labour code

29 CG Scop, « Coopératives jeunesse de services: les jeunes s'initient à l'entreprenariat coopératif », Participer n°653, 26 November 2014

스페인에는 청년 협동조합 기업가정신에 참여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스페인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인 COCETA는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노동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스페인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의 시도로서 <Youth Learning and Employment Strategy 2013/2016>³⁰에 참여했다. 이 전략은 청년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스페인에서는 29세까지)이 양질의 고용, 지속적인 교육, 견습 및 실습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한 European Commission³¹이 추진한 계획의 국가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 틀에서 COCETA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및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4년에 시작된 Emprende.coop³²라고 명명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돋는 웹 포털을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발전상황을 추적하는 온라인 도구 포함)에 대한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다른지역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사업 계획 디자인, 스페인 지방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기타 자원 등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COCETA가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들(NEET)를 대상으로 하는 웹 포털 및 모바일 앱 Orienta.coop을 설계하고 출시했다. 이 포털은 EU Youth Guarantee 계획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드는데에 대한 직업지도 및 훈련을 제공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들이 발전해왔다. 한가지 예는 여성들과 35세 미만의 청년들을 위한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협동조합(Italian cooperative association confcooperative)이 최근 시작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Coop UP!³³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 창업 및 기존 협동조합의 개발을 위한 멘토링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및 코워킹스페이스를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낸다. Coop Up!이 인큐베이팅한 새로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대기금 Fondosviluppo³⁴의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연 최대 1.5 %의 이자율로 최대 3 만 유로의 협동조합 공유 자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온 또 다른 예는 2013년 5월 Coopfond(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회 Legacoop에서 관리하는 연대 기금)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인 Coopstartup³⁵이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 간의 협동조합 창업과 새로운 시장의 협동조합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차별없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혁신, 조직혁신, 사회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30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empleo.gob.es/es/garantiajuvenil/informate.html>

31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

32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emprende.coop/index.php>

33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coopup.net/>

34 In Italy, Law 59 / 1992 has established solidarity fund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llowing the national associations of cooperatives to create and manage such funds. Fondosviluppo and Coopfond were created respectively by the cooperative organisations Confcooperative and Legacoop, not only to finance but also to provide a wide range of advisory and follow-up services in different fields such as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under the cooperative form, as well as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s. The resources of the funds come mainly from 3% of the annual profits of associated cooperatives, as per law 59 / 1992.

35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coopstartup.it/en/project>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다: 실무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무료 온라인 코스; 대학의 파트너십;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육성기관과의 파트너십; 잠재적인 협력자 그룹이 추진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선택하기 위한 지역 요청조직; 상환 가능한 대출의 제공 및 멘토링;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도구. 2013년부터 지역차원에서 10건의 요청이 조직되었으며, 54개의 협동조합이 선정되고 30개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폴란드에서는 CICOPA 회원조직인 NAUWC가 <learning by doing>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어린 청년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문화와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Young people – ready steady go!>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선생님의 둘봄과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협동조합은 적어도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상당히 넓다. 상품 생산 및 판매, 학교 및 제 3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식물키우기와 가축키우기(작은가축),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 학교 주변에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 가치 전파,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이벤트 등 여러 행사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1900년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의 Pszczelina에서 Jadwiga Dziubińska(교사이자 협동조합 운동가)가 첫 번째 학생들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래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 1991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협동조합 발전 기금(PCDF, Pupils' Cooperative Development Fund)이 설립되었다. NAUWC와 PCDF는 종종 학생들의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행된 프로젝트인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협동조합>³⁶이 있다.

녹색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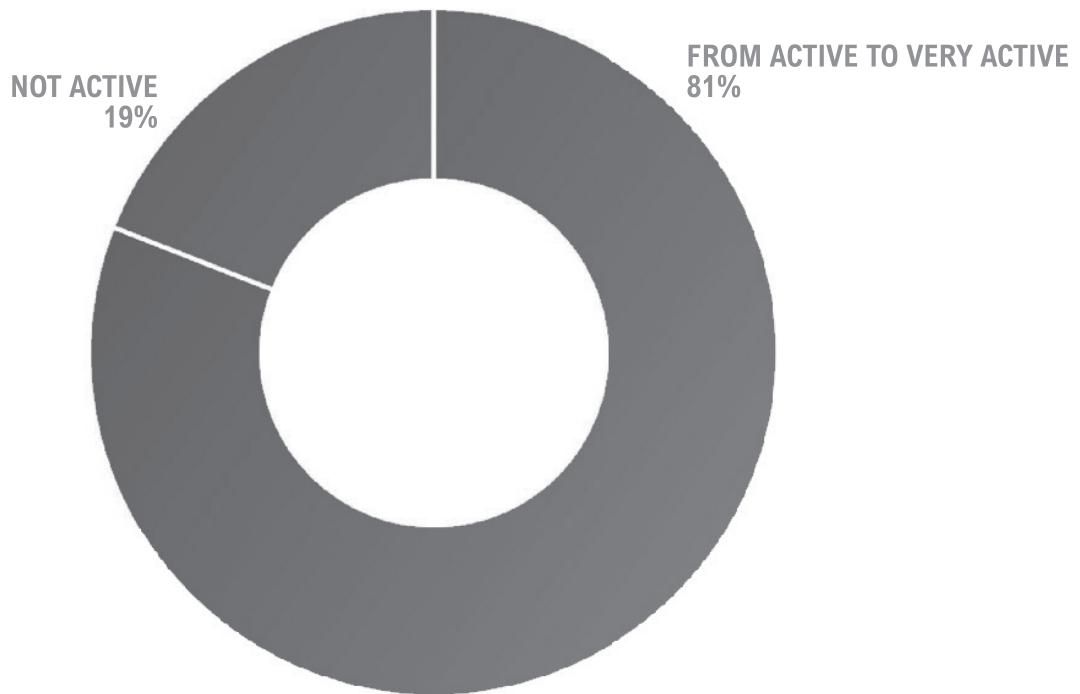
기후변화와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제정책 의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극심한 기상현상과 같은 경고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12일 파리의 COP21에서 지구온난화를 2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반면 UN 의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는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무엇이 협동조합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있는 경제를 향한 소중한 동맹국으로 만들었을까? 협동조합의 지역 기반과 공동체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협동조합은 내생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특히 적합하며, 녹색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공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의 협동조합 연합회(COOPERAR) 회장이며 새롭게 선출된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 아젠다>³⁷에서 다루고 있다. 협동조합 분야의 힘과 책임은 본래의 목적, 즉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Guarco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혁신이 사람들의 서비스에서 일어날 때(소수의 주주의 손에 달린 이익이 아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환경파괴와 불평등을 야기한 모델의 대안>으로 등장한다.

36 For more details about Pupils' Cooperatives in Poland, consult the website (in Polish): www.frsu.pl

37 Available at <http://eng.arielguarco.coop/co-operative-agenda-to-defend-the-planet/>

지속 가능한 관광, 에너지, 폐기물관리, 환경교육, 숲과 자연지역의 지속가능한 건설과 관리 등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에서 큰 기회가 있는 분야는 다양하며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 주제에 관해 CICOPA 회원조직 중 대다수가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트렌드를 지적하면서 기술 혁신과 환경 혁신을 자국의 부문 별 협동조합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중 하나로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활동은 새롭게 떠오르는 활동을 시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북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더욱 강화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탈리아와 우루과이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강력한 개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와 환경 서비스(베트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건설 부문과 같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곤란을 겪던 활동에 있어 시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돋고있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림 6
녹색 경제에 대한 CICOPA 협동조합의 참여



녹색경제에서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흥미로운 <시험장>은 스페인의 Andalusia이다. 안달루시아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FAECTA)³⁸에 따르면 안달루시아는 가장 많은 수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고용이 창출된 스페인의 자치 공동체이며, 약 4000개의 협동조합(스페인 협동조합의 약 18%), 노동자 협동조합의 80%를 차지하는 수이다. 또한, 2015년 FAECTA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³⁹, 안달루시아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번째로 큰 자치공동체이다. 132 개의 협동조합 활동(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환경과 연관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이 푸른경제(해양부문)에 속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와 교육, 재활용, 생태관광, 유기농, 재생가능 에너지 및 바이오건설 등이 뒤따른다. Andalusia의 경우 녹색경제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경향과 기회를 보여주는 반면 다른 지역의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통합된 관행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케벡의 임업협동조합의 사례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개선하기위해 설립되었다. 오늘날 케벡의 임업 협동조합 연맹(CICOPA의 회원조직인 CWCF에 속해있음)은 케벡의 산림 부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40개의 협동조합에서 2,700명의 노동자 조합원이 있으며 약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노동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환경보호와 사회에 가장 취약한 범주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사례로서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 수 있다. FECOOTRA에 속한 노동자 협동조합 Creando Conciencia⁴⁰(Creating Awareness)는 200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방에서 고체 폐기물에 대한 도시 관리를 염려하는 주변 단체들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플라스틱 가구의 설계 및 시공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창업자의 대부분은 대규모 폐기물을 수집회사에 고용된 쓰레기수거인 이었으며, 불안정하고 단기간동안 실업자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 협동조합은 5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대부분 여성이고, 지난 몇 년간 아르헨티나에서 상당히 확되어온 재활용 협동조합 분야의 건설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FECOOTRA의 지원으로 Creando Conciencia는 2014년 말 쓰레기 줍는 사람들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 네터워크는 회원조직의 기업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 분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스웨덴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재활용, 원예, 농업 등의 분야에서 여러 노동통합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38 « Andalucía, vanguardia del cooperativismo », available at <https://www.faecta.coop/index.php?id=29>

39 « Informe sobre la economía verde y el cooperativismo en Andalucía », available at <https://www.faecta.coop/doc/Econom%C3%A-Da%20Verde%20y%20Cooperativismo.pdf>

40 <http://www.creandoconciencia.com.ar/>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JWCU는 도쿄의 재활용 식용유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 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공장인 Agurri⁴¹은 지역의 기업을 위해 바이오 디젤 연료를 생산한다. JWCU는 전국적으로 4개의 비슷한 공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시장에서 매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좀 더딘 편이다. 실제로 녹색경제에서 회원조직들이 보고한 발전이 큰 장애물들로 인해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다. 자금부족과 강력한 지원조치 등은 혁신과 기술의 잠재성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완전한 개발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회원조직들이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분야에서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한 몇가지 흥미로운 요구들이 있다. 프랑스의 건설 및 공공사업 분야의 노동자협동조합을 대표하는 SCOP BTP가 보고한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연맹은 2012년부터 시작된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증전문기관인 Afnor⁴²와 함께 CSR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인증 프로세스는 AFAQ 26000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인식향상, 자가평가, AFAQ 26000 평가, 공공사업 부문과 전체 건설업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평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다. 이 사업의 주최자인 SCOP BTP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증으로 생겨나는 인식은 건설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들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용 웹페이지가 시작되었다⁴³. 2016년 초 인증을 취득한 처음 4개의 노동자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여, 이러한 운동 내에서의 우수사례 및 인증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41 The experience of Aguriin was included in the CICOPA video « Working together for a cooperative future » that can be watched [here](#)

42 <https://www.afnor.org/>

43 Available at <http://www.scopbtp.org/rse/>

TACKLING CHALLENGES AND SEIZING OPPORTUNITIES

산업과 서비스 분야는 극적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은 중요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경쟁력과 규모를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 회원조직들과 협동조합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아래에 몇 가지 전략과 상징적인 시도들을 소개한다.

상호협력

CICOPA (90 % 이상)에 포함된 협동 조합의 대다수는 중소기업(SMEs)이다. 중소기업 차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기업간의 협력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여섯 번째 협동조합 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2016년에 Montevideo(우루과이)에서 개최된 'IV Cooperative Summit of the Americas'에서 CICOPA의 회장인 Manuel Mariscal이 강조한 것과 같이 이러한 요소는 여전히 협동조합운동에 있어 도전과제로 남아 있으며 더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것은 협동조합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에도 적용된다⁴⁴. 상호 협력은 CICOPA와 NRECA(미국의 the 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가 공동주최한 <산업 서비스 및 에너지 분야의 협동조합 : 현재와 미래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회의의 주된 주제였다. 이 미팅은 2016년 퀘벡에서 열린 협동조합 국제 정상 회의(the International Summit of Cooperatives)의 부분이었다.

44 More information about Manuel Mairscal's speech can be found in the article published by CICOPA Mercosur « Manuel Mariscal: « Tenemos que pensar y actuar desde la intercooperación », available at <http://cicopamerkosur.coop/manuel-mariscal-tene-mos-que-pensar-y-actuar-desde-la-intercooperacion>

이 회의에서 산업, 서비스 및 에너지 협동조합 분야에서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업간 협력 방법들을 갖고 협동조합들이 그들의 작은 규모를 상쇄하는지 설명했다. 협력도구들로 소개된 것은 자문서비스, 훈련계획, 상호금융기구, 비즈니스 네트워크, 수평적인 협력⁴⁵ 등이다.

아래에 소개할 사례는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로 상호협력과 기업혁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CICOPA 회원조직인 Federlavoro가 개발한 NETCOOP 프로젝트는 Federlavoro의 노동자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력과 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장려하고 제휴하고 있는 협동조합들 사이의 더 많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동자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최초의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여주는 포털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이탈리아 전체에서 관심있는 모든 협동조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의 지도를 통해 빠르게 탐색해볼 수 있다. 최신의 기술혁신을 유지해 NETCOOP 포털(www.netcoop.it)은 다른장치들(PC, 스마트폰, 태블릿)로 접속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웹사이트 또는 소셜네트워크 프로필에 통합하게 할 수 있다. NETCOOP은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선택적인 전략을 구사할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 연합회인 Federlavoro가 소속 협동조합들이 모든 사업 부문을 더욱 모세관형태로 전략적이고 구조화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영국에는 부문별 시도가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 운영되는 노동자 협동조합들은 등급을 매겨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에 CoTech(Cooperative Technologists) 네트워크에 모였다. 이는 함께 강해져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따낼 수 없던 계약을 따내고, 일을 공유하며,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부터 디자인, 브랜딩, 인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CoTech는 영국의 협동조합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2020년까지 1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10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⁴⁶.

아르헨티나에는 분야내의 상호협력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소비자와 노동자 협동조합이 2016년 최초의 온라인 중앙 구매기구(<Central de Compras>)을 출범시켰다. 이 시도는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FACC)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인 Bahía Blanca 지역의 Cooperative Obrera에서 시작된 것이며, CICOPA의 회원조직인 FECOOTRA가 참여했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협동조합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살수있으며, 적절한 가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도구를 사용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은 대규모 잠재고객그룹에게 닿을 수 있으며 그들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⁴⁷.

45 More information about the main outcomes of the encounter can be found in the article published by CICOPA « SME cooperatives use intercooperation tools to remain strong and transform society », contained in the Special Dossier « The power of inter-cooperation », Sep-Oct-Nov 2016. Available at http://www.cicopa.coop/wt/WT_September-November-2016_EN.html

46 See the website <https://www.coops.tech>

47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www.faccargentina.coop/central-de-compras.html>

다국적 차원에서 2015년에 캐나다의 CWCF와 프랑스의 CG Scop이 서명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대서양협약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협약은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식 및 전문가의 공유를 촉진하고, 특히 협동조합 형태로 비즈니스를 이전하는 방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계약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CWCF는 2016년에 퀘벡 주 노동자협동조합네트워크인 RESEAU가 비즈니스를 이전하는데 대해 CG Scop의 웹사이트를 적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었다⁴⁸. 또한 CWCF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대한 번역과 적응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혁신적인 분야로의 전환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정보통신기술(ICT)와 같은 혁신부문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협동조합과 디지털 경제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협동조합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협동조합 분야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네트워크내의 몇가지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루과이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을 위한 전략 부문을 식별하고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정부와 합의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혁신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기 위해 Incubacoop⁴⁹가 설립되었다. 2016년에는 생명과학(생명공학, 식품기술, 정밀화학, 나노기술 및 제약), 정보통신기술(IT, 오디오-비주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단계에 있는 예비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들에게 신청받기 시작했다. 선정된 지원자는 협동조합의 발전단계에서 재정지원, 교육,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최대 2년동안 진행되며, 그 후에 협동조합은 창업지원기관을 떠나야 한다⁵⁰.

한편으로는 새로운 <협동조합 기술 부문>의 창설을 위해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촉진하고 이미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확산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분야의 상징적인 시도는 Si Se Puede에 의해 수행되었다. Si Se Puede는 뉴욕의 하우스클리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 소유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We can do it!>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협동조합은 Cornell 기술대학의 연구진들과 협력하여 Coopify⁵¹이라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은 예약을 위해 오피스 매니저의 병목현상을 피해 뉴욕의 홈케어 협동조합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개자가 없어진다면, 돈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기술을 통해 <공유경제>에서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oopify 서비스는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48 See the website www.transfertcoop.com

49 <http://www.incubacoop.org.uy>

50 <http://negocios.elpais.com.uy/negocios/empresas/incubacoop-convoca-formar-cooperativas-base-tecnologica.html>

51 <https://community-wealth.org/content/coopify-new-platform-bringing-broad-based-ownership-your-smartphone>

대서양의 반대편에서 프랑스 노동자 협동조합운동은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내에서 가능한 발전 축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과 디지털 경제>라는 위원회와 함께, 이 부문의 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이 되려고 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CoopVenture⁵²라는 새로운 투자기금이 고안되었다. 투자는 3-5년동안 보통주(equity) 펀드를 통해 조성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얻은 협동조합은 주식(share)를 다시 사지 말 것을 요구받지만(투자 능력에 불이익을 끼칠수 있음), 기존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투자 펀드의 주식(share)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분야의 차세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금조달

여섯 번째 협력원칙(협동조합간 협동)에 따라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협동조합 운동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교한 자금조달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대응된다. 노동자 협동조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도 있다. 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본화, 높은 상환율, 높은수준의 비용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투자 시스템과는 달리 투자자에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영리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협동조합 부문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특히 강하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시도 중에서 영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연대기금⁵³(Solid Fund)를 소개한다. 2014년 하반기에 노동자 협동조합 그룹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이후 곧 개발 되었다. 이 기금은 개별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노동자협동조합 또는 산업민주화와 공동소유(collective ownership)를 지지하는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영국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개발하는 훈련, 네트워킹,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60,394 파운드와 535명의 가입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개발함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국가에서는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부족이 매우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시민사회 내에서의 크라우드펀딩이나 저축과 같은 새로운 자본조달 메커니즘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프랑스의 CG Scop은 2016년 협동조합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인 <i finance a cooperative project>⁵⁴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금융상품 개발이나 최근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새로운 자본조달 메커니즘의 개발을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위한 독점적인 방법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접근이 매우 어려운 은행 대출을 보완해야 한다. 협동조합조직들은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52 <http://coopventure.fr/#map>

53 <http://solidfund.coop/about>

54 www.jefinanceunprojetcooperatif.fr

정체성 확립, 인식제고, 네트워크

ICA«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⁵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 운동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공동의 협동조합 메시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협동조합을 보고 이해할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내부 및 외부의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 협동조합 운동 자체 내에서 <공유된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만들어져야 하며, 협동조합 메시지를 외부에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체성 확립 프로세스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공통적인 기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회의 및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회원조직들이 보고한 몇가지 관련된 시도들을 아래에 정리했다.

아르헨티나 회원조직인 CNCT는 2016년 <Buy Cooperative>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소비자와 노동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시민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CNCT의 회장 Christian Miño⁵⁶가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것의 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장려해야 할 발전 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며, 협동조합을 구매하고 아르헨티나의 사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노예노동을 근절하고, 자본의 탈주를 막고 자금조달의 극대화와 연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알아차릴수 있게 하는 것이다. CNCT는 다양한 지자체에서의 홍보 이벤트를 통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순회행사를 실시했다. Tigre(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캠페인의 결과로 주문이 30% 증가 했고 그 결과 생산량이 늘어났다.

불가리아에서는 Plovdiv지역에서 CECOP, CICOPA 유럽, 불가리아 회원조직인 UNWPC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유럽포럼(European Forum on Social Entrepreneurship)이 이제는 매년 열리는 독특한 행사가 되었다. 이 사업은 5년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2012년 이래로 이 전시회는 원탁회의, 유럽박람회, 컨퍼런스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2016년의 유럽박람회에는 벨기에, 불가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에서 온 약 100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참가했으며, 방문객 수는 약 3만명에 달했다.

55 https://ica.coop/sites/default/files/media_items/ICA%20Blueprint%20-%20Final%20version%20issued%207%20Feb%202013.pdf

56 <https://trabajocooperativo.com.ar/2017/04/04/882>

지난 몇 년간 신속하게 발전한 또다른 시도는 CICOPA의 홍보지원으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중 하나인 Federsolidarietà이 주최한 사회적 협동조합 국제 학교이다. 기업가정신이 뛰어나고 특히 협동조합 경영자가 될 협동조합인을 대상으로 한 이 학교는 2014년 Bertinoro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된 후에 이후 매년 새로 갱신되어 2015년부터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전세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도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 국제적인 토론과 교류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폴리에서 개최된 2016년의 행사에는 이탈리아, 일본,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및 터키 등 30여명의 협동조합 관리자가 참석했다. 이는 지역개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적인 기업간의 파트너십,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금융도구, 이민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다루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⁵⁷.



57 More info about the 2016 edition can be found in the dedicated CICOPA article, at <http://www.cicopa.coop/Great-success-of-the-SCIS2016-4.html>

POLICY ISSUES

국가 수준에서의 주요 사실들

CICOPA의 회원조직들의 주요 어려운 정책 문제와 옹호조치에 대한 주제는 크게 두 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규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이다. 아래에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회원조합들이 도전과제와 정책문제에 대해 보고한 주요 업적들의 구체적인 예를 간단하게 제시한다.

규제 문제

아르헨티나의 회원 조직인 FECOOTRA와 일본의 회원조직인 JWCU는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회원조직은 <일본이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도, 노동자협동조합 법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도 없는 소수의 선진국 중 하나이며 이러한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특히 노동 통합과 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이 없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세계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브라질과 같은 나라가 예외에 속함). 다른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경우와 노동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 체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협동조합은 발전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회원조직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협동조합 법의 개선이나 변화를 요구한다. 폴란드에서는 NAUWC가 협동조합의 최소 조합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노동자협동조합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초기의 조합원 기반구성이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과는 다르다. 우루과이의 FCPU는 대부분의 노동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그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는 규범적 틀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조직들은 협동조합 규제 체제와 해당국가의 적용 분야의 성과와 발전 정도를 보고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의 CG Scop는 2014년에 승인된 사회연대경제법(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aw)의 일부 시도들을 보고했다.

- 1) 최초의 과도기적 노동자협동조합(<SCOP d'amorçage> in French)의 설립⁵⁸, 즉 협동조합 형태로 노동자가 기업을 매수하는(workers' buyouts) 새로운 도구를 의미함. 비협동조합 이해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기업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과반수의 주주가 되기 전에 최대한 7년간 소액 주주로 있을 수 있음,
- 2) 첫 번째 노동자 협동조합 그룹의 설립⁵⁹.
- 3) 기업인-고용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사업 및 고용협동조합<coopérative d'activités et d'emploi>의 약자인 <CAE>의 법적인 인정

> 2016년 6월 이탈리아 의회는 제 3섹터⁶⁰ 법 개혁을 승인하였다. 이는 제3섹터 조직에 적용되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들에도 적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개혁을 통해 1) 자산과 부동산을 제3섹터에 더 쉽게 위임될 수 있게 한다.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을 지역소유권을 가진 범죄조직이나 문화 및 환경 자산에서 압수한 사용되지 않는 공공건물이나 부동산은 지역개발과 재생에 대한 새로운 잠재성을 지닌 제 3섹터의 조직에게 위탁될 수 있다. 2) 또한 제 3섹터 조직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재정적인 방안을 안내한다. 3)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들의 연합회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을수 있다

> 스페인에서는 2015년 Sociedades laborales⁶¹(노동자가 소유한 기업 유형)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노동자 조합원의 참여와 보호가 용이해 졌으며, 경영에 필요한 관리 절차가 쉬워졌다.

> 캘리포니아 주는 2015년에 노동자 협동조합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노동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법인 법에 통합되어 있었음)이 노동자 협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⁶².

58 <http://www.les-scop.coop/sites/fr/espace-presse/communique-scop-amorçage%20>

59 <https://www.les-scop-idf.coop/actualite-presse/communiques-de-presse/20160708.calice-premier-groupe-cooperatif.htm>

60 The law applies to volunteer organizations, associations, philanthropic bodies,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social cooperatives), associative networks and mutuals

61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15-11071

62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AB816

규제분야에서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회원조직들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공공조달에 관한 접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014년에 유럽의회가 유럽국가들에 의한 공공조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의 기준이 도입되어 공공당국이 기업이 제공하는 품질, 사회적 측면, 환경적 고려사항, 혁신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가격은 중요한 요인임). 다음으로 계약을 롯트단위로 나누고 행정부담을 80%까지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로 공공당국이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의 사회적 및 전문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 한해 입찰을 제한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을 채택한 것은 노동통합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법이 발효된 이후,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법안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데 2년이 걸렸다. 2014년 시행된 법의 상태와 이것이 유럽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협의회 기간동안 간신된 반복적인 문제는 금융, 세금, 관료제 분야에서 주로 협동조합에 유리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콜롬비아의 CONFEcoop과 ASCOOP가 이와 관련해 보고한 중요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16년에 구조적인 세금 개혁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세금인센티브가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결국,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 소득세 정책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어 20%의 소득세율을 유지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제도는 특권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외부효과와 협동조합의 이러한 외부효과의 비용측면에서 협동조합의 기여가 인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특히 일부국가에서 몇몇 국가에서 전환점에 있는 협동조합 분야의 떠오르는 발전기회를 살펴볼수 있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두가지 사례를 언급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의 새로운 회원조직인 VCA는 베트남의 최근 협동조합 법률현황과 이것이 협동조합 분야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정부는 중점적으로 협동조합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2012년에 승인하였고⁶³, 2016-2020년 기간동안 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특히 시골지역의 농업,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스타일>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다⁶⁴. 시골지역의 예비 협동조합을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관광서비스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63 <http://cpdhost.cpd.go.th/cpd/thaiaseancoop/download/Thai/Law/vietnam%20coop%20law%202012.pdf>

64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English/strategies/strategiesdetails?categoryId=30&articleId=10057712>

지금까지는 예비 협동조합에서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협동조합의 정확한 수에 대한 보고서가 없으며, 주로 중앙에서 지역 수준으로 정책을 이전한 덕분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에서 협동조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다.

콜롬비아의 평화절차는 협동조합이 콜롬비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가정신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다양한 필요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인구 집단의 조직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협동조합이 그들의 경험 덕분에 지역 사회의 사회망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기 때문이다>⁶⁵.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평화구축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강하게 옹호받았으며, 회원조직인 Confecoop이 2016년 전략적으로 <Cooperative for Colombia 2016-2020.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Our contribution for Peace!)> 프로그램을 구성했다⁶⁶. 이 프로그램은 기존 협동조합의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새롭고 더 많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공공정책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지점은 협동조합 분야와 매우 관련이 높다. 1) 농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농촌지역 개발, 2)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생산자 협동조합의 설립, 3) 청년, 특히 개인 생산자 협동조합 및 노동자 협동조합의 설립, 특히 관광,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 환경보호 등과 같은 신흥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4)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 특히 무력 충돌의 희생자(피난민 여성 등)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및 노동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협동조합에 대해 차별적인 모든 법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의 오용을 규제하는 2011년에 승인된 법안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운영역량과 발전역량이 강력하게 제한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65 Confecoop, « Informe de Desempeño de las Cooperativas 2016 », p. 103. Available at http://confecoop.coop/wp-content/uploads/2017/07/Info_Desempe%C3%B1o_2016.pdf

66 <http://confecoop.coop/site/wp-content/uploads/2016/08/Propuestas-para-el-Gobierno.pdf>

세계적 수준에서의 주요사실

아래에서는 2015년과 2016년 CICOPA가 국제수준에서 회원조직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취한 중요한 시도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 > 2015년 9월 UN 총회에 참석한 194개의 국가는 2030 개발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빈곤퇴치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위한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2030년 의제에서는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협동조합을 이의 한 부분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는 협동조합이 없이는 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CICOPA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체, 협동조합(Cooperatives as build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⁶⁷라는 문서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통해 평등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 및 서비스분야의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2015년 2월 CICOPA의 사무총장과 ICA 정책국장이 함께 뉴욕 UN 본부를 방문하는 동안 UNDESA에서 발표된 것이다. 2016년 말에는 UN에 넘겨준 SDG에 대한 ICA의 선언에 크게 기여했다.
- > CICOPA가 작성한 문서 <협동조합은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의 열쇠>⁶⁸에서 이들은 협동조합 기업 모델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공식경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는 2015년 6월에 개최된 제 104차 국제노동회의(ILC)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ILO의 세 구성(정부, 고용주, 노동자대표)들에 의해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204번 권고안이 찬성 484표로 승인되었다. CICOPA는 ICA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다. 협동조합은 이 권고안에서 이러한 전환의 일부로 언급되었다. 이 문서는 CICOPA가 ICA를 대표하여 참석한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조직으로 구성된 전용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이다⁶⁹.
- > CICOPA는 2015년 ILC회의에서 중소기업위원회에서 ICA의 이름으로 입회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과 생산적인 고용창출에 관한 결론, Conclusions o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⁷⁰에서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5개의 참고문헌을 지지했다.

67 Available at: www.cicopa.coop/IMG/pdf/cooperatives_as_builders_of_sustainable_development_en_cicopaweb.pdf

68 http://www.cicopa.coop/Cooperatives-are-key-to-the.html?var_mode=calc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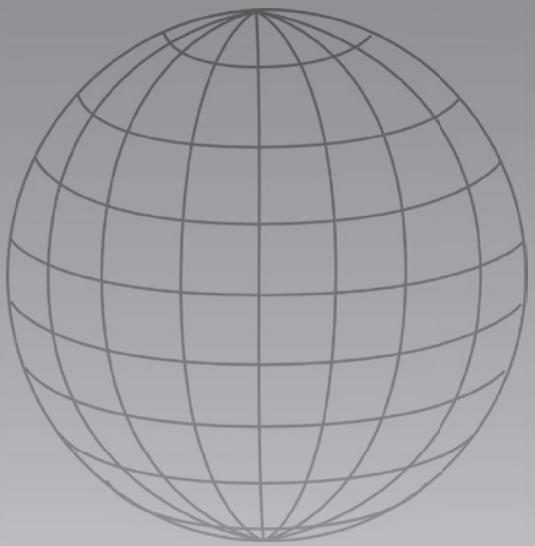
69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377776.pdf

70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375357.pdf

> 지난 몇 년간 협동조합 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ILO, FAO UNDESA, ICA와 같은 여러 국제기구가 협동조합 진흥위원회(COPAC, 이러한 기구들의 단체)의 지휘하에 일련의 활동들이 수행되었다. 2016년에 COPAC은 이러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술실무그룹을 창설하고 2018년 10월에 있는 제 20차 노동 통계 국제 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 통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내부 데이터 수집 및 첫 번째 고용보고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CICOPA는 2016년에 시작해 직접 또는 경우에 따라 ICA를 대신하여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다. 첫 번째 고용보고서는 ILO가 작성한 협동조합 통계지도 제작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기준자료로 사용되었다. ILO와 함께 CICOPA는 2015-2016년 협동조합 통계에 대한 5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국제기구, 국가협동조합운동, 정부, 국가통계청 및 연구원들이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다중이해관계자 회의가 2016년 4월 로마의 FAO 본부에서 CICOPA의 중재 하에 조직되었다. CICOPA의 데이터 분석관은 이때부터 이 다중이해관계자 회의에서 COPAC 기술실무그룹의 일원으로 일했다.

>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크게 증가한 세계상황에서 CICOPA는 2016년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에 관한 선언문을 작성했으며⁷¹, 협동조합이 서비스와 노동기회를 얻는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표명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기업가 프로젝트를 위한 좋은 삶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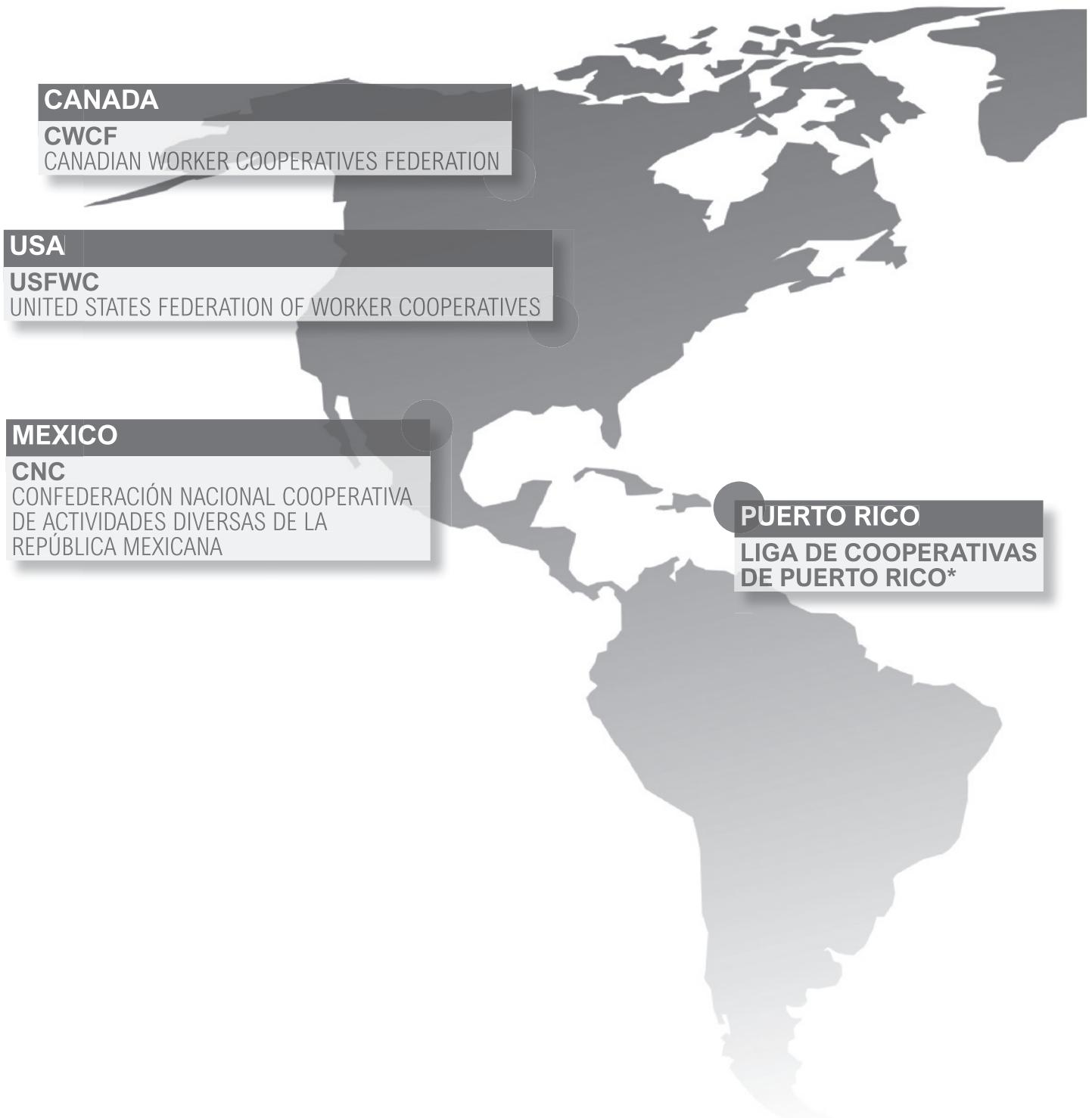
71 The full declaration is available at : http://www.cicopa.coop/IMG/pdf/cicopa_declaracion_on_migrants_en.pdf



OUR NETWORK: OUR MEMBERS WORLDWIDE

1947년 창설된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부문별 조직인 CICOPA는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의 국제 조직이다. CICOPA는 전 세계 4 천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약 65,000 개의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에 소속된 협동조합 및 전국 대표 단체를 홍보하는 조직을 포함해 32 개국의 48 명의 회원조직과 함께하고 있다. CICOPA는 CECOP-CICOPA Europe과 CICOPA Americas의 두 지역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CICOPA Americas는 CICOPA North America 와 CICOPA Mercosur 이렇게 두 개의 하위 지역기구를 갖고 있다.





*INFORMATION ON MEMBERS AFFILIATED IN 2017 IS NOT INCLUDED IN THIS REPORT



COLOMBIA

ASCOOP

ASOCIACIÓN DE COOPERATIVAS
DE COLOMBIA

CONFECOOP

CONFEDERACIÓN DE COOPERATIVAS
DE COLOMBIA

BRAZIL

OCB

ORGANIZAÇÃO DAS COOPERATIVAS BRASILEIRAS

UNISOL

CENTRAL DE COOPERATIVAS E
EMPREENDIMENTOS SOLIDÁRIOS

PARAGUAY

CONPACOOP (ASSOCIATE MEMBER)

CONFEDERACIÓN PARAGUAYA DE COOPERATIVAS

URUGUAY

FCPU

FEDERACIÓN DE COOPERATIVAS
DE PRODUCCIÓN DEL URUGU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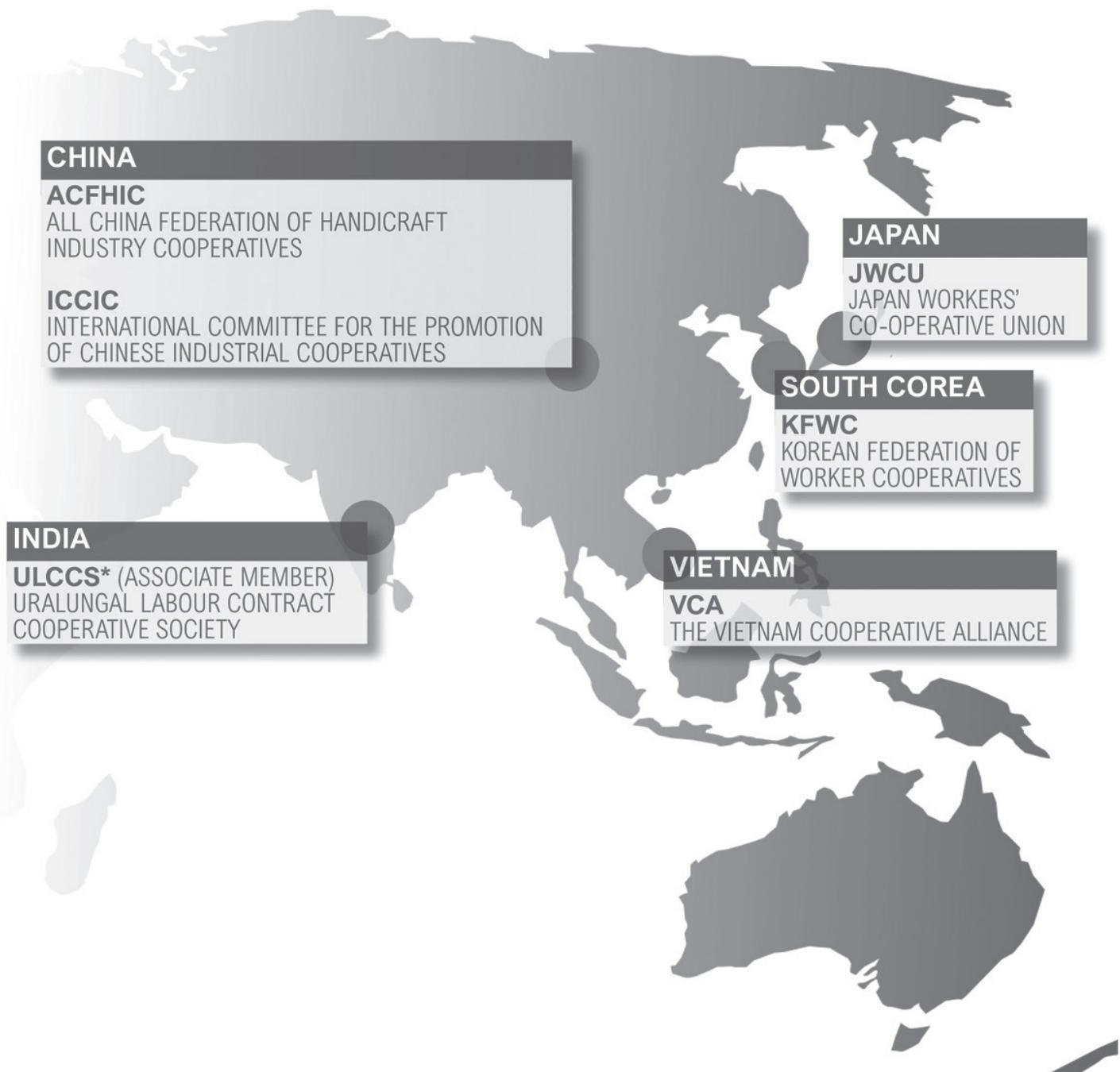
ARGENTINA

CNCT

CONFEDERACIÓN NACIONAL DE
COOPERATIVAS DE TRABAJO

FECOOTRA

FEDERACIÓN DE COOPERATIVAS DE TRABAJO



*INFORMATION ON MEMBERS AFFILIATED IN 2017 IS NOT INCLUDED IN THIS REPORT

BELGIUM

DIESIS (ASSOCIATE MEMBER)
THE EUROPEAN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SMART* (ASSOCIATE MEMBER)

BULGARIA

NUWPC
NATIONAL UNION OF WORKERS'
PRODUCTIVE CO-OPERATIVES

CZECH REPUBLIC

SCMVD
UNION OF CZECH AND MORAVIAN
PRODUCERS' COOPERATIVES

DENMARK

KOOPERATIONEN
KOOPERATIONEN DET KOOPERATIVE
FÆLLESFORBUND

FINLAND

COOP FINLAND

FRANCE

CGSCOP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S
S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

FÉDÉRATION SCOP BTP (ASSOCIATE MEMBER)
FÉDÉRATION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CRÉDIT COOPÉRATIF* (ASSOCIATE MEMBER)

ITALY

AGCI PRODUZIONE E SERVIZI DI LAVORO

AGCI SOLIDARIETÀ

ANCPL
ASSOCIAZIONE NAZIONALE DELLE COOPERATIVE
DI PRODUZIONE E LAVORO

CFI (ASSOCIATE MEMBER)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CONFCOOPERATIVE
CONFEDERAZIONE COOPERATIVE ITALIANE

FEDERSOLIDARIETÀ (ASSOCIATE MEMBER)

FEDERLAVORO E SERVIZI (ASSOCIATE MEMBER)

LEGACOOP SERVIZI

LEGACOOP SOCIALI

MALTA**KOOPERATTIVI MALTA****POLAND****NAUWC**NATIONAL AUDITING UNION OF
WORKERS' CO-OPERATIVES**PORTUGAL****FENACERCI**FEDERAÇÃO NACIONAL DE
COOPERATIVAS DE SOLIDARIEDADE
SOCIAL**ROMANIA****UCECOM**NATIONAL UNION OF HANDICRAFT AND
PRODUCTION CO-OPERATIVES OF ROMANIA**SLOVAKIA****CPS****SPAIN****COCETA**CONFEDERACIÓN ESPAÑOLA DE
COOPERATIVAS DE TRABAJO ASOCIADO**CONFESAL (ASSOCIATE MEMBER)**CONFEDERACIÓN EMPRESARIAL DE
SOCIEDADES LABORALES**SWEDEN****COOMPANION (ASSOCIATE MEMBER)****UNITED KINGDOM****CO-OPERATIVES UK**

CICOPA

CICOPA,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represents 65,000 of worker, social and producers' cooperatives providing 4 million jobs across the world. Many of those cooperatives are worker cooperatives, namely cooperatives where the members are the staff of the enterprise, i.e., worker-members. Those enterprises are characterised by a distinctive type of labour relations, called « worker ownership », different from the one experienced by conventional employees or by the self-employed. Two growing typologies of cooperatives represented by CICOPA are social cooperatives, namely cooperatives whose mission is the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and cooperatives of self-employed producers. CICOPA currently has a total of 48 members in 32 countries. CICOPA has two regional organisations: CECOP- CICOPA Europe and CICOPA Americas.

일의 미래와
노동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현황

사람중심 행복일터

워커쿱이 희망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Worker
Cooperatives

공동 소유, 민주적인 운영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일터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와 혁신
그 중심에 워커쿱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워커쿱연합회)는 2014년 8월 21일에 기재부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그 산하 조직인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의 공식회원이며, CICOPA의 정의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일터,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홍보, 교육, 기금, 사업연합, 대외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 워커쿱 (Worker Coop)?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으로 분류하지만,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기업을 워커쿱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워커쿱에는 같은 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 생산자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등도 꼭넓게 포함됩니다.

워커쿱연합회가 걸어온 길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 및 워커쿱연합회 내부적으로

워커쿱의 민주적운영과 조합원 참여경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첫째, 국내외 워커쿱 사례와 유형을 조사, 연구하고, 이를 회원조합에 제공함으로써 토론과 학습을 촉진한다.

둘째,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이 겪는 운영상 애로와 경영상 문제의 해결을 돋는 여러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합의된 공동의 실천적 지침을 생산하고 축적함으로써, 워커쿱의 정체성과 조직문화모델을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

넷째,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고, 워커쿱의 확산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한다.

다섯째, 워커쿱의 설립 및 전통적 기업의 워커쿱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과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한다.

여섯째,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내,외부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역할

일곱째,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상호부조 사업을 만들고 확대한다.

여덟째,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회원조합들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구와 활동을 조직한다.

아홉째, 회원조합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효과적인 사업협력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의 협동사회경제 개발을 촉진한다.

열째, 워커쿱의 확산과 운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조성과 조달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총 매출액
788억 매출



〈 워커쿱연합회 현황 〉



총 일자리: 2,134개

워커쿱연합회 미션



"워커쿱연합회와
워커쿱을 운영하신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소유, 운영하는
협동조합, 협동기업을 운영하시나요?

국내 유일한 워커쿱연합회이자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회원인 워커쿱연합회와 함께 하세요!



문의 070.4432.1126

워커쿱연합회 사업

 홍보사업	워커쿱연합회 홈페이지 및 SNS채널 운영 웹진『협동담론』편집 및 발간
 교육사업	워커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연대기금	회원조합 조합원을 위한 연대기금 조성 및 공제사업 추진 회원조합 조합원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워커쿱 실업보험 추진
 사업연합	회원조합간 공동사업 개발 2차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대외협력	(국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등 (국외) ICA 및 CICOPA,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등

함께 하세요 "



워커쿱을 꿈꾸신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멋진 일터를 꿈꾸고 계신가요?

국내 대표적인 워커쿱들이 모인
워커쿱연합회와 함께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개척자의 변화는 계속된다

식샤를 합시다

해피브릿지 사업분야는 크게 외식, 유통, 제조, 소셜 비즈니스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외식분야인데요. 전국에 45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국수나무>가 해피브릿지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입니다. 이 밖에도 자사 브랜드의 제품 개발 및 원자재를 구입하는 자체 유통 및 제조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협동조합

해피브릿지를 두고 흔히 주식회사에서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시절에도 이미 해피브릿지의 사내문화는 다른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강점으로 작용했고요. 해피브릿지가 이미 협동조합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해야 멀리 간다

해피브릿지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은 2015년에 개설된 소셜비즈니스센터의 활약입니다. 해피브릿지가 보유한 자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조직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플대학과의 MOU체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텃밭의 재발견 텐에이저 키친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기회의 탐색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건강한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대 표 자 김철환 이사장

구 성 원 직원조합원 74명, 예비조합원 10명,
직원 15명 (2016.6월말 현재)

주 종 목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생산 및 유통,
전자상거래, 외식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한로 37, 2층

연 락 처 02-1588-6020

홈페이지 www.happybridgecoop.com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을 합니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이하 협동조합센터)는 2013년에 만들어졌지만 조합원들의 인연은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몬드라곤에서 배우자>를 번역한 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하던 조합원들은 우리나라에도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뭉쳐 협동조합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슈퍼 네트워커가 뜬다!

협동조합센터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경영전문가 과정, 농협 최고경영자 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 컨설팅이나 <제주 스카이버스 협동조합> 기획 컨설팅 등 다양한 협동조합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사업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동조합센터가 가진 힘은 그간 양성한 약 200여명의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자격증 보유자 기준)와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맺어진 수많은 인연을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로 바꿔내는 데에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 대비 워커쿱의 경우 조합원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협동조합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워커쿱의 강점이자 위험요소라는 협동조합센터. 누구보다 자발적이며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조합원들이 모인 협동조합센터에서만큼은 이 특징이 강점으로서 강력하게 발휘되면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대 표 자 김성오 이사장

구 성 원 직원조합원 8명,
법인조합 2곳 (2016.6월말 현재)

주 종 목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교육, 인큐베이팅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2-5, 4층

연 락 처 02-832-1970

홈페이지 www.kcdc.com





협동조합에 대한 오랜 믿음

이론과 현실의 접목, 협동조합의 역사를 쓰다

쿱비즈협동조합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협동조합을 연구하면서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던 강민수 이사장을 필두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답게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의 전환 과정을 함께 하는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어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 같은 교육

쿱비즈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및 교육,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7가지의 교육 모듈로 구성한 Rainbow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과거부터 협동조합을 연구해 온 만큼 협동조합에 특화된 교육이라는 점과 실습 중심의 참여형 교육인 점, 그리고 교육생의 상황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협동조합, 소상공인에게 다가가다

최근 콩비즈협동조합은 이파쿱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인 소셜카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팍팍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콩비즈협동조합의 바람처럼 협동조합이 소상공인들에게 아름다운 집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쿱비즈협동조합

대 표 자 강민수 이사장

구 성 원 조합원 11명
(2018.6월말 현재)

주 종 목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교육, 인큐베이팅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205호

연 락 처 02-303-2599

홈페이지 www.coopbiz.com



일하는 사람이 일의 주인

이피쿱은 공정무역커피를 다루는 사회적기업에서 처음 만난 이들이 모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를 꿈꾸며 탄생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노동자협동조합을 구상한 것도, ‘적정기업’이란 말을 생각해 낸 것도 이런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적정한 노동, 적정한 이윤, 적정한 임금, 결국은 삶을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 일의 주인은 물론 삶의 주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피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백 개의 일손

화학적 공장제 제품이 아닌 노동자가 직접 만든 바닐라빈 크림, 수제캐러멜, 밀가루 없는 브라우니, 수제 초콜릿 등. 이피쿱은 카페에서 노동자들이 ‘조립’노동자가 아닌 ‘조리’노동자로서 존재하길 바라면서 노동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한 이피쿱은 먹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자각하여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대자연과 노동자들의 노동을 기억하는 것, 이피쿱이 커피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작은 카페, 큰 생태계

올해 3년차가 된 이피쿱은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에서 만난 쿰비즈 협동조합 등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마을카페 등 작은 카페들이 연대하여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소셜카페 협동조합이 그것입니다. 협력과 연대의 힘 덕분에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던 이피쿱. 이제 다른 주체들과 함께 좀 더 크고 깊은 생태계를 만들며 협동의 힘을 더 넓게 퍼뜨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정기업 이피쿱

대 표 자	김이준수 이사장
구 성 원	직원조합원 4명, 직원 2명 (2016.6월말 현재)
주 종 목	원두로스팅, 카페 운영, 케이터링, 교육, 컨설팅, 소셜프랜차이즈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06 지하1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내 협동상회, 모두의 카페
연 락 처	070-4419-1901 (010-4331-7417 김이준수)
홈페이지	www.epcoop.co.kr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KOREA MAINTENANCE CORPORATION

유지보수의 새로운 표준

협동조합에서 새 길을 찾다

2014년 서울시 우수협동조합 선정, 2016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의 화려한 이력입니다. 이전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를 하다 해고를 당한 뒤, 우연히 홍보 포스터를 보고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2012년. 불과 몇 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온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유지보수산업의 표준이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영세성과 비전문성이 팽배한 유지보수업계에서 투명한 견적서 및 제안서, 정품/정량 시공으로 신뢰를 얻으며 업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은 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평적구조의 자기책임제를 통해 대표의 개입 없이 현장을 현장전문가가 통솔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공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달식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적 노동이 가능해진 직원 개개인의 변화는 회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제2의 도약을 향해

최근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의 화두는 혁신입니다. 지난 3년이 회사 내에 협동조합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러움 없는 직장, 아침에 아름다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규모있는 협동조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자주 모일 순 없지만 주간회의 때마다 꾸준히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메신저로 끊임없이 토론하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2의 도약도 요원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대표자 김희범 이사장

구성원 직원조합원 6명, 외부조합원 2명
직원 4명 (2016.6월말 현재)

주종목 닉트, 방수, 유지보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47
경동미르웰플러스 지하 1층

연락처 1899-4956

홈페이지 www.koreamc.net



든든한 지원군

어느 조직에서나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사람과 관련된 크고 작은 과제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인사/노무/조직 관련 자문 및 위탁관리,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데, 특히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조직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조직이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돋는 든든한 지원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사는 꼭 갈등하는 관계인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던 만화 〈송곳〉을 보면 각종 노사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활약하는 노무사가 나옵니다. 의연도 이렇게 노동자의 편에서 활동하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과 비영리조직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돋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연협동노동센터를 만들어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팀워크로 생산성을 높이며,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협동노동’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더 편하게

크게는 조직 문화에서부터 작게는 임금 계산이나 4대 보험처럼 사실 모든 조직에 해당되는 일임에도 아직 노무법인을 낯설게 생각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의연에서는 ‘맑은 공익회계법인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혁신팍크 입주조직에게 노무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 의연협동노동센터

대 표 자 박윤섭 대표노무사

구 성 원 노무사조합원 3명,
직원 2명 (2016.6월말 현재)

주 종 목 인사노무관리, 임금관리, 4대보험관리,
협동노동 컨설팅/워크숍/교육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팍크 1동 506A호

연 락 처 070-8666-0011

홈페이지 www.eylabor.net





전문성으로 똘똘 뭉쳤다!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곳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는 아이쿱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아이쿱생협 내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2명 모두의 동의와 출자로 세워졌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뿌리를 기반으로 직원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운영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하다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자치구조 활성화를 돋는 조직부문, 생애주기별 조합원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문, 국내 및 해외 다양한 조직과 협력하여 협동조합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외부문, 그리고 조합원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소통방식을 개발하는 공감행동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대외부문에서는 청년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및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향한 끝없는 실험과 공부

조합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유명한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성을 갖춘 지원센터가 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워커쿱다운 운영을 위해 조합원평의회를 만들어 평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전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한 끝없는 실험과 학습이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의 저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쿱협동조합 지원센터

대표자 김대훈 센터장

구성원 직원조합원 65명, 예비조합원 40명,
일반조합원 2명 (2017.12월말 현재)

주종목 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교육, 조직활동 지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아이쿱생협신길센터 1~3층

연락처 02-2181-7900

홈페이지 www.icoop.coop



대기업 사업부를 인수한 사회적기업

인스케어코어의 시작은 남다릅니다. 홈케어 서비스를 하던 웅진의 한 사업부를 사회적기업인 <함께 일하는 세상>에서 인수하였는데, 이후 개별 회사로 독립하여 현재의 인스케어코어가 되었습니다. 독특한 시작만큼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들을 밑바탕삼아 현재의 사업 영역 및 가맹점 체제를 확립하였고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ECO의 맞춤 서비스

인스케어코어는 <인스케어>라는 브랜드로 토탈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리닝분야는 대청소(입주 전, 이사 전, 거주 중의 1회성으로 이용하는 토탈/파트서비스)와 멤버십(정기적인 관리) 서비스로 나뉩니다. 또한 해충방제서비스(토탈 해충 차단)를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에는 장비 사용법, 약품별 특징, 고객 대응 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받은 ECO(Ecology Consultant)라는 위생관리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최근에는 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 매장에 해충방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가 되어 가는 ‘함께’의 방식

인스케어코어는 영리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닌 Social프랜차이즈를 지향합니다. 영세한 가맹점의 매출관리, 인력관리, 고객관리의 대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더불어 청소라는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임금수준을 높여 내고 있습니다. <인스케어> 브랜드 관리를 위한 유니폼선택에서 상품가격 변경과 같은 큰 사안까지 본사와 가맹점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가맹점도 본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제는 자연스러운 기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스케어코어

대 표 자 이창환 대표

구 성 원 직원 24명 (2016.6월말 현재)
가맹점 20곳 (총 100여명)

주 종 목 프리미엄 토탈 홈케어 서비스,
해충 방제 서비스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6 B1호

연 락 처 02-486-3657

홈페이지 www.inscare.or.kr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Seoul Digital Printing Cooperative

인쇄도 바르게, 운영도 바르게

직장동료에서 독수리 5형제로

대기업에서 동료로 처음 만난 이들이 퇴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다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중 한 명이 공금을 횡령하면서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힘들지만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의지가 남아있던 5명은 다시 뭉치기로 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창립스토리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더욱 두터워진 신뢰 속에, 인쇄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동조합으로 모였습니다.

신생 협동조합인 듯, 신생 협동조합 같지 않은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 생긴 지 이제 4년이 되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업계 베테랑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일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노동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낮은 단가보다는 높은 퀄리티와 꼼꼼한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삼습니다. 대신 신생업체인 만큼 직접 발로 뛰며 거래업체를 수소문하고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며 홍보에 나섭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함께 가는 것

보통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설립을 논의할 때부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의 그림을 상품으로 제작·판매하는 (주)가치모아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5년 뒤에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통해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디지털인쇄 협동조합

대 표 자 정주환 이사장

구 성 원 사업자조합원 13명, 직원 12명
(2018.6월말 현재)

주 종 목 출판, 복사, 인쇄, 제본, 디자인,
동영상제작, SNS홍보마케팅, 디지털싸인 등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3길
12 한스빌라텔 1층

연 락 처 02-6673-2992

홈페이지 www.sdpc.co.kr





도움과 존중의 선순환 고리

딱 맞는 옷을 찾다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한 도우누리는 2010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를 고려하였지만 조직의 특성 중 일부밖에 담지 못한다는 생각에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도우누리에게 딱 맞는 옷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도우누리에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등의 재가사업을 수행하는 늘푸른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진아동청소년반달센터,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돋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세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조합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크고 작은 돌봄서비스 회사도 많고 IT 대기업의 진출까지 거론되는 요즘이지만 도우누리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원칙 아래 더 좋은 일터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직원의 대부분이 조합원이자 주인이기에 책임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봄노동자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대 표 자 민동세 이사장

구 성 원 직원 및 조합원 391명
(2016.6월말 현재)

주 종 목 노인/장애인/산모 대상 돌봄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발달치료, 요양원 운영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53 2층

연 락 처 02-497-8373

홈페이지 www.gjcare.net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 가정내돌봄,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0여년의 역사, 전국 12개 지부, 1,000여명의 조합원. IMF 당시 전국 실업단체의 일자리사업단 중 하나였던 우렁각시는 이제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전문가사관리사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 경력단절여성들의 좋은일자리 창출과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환경의 조성,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자 최영미 대표

구성원 직원 및 조합원 1,200명
(2018.6월말 현재)

주종목 돌봄서비스, 가사관리, 산후관리,
아이돌봄 외 가정내돌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7 4층

연락처 1588-9091, 02-2675-3238

홈페이지 www.kohwa.or.kr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co-operative value sharing Center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백여 명의 청년과 협동을 공유하다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이하 치유소)는 청년창업의 어려움, 청년 경영자의 고민, 동업의 위험성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공부하며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백여 명의 청년들이 치유소를 거치며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치유소는 이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지원의 역할을 하는데 활동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 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의희망자와 수강희망자를 연결시켜주는 오픈 교육 플랫폼인 <노량진대학>을 필두로 컨설팅과 교육사업에 집중하는 치유소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강사가 되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내 일’로 자신의 ‘내일’을 꾸려가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치유소는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두영 이사장

구성원 조합원 7명
(2016. 6월말 현재)

주종목 교육서비스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무중력지대 2층 2호

연락처 02-581-3337

홈페이지 <http://coopvsc.com>



[부록] 워커쿱이란?

■ 워커쿱의 정의

워커쿱은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등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저희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연합회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현장은 노동자협동조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통칭하기 위해 워커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인 CICOPA(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Industrial, Artisanal and Service Producers' Cooperatives)의 멤버십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공업, 장인, 서비스 협동조합들의 국제조직인 CICOPA는 건설, 공업생산, 공익적 서비스, 교통, 지적 서비스, 장인 활동, 건강, 사회적 돌봄 등 여러 다른 부문의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생산자협동조합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워커쿱은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을 지칭하는데 보다 적합한 용어가 될 것입니다.

■ 워커쿱의 역사

워커쿱은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노동자가 출현했던 서구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1831년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했으며, 1856년에 최초의 생산자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운동의 한 갈래로서만 진행되다가 20세기 후반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급부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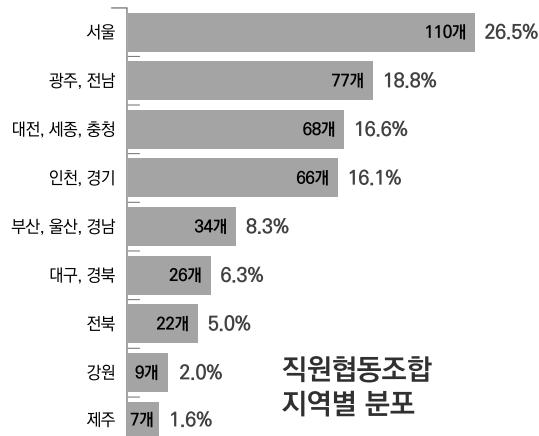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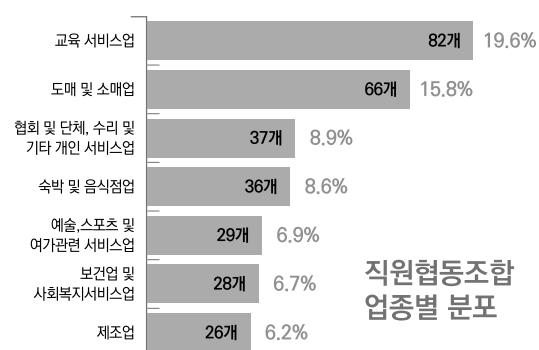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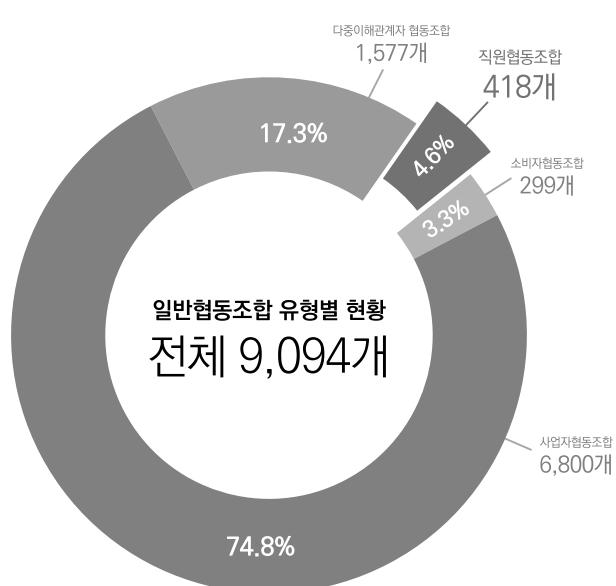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구 주요 국가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사회주의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도 30여 년간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지속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인 워커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워커쿱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노동자자주관리운동과 같이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미군정의 강력한 제재, 이념적 갈등 등이 겹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도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는데요. 몬드라곤협동조합이 국내에 소개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닥친 IMF로 인해 협동조합은 기업도산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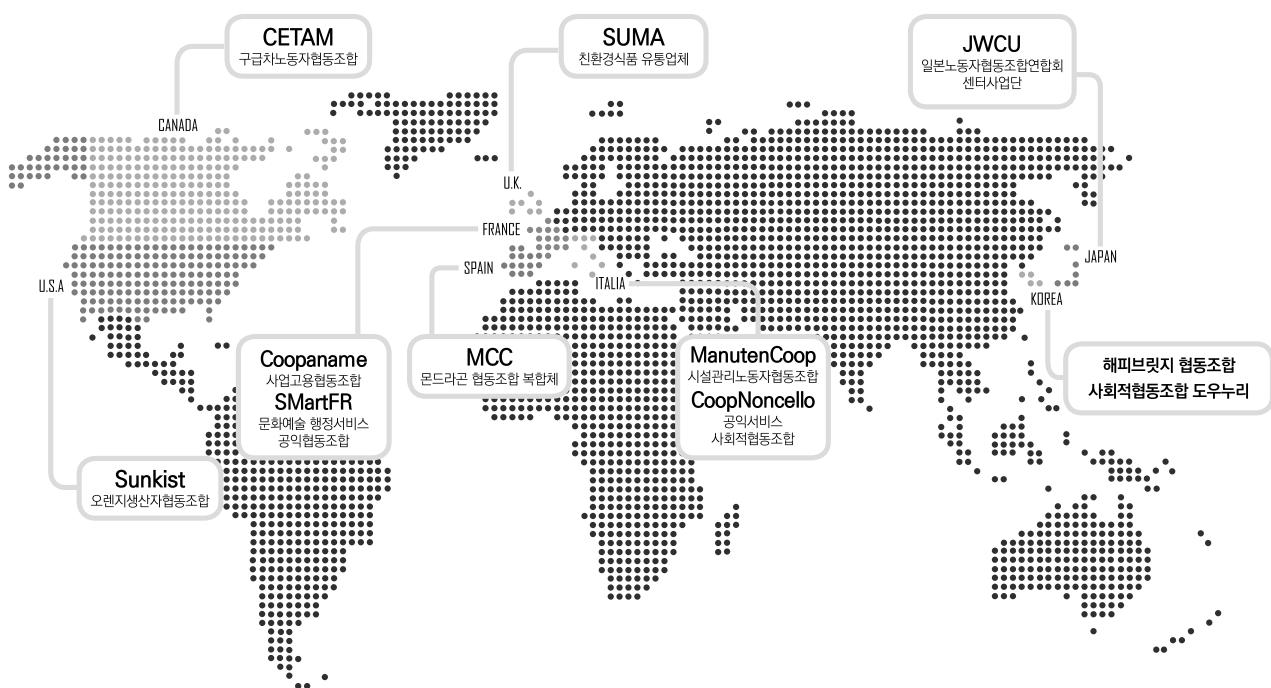
그 당시 몬드라곤협동조합을 모델로 한 생산공동체운동이 시작되고 그 뒤를 이은 자활사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운영하는 자주관리회사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주식회사 법인을 갖고 있는 곳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으로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워커쿱은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워커쿱 현황

출처: 기재부, 2016년 6월 30일 기준



세계의 주요 워커쿱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WORKERS COOPERATIVES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센터
1동 1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열린사무실 5호

대표번호 070. 4432. 1126

대표메일 workercoop.kr@gmail.com

홈페이지 www.workercoop.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rkercoop